



아동에 대한
전쟁을
멈춰라.



Save the Children

21세기 분쟁에서의 아동 보호

아동에 대한 전쟁을 멈춰라.



21세기 분쟁에서의 아동보호

본 보고서 내에서 이름은 신원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 2019

출판인쇄 |
vierC print+mediafabrik
GmbH & Co. KG
독일

일러스트(표지및내지) |
토마스드레프벨린 (Tomas Drefvelin)

한글판번역 2019.5.
번역 | 박승호
감수 |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https://www.sc.or.kr/>
02) 6900-4400

한글판은 세이브더칠드런의 캠페인을 위해 제작된 비매품 자료입니다.

본문 안의 각주는 번역하지 않았으므로, 더 상세한 정보는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

본 보고서는 세이브더칠드런의 조지 그레이엄 (George Graham), 메리엄 키롤로스 (Mariam Kirolos), 군버 크낙 필케스네스 (Gunvor Knag Fylkesnes), 케안 살라르키아 (Keyan Salarkia), 니키 왕 (Nikki Wong)이 작성했습니다. 제임스 덴슬로우 (James Denselow), 이다 하우겐 폴리아크 (Ida Haugen-Poljac), 크리스토퍼 닐슨 (Kristoffer Nilsen), 라비 위크레마싱헤 (Ravi Wickremasinghe) 등 곳곳의 세이브더칠드런의 동료들은 본 보고서 작성팀에 전문가 의견과 검토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오슬로평화연구소 (Peace Research Institute in Oslo)의 연구팀, 특히 구드룬 외스트 뷔 (Gudrun Østby), 시리 아아스 루스타드 (Siri Aas Rustad), 안드레아스 포로 톨레프슨 (Andreas Foro Tollefsen)에게도 「1990-2017 무력분쟁의 영향 하의 아동」 배경보고서와 분석을 제공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또, 본 보고서 작성을 후원해주신 에브리 캐주얼티 월드와이드 (Every Casualty Worldwide), 제네바콜 (Geneva Call), 런던정치경제 대학교 (London School of Economics), 노르웨이 시민원조 기구 (Norwegian People's Aid), 아스널 재단 (Arsenal Foundation)에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본 보고서의 서문과 사례연구에 자신의 증언, 감정, 소망을 나눠준 아동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내용

아이들이 쓴 서문	4
서문	7
요약보고서	9
도입	12
1장: 분쟁과 중대한 권리 침해에 노출된 아동	16
무력분쟁에 노출된 아동 인구의 증가	16
아동의 입장에서 본 10대 최악의 분쟁영향국	18
6대 중대한 아동권리 침해행위	19
무력분쟁이 아동에게 해악을 끼치는 방식	22
2장: 아동에 대한 전쟁의 세 가지 차원	28
1 분쟁시 행위규범의 미준수: 예멘 전쟁	30
2 가해자 책임추궁 실패: 로힝야 위기	32
3 현장에서의 실질적 조치 미비: 남수단 분쟁	33
3장: 떠오르는 해법: 분쟁 중 아동 보호	36
1 분쟁시 행위규범 준수	36
2 가해자 책임 추궁	40
3 현장에서의 아동 보호 및 회복 지원을 위한 실질적 조치	44
4장: 변화를 만들기: 분쟁 중 아동을 위한 국제적 약속의 재확인	52
권고사항	54
미주	56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분쟁이 시작되기 전, 우리에게 평화였습니다. 분쟁이 시작되기 전, 우리는 아이들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학교는 배움과 개발의 공간이었고,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리는 우리가 뛰놀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분쟁이 없었던 삶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평화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일이 가능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른들의 전쟁으로 인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놀이터는 위험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식탁 아래로 숨어서 총소리, 폭탄이 터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학교와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많은 아이가 부모님, 형제, 자매, 이웃을 잃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억지로 일하고, 구걸하고, 살인까지 해야 합니다. 아직 아이이면서 결혼을 해 아이를 낳습니다. 우리는 고문을 당하고, 납치되고, 강간당하고, 침묵을 요구받았습니다. 화가 나고, 원한을, 슬픔을 느낍니다. 우리는 주린 배를 움켜쥐고 잠을 청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영원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나중으로 밀려났습니다.

우리의 말과 꿈을 억누르지 마세요.
우리의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발의 총소리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제가 내일로 이어지는 다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우리나라를 상상해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현재이자 미래이기에, 우리를 중심에 두고 모든 결정이 내려지는 나라를 그려봅니다.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모든 아이가 동네를 자유롭게 거닐고, 폭력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꿈꿔봅니다. 영화관과 공원이 있고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전기가 들어오는, 그런 곳을 꿈꿔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저 꿈속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지도자로서 당신에겐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요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학교에 갈 수 있고, 뛰놀 수 있고,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요구합니다. 무기를 책으로, 총알을 연필로, 갈등을 놀이로, 울음소리를 미소로, 증오를 사랑으로 바꿔주세요.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요구합니다. 모든 아이가 미소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평화로 돌아서라고, 우리를 보호할 것을 약속해달라고, 우리의 발전을 약속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각자가 지닌 최고의 가능성을 발현할 기회를 달라고.

우리 모두의 미래가 위협에 처해있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위 메시지는 세이브더칠드런이 2019년 1월 진행한 자문회의에 참여한 말리, 수단, 콜롬비아, 예멘, 시리아의 아동이 작성한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꿈을
억누르지
마세요**



예멘: 8살 라잔은 호테이다 공습 때 파편에 눈을 맞아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긴급수술을 위해 라잔을 전문병원으로 이송했으며 라잔이 겪었던 일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심리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 리사는 엄마와 함께 30km를 걸어서 도망쳤다. 리사의 가족도 다른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급히 떠나야 했기에 리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올 수 없었다.



서문

분쟁의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분쟁은 아동을 최전선에 배치하는 새롭고 끔찍한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전쟁은 더 오래 지속됩니다. 전장이 도심의 민간인 거주 구역으로 옮겨가면서 사망자와 삶을 뒤바꿔버릴 부상을 입는 이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물과 식량 공급 보장에 필요한 기간 시설도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학교와 병원에 대한 공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원조의 차단이 전쟁의 무기로 쓰이고 있습니다. 분쟁 중 민간인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국제적인 규칙과 기본적인 행위규범은 불처벌 속에서 비웃음거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아동은 이런 잔혹한 변화의 흐름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아동 중 1/5가량이 무력분쟁 영향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아동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굶주림에 처한 아동, 예방 가능한 질병의 환자가 된 아동, 성폭력을 당하거나 무장단체로 징집될 위험에 노출된 아동,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최전선에 묶여 있는 아동이 이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지난해 분쟁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침해행위의 발생 건수가 다시금 치솟았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아동에 대한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분쟁이 예멘의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아프고 굶주린 아이들로 가득했습니다. 너무도 병약해진 아이들은 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예멘이 겪고 있는 고통이 비극인 까닭은, 그것이 인재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분쟁이 대개 그렇듯 말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예멘, 시리아, 소말리아, 남수단, 콩고민주공화국, 미얀마 등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서 사는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원조기관의 활동만으로는 이 같은 중대한 아동권리 침해행위를 야기하는 원인과 그로 인한 영향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지도자를 향해 아동에 대한 전쟁을 멈추라고 촉구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본 보고서는 이 아동들에게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줄 국제적인 행동계획을 제시합니다. 행동의 세 가지 주요 영역은 분쟁 중 행위규범을 준수하는 것, 가해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일, 또 전쟁이 아동에 입힌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

하도록 지원하는 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보고서에서 우리는 각 영역마다 국가 및 비국가행위자가 아동 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실질적 권고를 내놓았습니다.

우리 안의 인간성은 우리에게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바로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이 아동들이 배제된다면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도, 모든 아동의 생존·보호·희망을 담보해줄 평화와 번영의 사회 건설을 위한 초석을 놓을 수도 없습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는 세이브더칠드런의 창립자인 에글렌타인 쟈프(Eglantyne Jebb)이 보여줬던 끊임없는 헌신과 모범에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영감과 활력을 얻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을 창립하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았던 1919년, 에글렌타인은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잊혀진' 아동을 기억할 것을 촉구하며 아동권리선언문을 제시했습니다. 이 선언문은 후에 기념비적인 인권조약인 1989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수많은 아동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불가피한 일인 양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오늘날 분쟁 속에 사는 아동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을 위해서는 정부들과 비국가행위자들이 단합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오늘의 아동이 내일의 잊혀진 세대로 사라지지 않게 하는 일, 그것은 가능한 일이며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헬레 토르닝슈미트(Helle Thorning-Schmidt)
세이브더칠드런 인터내셔널 CEO



**우리는
수많은 아동이
고통받는
이 상황을
불가피한 일인양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요약 보고서

“모든 전쟁은 아동에 대한 전쟁이다”

100년 전 세이브더칠드런의 창립자 에글랜타인 켈(Jebb)이 남긴 이 말이 지금까지 큰 울림을 주는 때는 없었을 것이다. 현재 세계 곳곳에 수많은 아동은 자신이 그 어떤 원인으로 제공한 바 없는 분쟁 속에 휘말려 있으며, 그러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권리 침해는 불처벌인 경우가 잦다.

세이브더칠드런이 내놓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증거들은 이를 강력히 뒷받침한다.

- 전 세계 아동 인구 중 약 1/5 수준인 4억 2,000만 명이 분쟁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2016년에 비해 3천만 명가량이 증가한 수치다.
- 냉전 종식 이래로 분쟁지역 거주 아동의 수는 2배 가까이 증가했다.
- 연간 전투 관련 사망자 수가 1,000명 이상 발생하는 고강도 분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의 수는 1억 4,200만 명에 달한다.
- 세이브더칠드런의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유엔에 보고·확인된 분쟁지역 내 아동권리의 ‘중대한 침해행위’ 발생 건수는 2010년 이후 거의 3배로 증가했다.
- 영양실조, 질병이나 보건체계·물·공중위생 붕괴 등 분쟁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매년 아동 수십만 명이 사망한다.

분쟁 중 아동의 보호 문제는 20세기에 선언, 협약, 규정으로 만든 약속의 실천이자 더불어 21세기를 결정짓는 도전과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분쟁의 성격도, 분쟁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도 변모해가고 있다. 국가 내 분쟁(intra-state conflict)이 증가하고, 분쟁에 관여하는 무장행위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학교를 겨냥하고, 소녀의 납치와 노예화, 고의적 기아사태 유발 등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이 자행되고 있음을 온 세계가 목도하고 있다.

무력분쟁은 더 장기화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가장 두드러진 분쟁인 시리아 전쟁의 경우는 2차 세계대전보다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필수 서비스 공급 중단으로 인한 간접적 피해도 커져간다. 분쟁이 장기화된 다수 상황에서는 ‘분쟁’과 ‘평화’의 경계선이 점점 흐릿해진다.

분쟁은 점점 더 도시화되고 있다. 모솔과 모가디슈 아동의 경우는 자신의 집과 학교가 최전선이 되어버려 무차별 공격으로부터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 오늘날의 무력분쟁에서는 전장의 경계선이 더이상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아동의 집과 학교 자체가 전쟁터인 것이다.

최전선에 놓인 아동

무장폭력과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더 아동에게로 전가되고 있다. 분쟁에서 아동은 성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고통받는다. 이는 아동이 신체적으로 더 약하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동이 성인보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아동의 신체·정신·심리적 발달은 어린 시절 경험하는 환경에 크게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분쟁은 수많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아동 각자에게 다른 영향을 미친다. 주요하게는 젠더, 나이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장애 여부, 민족적 배경, 종교나 도심지·지방 거주 여부 등도 영향을 준다. 무력분쟁이 끼치는 해악은 성인보다 아동에게 더 극심할 뿐 아니라 해당 아동과 그 아동이 속한 사회에 더 오랜 기간 영향을 미친다. 분쟁으로 인한 아동의 고통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아동은 의도적인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잔학행위는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오늘날 다수의 분쟁에서 군이나 무장단체가 선호하는 군사 전술이다. 또 아동은 군인이나 자살 폭탄 공격에 활용하는 등 조종이나 착취가 쉽다는 점 때문에 표적이 되기도 한다. 학교는 전술적 사유로 표적이 되기도 하는데 징병의 기지 또는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은 무차별적 또는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군사행동의 결과로 고통받는다.

일례로 주거 지역에서 지뢰나 광범위한 효과를 가지는 폭발성 무기의 사용으로 아동이 죽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아동은 분쟁의 간접적 결과로 커다란 피해를 입는다.

분쟁의 간접적 결과로는 실업, 시장의 붕괴와 보건 체계·물·공중위생 등 필수 공공서비스 붕괴, 만연한 불안정 등이 있다. 간접적 피해나 직접적인 아동 권리 침해 모두 현대의 분쟁이 아동에게 가하는 위협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분쟁의 간접적 결과는 아동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더 많은 아동 사망자를 발생시킨다. 또한, 더 많은 아동이 학업을 중단하게 되어 더 나은 미래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4억2천
4억2천만명
아동이
분쟁지역에
거주한다

미준수로 인한 위기

본 보고서는 오늘날 분쟁지역에서 아동이 겪는 고통의 주된 원인이 확립된 권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라는 것을 논한다. 아동들이 고통을 겪는 것은 확립된 권리를 준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군을 포함해 무장행위자들이 아동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에도 국제사회는 고작해야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거나, 심한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의 공모자가 되기도 한다.

오늘날 분쟁지역 아동이 처한 위기는 다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국가 및 비국가행위자가 행위규범을 준수하지 않거나 동맹 세력이나 그 외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에 규범 준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 정부가 아동권리 침해 가해자의 범죄 책임추궁에 거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
- 현장에서 분쟁 중 아동의 보호와 회복 지원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정부와 기타 행위자가 높은 기준을 지키겠다고 결정했을 때 우리는 폭력 억제를 위한 규정, 법률, 규범이 제정되는 한을 봤다. 여러 정부와 국제기구가 진지하게 책임을 추궁하기로 하면 가해자가 처벌받았다. 또 정부와 다자기구가 현장에서의 실질적 조치에 투자할 때 아동을 보호하고 생명을 구했다.

「아동에 대한 전쟁을 멈춰라」 제하의 본 보고서는 분쟁 중 아동 보호를 위한 국제적 행동계획의

아동의 입장에서 본 10대 최악의 분쟁영향국

- 나이지리아
- 남수단
- 말리
- 소말리아
- 시리아
- 아프가니스탄
- 예멘
- 이라크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기초를 수립하고 있다. 세계의 지도자와 정부는 이와 관련해 특별히 더 강력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분쟁 중 행위규범을 준수할 것
 - 아동권리 침해 가해자에 책임을 추궁할 것
 - 아동의 보호와 회복 지원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
- (상세한 권고사항은 53페이지 참조)

올해는 아동권리 개념의 창시자인 에글렌타인 쟈이 활동을 시작한지 100년이 되는 해이자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2019년 9월에 열리는 74차 유엔 총회는 정부가 구체적인 행동 서약을 통해 분쟁 중 아동 보호에 다시금 헌신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기회가 될 것이다.

세계의 분쟁 지역에 사는 아동을 위해 그 같은 행동은 우리가 너무나도 기다리던 것이다.

아동에 대한 전쟁 종단을 위한 세이프더칠드런 헌장

우리 헌장은 모든 아동이 기본권을 가진다는 원칙에 근거해 명확하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10가지 목표를 제시한다.

- 모든 아동은 살해와 중대한 상해로부터 보호받는다.
- 학교와 보건센터는 평화와 보호 구역으로 간주한다.
- 모든 아동은 강간과 성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는다.
- 어떤 아동도 군대나 무장단체에 징집되지 않는다.
- 분쟁 중 모든 아동이 납치, 구금, 실향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 분쟁 중 어떤 아동도 인도적 원조를 차단당하지 않는다.

- 분쟁 중 아동권리 침해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감시·보고·조치한다.
- 분쟁 중 아동권리 침해의 가해자, 감독권자, 명령권자가 법의 심판을 받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분쟁으로 피해를 입거나 영향을 받은 모든 아동이 그 같은 상황에 대처하고 회복하고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을 받는다.
- 난민과 국내실향민을 포함해 분쟁으로 영향을 받은 모든 아동이 양질의 교육을 받는다.



도입

"엄마와 아버지가 불에 타 죽었어요.
우리 모두 죽었어요."

와파, 예멘의 4세 소녀

2018년 6월, 예멘의 항구 도시 호데이다에 대한 공습으로 와파(4세)와 여동생 샤디아(2세)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 둘의 부모는 모두 사망했다.

이 사건 이후 와파는 잠을 자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와파는 악몽을 꾸었고 자는 도중에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와파는 거의 항상 울었고, 가족이라도 자신과 같은 방에 있는 것을 참지 못했다.

와파는 머리에 박힌 파편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 수술로 와파의 두개골에 15cm가량의 구멍이 생겼고, 수술 후에도 다른 곳에 박힌 다른

파편 때문에 몸이 부어올랐다. 와파는 남은 파편 제거를 위해 두 차례 더 수술을 받아야 했다.

세이브더칠드런 호데이다 현지 팀은 와파와 샤디아의 치료 및 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이들의 치료를 돕기 위해 둘의 확대 가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와파와 샤디아는 공습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남은 생애를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아동이 그렇듯, 이들의 안녕·교육·건강·영양상태는 둘이 가진 인생의 기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는 둘이 속한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한 국가의 안정과 번영이 자국민의 안녕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속한 국가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부상을 입고 부모를 잃다: 2018년 6월, 예멘의 항구 도시 호데이다에 대한 공습으로 와파(4세)와 여동생 샤디아(2세)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 둘의 부모는 모두 사망했다.

PHOTO: SAVE THE CHILDREN

이들의 사례는 다른 면에서도 상징성을 갖는다. 아동, 즉 18세 미만인 사람을 살해하거나 중대한 상해를 가하는 것은 유엔이 규정한 무력분쟁 상황에서의 6대 중대 아동권리 침해행위 중 하나에 해당한다. 국가는 그날 공습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현재로서 와파와 사디아의 남은 가족은 그들 부모님이 공습의 의도적 표적이었는지, 사망의 원인이 개인의 무모한 공격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인 무차별적 폭격 방침으로 인한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적법한 군사적 목적으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이뤄진 공격 때문에 발생한 불운한 사건이었는지를 돌에게 설명할 방도가 없다. 그 사건이 범죄였는지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며, 진상 파악을 위한 신뢰할만한 독립적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건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였어도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저 불운한 사건이었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미래에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교훈을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극단적 폭력이 불처벌을 누리는 세상은 그 누구에게도 안전한 세상이 아니라는 점을 논증한다.

국제사회가 수행했던 역할도 이 이야기의 일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 강력한 국제행위자들은 와파와 사디아의 부모를 사망에 이르게 했던 전쟁에 대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에서 사용된 무기가 생산된 곳은 공습을 실시한 공군이 소속된 국가도, 폭탄이 사용된 국가도 아닌 그 무기의 판매로 이익을 얻는 제3의 국가였다. 중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이 사건 발생을 조장한 것은 바로 국제행위자들이었다. 국제사회가 분쟁 당사국을 대하는 태도, 즉 정부가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행위규범이나 아동권리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을 위해 국제사회가 실시하는 조사의 수준, 국제사회가 아동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공하는 실질적 지원의 수준이 바로 무력분쟁에서 아동을 죽게 할지 보호할지를 결정할 규칙·규범을 설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와파와 사디아와 같은 수많은 아동에게는 전부가 걸려있는 문제다.

모든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

분쟁 중 아동이 겪는 고통은 세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첫 번째, 아동은 종종 의도적 표적이 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잔학행위는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오늘날 다수의 분쟁에서 군이나 무장단체가 선호하는 군사 전술이다. 또, 아동은 군인이 자살폭탄 공격에 활용하는 등 조종이나 착취가 쉽다는 점 때문에 표적이 되기도 한다. 학교는 징병의 장소

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나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등의 전술적 사유로 표적이 된다.

두 번째, 아동은 무차별적이거나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군사행동의 결과로 고통받는다. 일례로 주거 지역에서 지뢰나 광범위한 지역 효과를 가지는 폭발성 무기의 사용으로 아동이 죽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세 번째로, 아동은 분쟁의 간접적 결과로 커다란 피해를 입는다. 분쟁의 간접적 결과로는 실업, 시장의 붕괴와 보건체계·사회복지·물·공중위생 등 필수 공공서비스 붕괴, 만연한 불안정 등이 포함된다. 간접적 피해나 직접적인 아동권리 침해 모두 현대의 분쟁이 아동에게 가하는 위협의 연장선에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쟁의 간접적 결과는 아동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더 많은 아동 사망자를 발생시킨다. 또, 더 많은 아동이 학업을 중단하게 되어 더 나은 미래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분쟁의 성격도, 분쟁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도 변모해가고 있다.¹ 국가 내 분쟁(intra-state conflict)이 늘고 있으며, 분쟁에 관여하는 무장행위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학교를 표적으로 삼는 행위, 소녀에 대한 납치와 노예화, 고의적 기아사태 유발 등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이 자행되고 있음을 온 세계가 목도하고 있다.² 무력분쟁은 더 장기화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가장 눈에 띄는 분쟁인 시리아 전쟁의 경우는 2차 세계대전보다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필수서비스 공급 중단으로 인한 간접적 피해도 커져간다. 분쟁이 장기화된 다수 상황에서는 ‘분쟁’과 ‘평화’의 경계선이 점점 흐릿해진다. 또, 분쟁은 점점 더 도심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³ 모술과 모가디슈 아동의 경우는 자신의 집과 학교가 최전선이 되어 버려 무차별 공격에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다. 오늘날의 무력분쟁에서는 전장의 경계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동의 집과 학교 자체가 전쟁터인 것이다.

**아동에 대한
극단적 폭력이
처벌되지 않는
세상은
누구에게도
안전한 세상이
아니다**

본 보고서는 오늘날 분쟁지역에서 아동이 겪는 고통의 주된 원인이 확립된 권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논한다. 아동이 고통을 겪는 것은 확립된 권리를 준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군을 포함해 무장행위자들이 아동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에도 국제사회는 고작해야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거나, 심한 경우 그러한 행위의 공모자가 되기도 한다.

분쟁 중 아동 관련 국제법 규정 6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는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국제인도법은 무력분쟁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무력분쟁으로 인한 영향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구체적 규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구별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이다. 이는 민간인이나 민간 물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금지, 무차별 공격 금지, 민간인 사망 및 부상, 민간 물자 손상을 피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 등이 있다. 국제인도법은 또 교육 보호 규정 등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담고 있다. 국제인도법에 따라 국가는 자국의 통제 하에 있는 민간 주민과 민간인의 기초적 필요를 충족시킬 일차적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해당 국가가 그 같은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 인도주의 단체 등 제3자에 의한 구호활동이 이뤄질 수 있으며, 그 같은 구호단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무해한 통과가 허용되어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ren, UNCRC)은 세계에서 가장 폭넓게 비준된 조약이다. 이 협약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의 동등하고 불가분한 사회·문화·정치·경제·보건·문화적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한다. 동 협약은 모든 사회에서 지켜져야 하는 아동의 대우에 관한 최소 기준과 전반적 원칙을 설정함으로써 지난 30년간 아동의 권리 진전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또, 협약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38조는 구체적으로 무력분쟁 중 아동의 권리에 대한 내용인데, 국가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와 배려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00년 채택된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18세 미만 아동이 무력분쟁에 참여하거나 징집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의 보급을 촉진한다.

로마규정(Rome Statute)은 민간인 보호와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관할권 부여에 대한 주요한 국제형사법 문헌이다. 제노사이드, 반인도범죄, 전쟁범죄를 자행한 사람이 동 규정 서명국의 영토에 있거나 서명국의 국적자인 경우, 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로 회부한 경우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할권을 부여한다.⁷ 또, 캄보디아 특별재판소, 르완다,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시에라리온 특별법정과 같은 임시재판소에서 생기는 중요한 국제형사법체계도 존재한다. 시에라리온 특별법정은 소년병 징집에 관한 국제인도법 위반의 가해자에 대해 열린 최초의 국제형사 재판이었다. 이 재판소는 전대기반 범죄를 규정하는 데 있어 새 역사를 쓰기도 했다.

이 외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 총회가 특정한 분쟁 상황 및 관련 주제 영역에 한해 국제법의 효력을 가지는 결의를 통과시키기도 했다. 그 같은 주제에는 아동과 무력분쟁⁸, 여성과 평화와 안보⁹, 민간인 보호¹⁰,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¹¹가 포함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헌장에 따라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결의를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유엔 기구다.¹²

1990년 **아동의 권리 및 복지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African Charter on the Rights and Welfare of the Child)**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외에 아동의 사회·시민·정치·경제·보건·문화적 권리의 영역 전반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유일한 정부 간 조약으로 특기할 만하다. 이 헌장은 아프리카연합의 거의 모든 당사국이 비준했다. 동 헌장 22조는 아동의 징집과 직접적인 전투 참여를 금지하며 무력분쟁에서 아동 사용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다.

동부 우크라이나:

올하(4세)와 그의 가장 친한 친구는 지뢰를 호루라기인 줄을 알고 집어 들었다가 거의 죽을 뻔했다.



PHOTO: SIMON EDMUNDS / SAVE THE CHILDREN

본 보고서는 이런 위기 해결을 위한 의제를 제시한다.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는 모든 문화에서 인정되는 윤리 규범이다.⁴ 대다수는 아동 보호에 대한 능력과 의지가 인류의 기본가치임을 인정할 것이다. 20세기 초, 영국의 사회 개혁가 에글렌타인 켈(Eglantyne Jebb)은 모든 아동, 심지어 적군의 아이라고 할지라도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본적 진리를 위해 싸웠다. 에글렌타인은 1차 세계대전 말미 중앙 유럽에 대한 봉쇄로 야기된 아동 빈곤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1919년에 세이브더칠드런 재단을 설립하였고, 이후 1924년에는 그러한 개념을 표면화해 아동권리선언을 입안했다. 아동권리선언은 후에 국제연맹에서 채택되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폭넓게 비준된 인권조약인 아동권리협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⁵

아동권리선언의 채택은 세계 곳곳의 모든 아동이 명확히 구별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을 수립한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이후에 뒤따른 20세기 최악의 사건들은 인류 공동의 규범을 성문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가적인 체계를 수립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유엔 헌장,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49년 제네바협약, 1951년 난민협약, 1977년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 1998년 로마규정은 바로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문헌들은 모두 부분적으로 전쟁으로 야기되는 위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아동 보호를 위해 제정된 규칙 및 규범의 존중 및 준수를 보장하는 것은 단지 아동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규범 기반의 국제적 체계는 세계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이다. 세계가 아동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협력하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가능한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들 일부가 야기하는 문제들을 포함해 다자체제, 다자기구 및 기관이 겪고 있는 문제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는 긴급한 과제다.

분쟁 중 아동의 보호가 긴급한 과제라는 점에는 또 다른 중요한 도구적 이유도 존재한다. 현세대의 아동을 지키지 못한다면 인류의 발전을 향한 진보와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향한 진전이 뒤쳐질 것이며, 이는 아동이 더 가난하고 약하게 자라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¹³ 장기적인 전 지구적 안정·안보·번영은 분쟁으로부터의 아동 보호를 전제 조건으로 한다. 그 때문에 현재 분쟁 중 아동 보호와 관련한 부정적인 움직임은 아동뿐 아니라 더 넓은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1장

분쟁과 중대한 권리 침해에 노출된 아동

2017년 ‘분쟁지역’에
사는 아동은
4억 2천만 명이며,
2016년에 비해
3천만 명이 증가했다



이 중 1억 4,200만 명은
고강도 분쟁지역에
살고있다

“모든 전쟁은 아동에 대한 전쟁이다”

100년 전 세이브더칠드런의 창립자 에글렌타인 젠크(Eglantyne Jebb)이 남긴 이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가용 데이터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무력분쟁이 아동에게 끼치는 위해의 규모, 강도, 위해의 고유한 특징이 명확히 드러난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무장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확인된 아동권리 침해 건수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로 인한 발달상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아동 삶의 기회를 황폐화할 것이다.

무력분쟁에 노출된 아동 인구의 증가

오슬로평화연구소(Peace Research Institute in Oslo, PRIO)는 세이브더칠드런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새로운 분석에서 전 세계 무력분쟁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인구분포를 도식화했다.¹⁴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7년 아동 4억 2,000만명 이상이 오슬로평화연구소가 규정하는 '분쟁지역(conflict zones)'이나 '분쟁영향지역(conflict-affected areas)', 즉 해당연도에 국경선 50km 이내에서 한 건 이상의 분쟁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전 세계 아동 인구 약 1/5에 해당하는 것이며¹⁵, 이는 전년도에 비해 3,000만 명이 증가한 수치다.¹⁶ 이 중 1억 4,200만 명은 연간 전투 관련 사망자가 1,000명 이상 발생하는 분쟁지역인 고강도 분쟁지역(high-intensity conflict-zones)에 거주하고 있다.

무력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의 수에는 큰 변동이 없었음에도 분쟁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수는 냉전 이래 인구 성장 규모를 크게 앞지르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4억 2,000만 명에 달하는 현재의 집계치는 냉전 종식 직후 수치의 배에 달한다. 이 같은 증가 추세는 무장폭력 확산, 장기화된 분쟁의 영속화, 무장폭력 발생이 점점 더 도심지로 옮겨가는 상황 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번 분석 작업에는 조직화된 폭력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통계자료 제공처인 읍살라분쟁데이터프로그램(Uppsala Conflict Data Programme, UCDP)이 취합한 데이터가 사용됐다. 이 데이터집합에는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곳곳에서 기록된 분쟁 사건의 지리적 위치, 시기, 강도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오슬로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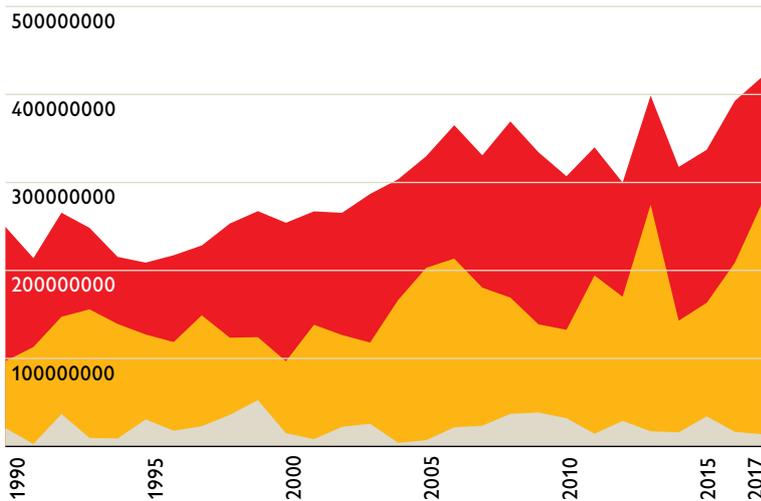


도표 1: 분쟁 강도별 분쟁 영향지역 내 거주 아동 인구수, 1990-2017

분쟁지역 거주 아동 인구가 두배로 증가했다.

출처: 울살라분쟁데이터프로그램 지리 기반 사건 데이터셋, 격자형 세계인구분포 V4(국제지구과학정보네트워크센터, 2016), 세계인구전망(유엔, 2017)에 기반한 오슬로평화연구소의 분석자료

■ 고강도 분쟁(High intensity conflict)
 ■ 중강도 분쟁(Medium intensity conflict)
 ■ 저강도 분쟁(Low intensity confli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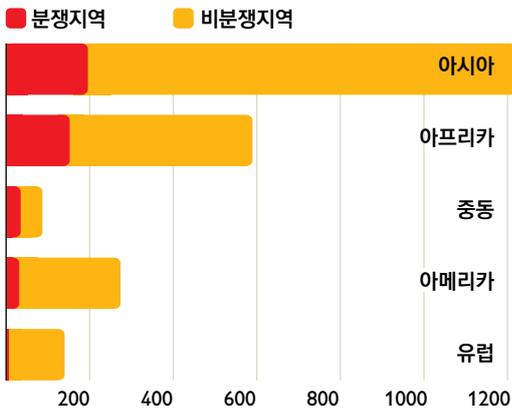


도표 2: 2017년 지역별 분쟁지역 거주 아동 인구수

아시아 내 분쟁지역 거주 아동의 수는 1억 9,500만명, 아프리카의 경우는 1억 5,200만명에 달한다.

출처: 울살라분쟁데이터프로그램 지리 기반 사건 데이터셋, 격자형 세계인구분포 V4(국제지구과학정보네트워크센터, 2016), 세계인구전망(유엔, 2017)에 기반한 오슬로평화연구소의 분석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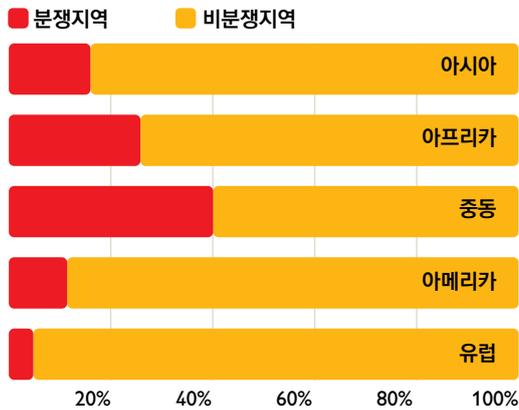


도표 3: 2017년 지역별 분쟁지역 거주 아동 인구 비율

분쟁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인구 비율은 중동에서 2/5, 아프리카에서는 1/4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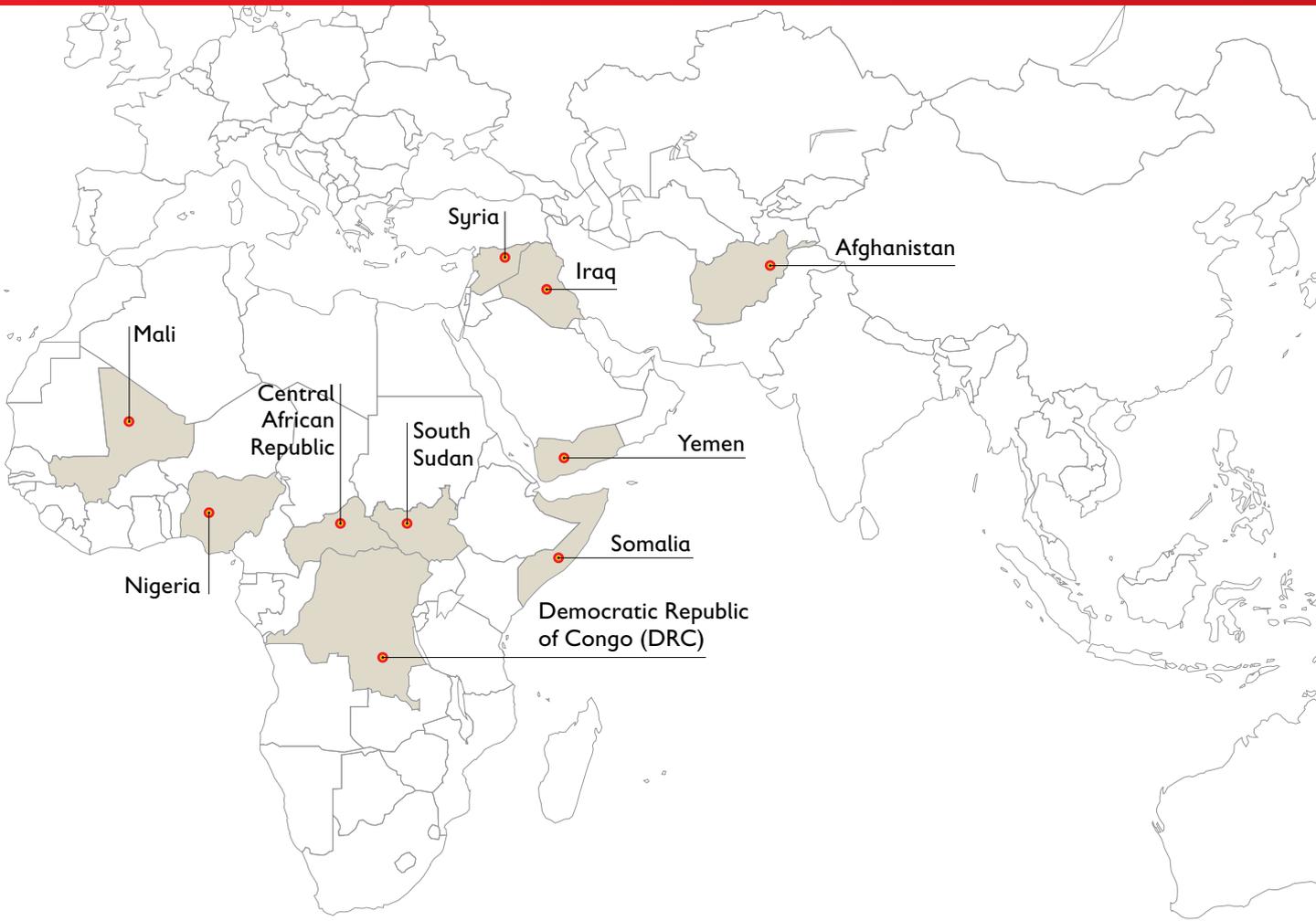
출처: 울살라분쟁데이터프로그램 지리 기반 사건 데이터셋, 격자형 세계인구분포 V4(국제지구과학정보네트워크센터, 2016), 세계인구전망(유엔, 2017)에 기반한 오슬로평화연구소의 분석자료

연구소는 이 데이터를 최신 격자형 세계인구분포(Gridded Population of the World) 자료 및 유엔 통계¹⁷와 상호 참조하여 세계의 무장폭력 발생지 인근에 거주하는 아동 인구수를 추계했다.

울살라분쟁데이터프로그램이 정의하는 무력 분쟁은 조직화된 행위자가 다른 조직화된 행위자 또는 민간인을 상대로 무력을 행사하여 전투 관련 사망자가 연간 최소 25명 이상 발생한 상황이다. 이는 국가나 비국가행위자가 참여하는 분쟁이 될 수도 있고, 조직화된 무장단체가 민간인을 상대로 자행하는 일방적인 폭력행위일 수도

있다.¹⁸ 이 데이터 집합에서 분쟁 사건(conflict event)이란 무력분쟁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건을 가리킨다.

다수 국가에서 분쟁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인구수가 높게 나타났다. 절대적 수치로 기준으로는 인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이집트, 방글라데시, 필리핀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아시아의 분쟁영향지역 거주 아동 인구수는 1억 9,500만 명으로 절대 수치가 제일 높게 나타났다.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중동지역 아동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3,500만 명이 분쟁영향지역에 거주



하고 있다. 아프리카 전역에서는 전체 아동 인구 중 1/4에 해당하는 1억 5,200만 명이 분쟁영향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비율은 1/5이었던 2016년에 비해 증가했다.

고강도 분쟁지역에 거주하는 1억 4,200만 명의 경우 해당 지역 내 폭력행위의 규모와 강도가 더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특히 더 우려의 대상이 된다. 2017년 기준 예멘에서는 아동 인구의 90%, 시리아에서는 70%, 소말리아에서는 60%가량이 고강도 분쟁지역의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다.

아동의 입장에서 본 10대 최악의 분쟁영향국

오늘로평화연구소 연구결과와 유엔의 2017 중대한 아동권리 침해행위 발생 자료에 대한 세이브더칠드런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는 아동의 입장에서 본 최악의 분쟁영향국 10개를 선정했다. 이는 다음 9개 지표에 근거한 것이다.

- 6대 중대 아동권리 침해행위 각각의 보고 빈도 (19페이지 참조)
- 분쟁 강도 (기록된 사망자 수 기준)
- 분쟁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인구 총수
- 해당국가의 전체 아동 인구 대비 분쟁지역 거주 아동 인구 비율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해 선정된 아동에게 최악의 분쟁국가 10곳은 다음과 같다.

- 나이지리아
- 남수단
- 말리
- 소말리아
- 시리아
- 아프가니스탄
- 예멘
- 이라크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콩고민주공화국

국가별로 가용 데이터의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에서 정확한 순위 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기 목록은 국가명을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다.¹⁹ 그럼에도,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우 측정된 결과의 수준이 특히 심각했다. 또,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소말리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의 아동이 처한

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국가들은 모두 2017년 확인된 중대한 아동권리 침해행위 발생 건수가 증가했다. (19-22페이지 참조) 유엔은 예멘의 상황을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으로 간주하고 있으며²⁰, 이 분쟁의 간접적 영향으로 엄청난 수의 아동이 영양실조로 사망할 위험에 처해 있다.²¹ 단, 유엔이 확인한 예멘 내 사우디-에미라티 연합군에 의한 침해행위 보고에 대해서는 2017년과 2018년에 강한 반론이 제기됐으며, 2018년 아동과 무력분쟁 보고서에서 다루진 침해행위 발생 건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018년 세이브더칠드런이 발표했던 최악의 10개국 명단을 기준으로 올해 새롭게 추가된 국가는 말리다.²²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말리에서는 보고된 전투 사망자 수가 증가했고, 인도적 활동 차단에 대한 보고 건수는 세 배로 늘어났다.²³

무력분쟁이 아동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 전부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위 명단에 속한 국가에 사는 아동이 분쟁으로 인해 치러야 했던 큰 대가를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란셋(The Lancet)』에 게재된 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2015년까지 20년간 아프리카 국가 35곳의 무력분쟁 강도·규모·위치 데이터를 아동 생존에 대한 데이터와 비교했다.²⁴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분쟁에 노출된 5세 미만 아동의 평균 사망률이 7.7%가량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밝혔다. 더 고강도의 분쟁에 장기간 노출된 지역에 사는 1세 미만 아동의 경우 위험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란셋』 게재 연구에 포함된 사망자 집계치는 생계수단 및 자산의 파괴, 위생 및 식량 체계, 의료공급망 붕괴, 기초 서비스 접근 차단 등 분쟁의 간접적 영향으로 야기된 사망 통계를 기록한 것이었다.

『란셋』의 연구를 10대 최악의 분쟁영향국에 적용한 결과, 최근 5년 동안에만 영아 55만 명이 분쟁의 영향으로 사망했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²⁵ 5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사망자 추계치가 87만 명으로 나왔다. 이 추정치는 불완전하다. 이는 경향을 나타내는 매우 보수적 수치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분쟁이 없었다면 위 10개 분쟁영향국에서만 매년 영아 10만 명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6대 중대한 아동권리 침해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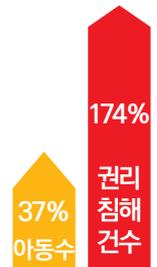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무력분쟁 상황에서의 중대한 아동권리 침해행위를 다음 6가지로 규정했다.

- 아동을 살해하거나 중대한 상해(maiming, 영구적 신체 손상을 불러일으키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아동을 징집하고 군인으로 사용하는 행위
-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 아동을 납치하는 행위
- 학교 및 병원에 대한 공격 행위
- 인도주의 활동 차단

위 6대 중대한 침해행위는 참혹성과 그 같은 행위가 아동의 안녕에 미칠 극심한 영향을 바탕으로 규정됐다. 유엔 사무총장은 전 세계 분쟁에서 상기한 중대한 침해행위 발생을 기록하는 아동과 분쟁에 관한 연간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²⁶

가장 최근 연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7년 확인된 중대한 침해행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아동의 수는 25,000명 이상으로, 이는 사상 최고치이다.²⁷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미얀마, 남수단, 시리아, 예멘에서 벌어지는 위기상황은 이 같은 증가치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²⁸ 2010년 이래로 분쟁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인구 총수는 37% 증가했지만, 확인된 중대한 아동권리 침해 행위 발생 건수는 174%로 증가했다.

확인된 침해행위 발생 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유엔이 규정하는 높은 기준에 맞춰 아동권리 침해행위 신고의 취합·확인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유엔 사무총장의 연간보고서에 실리



2010이후:
분쟁지역
아동권리
침해는
극적으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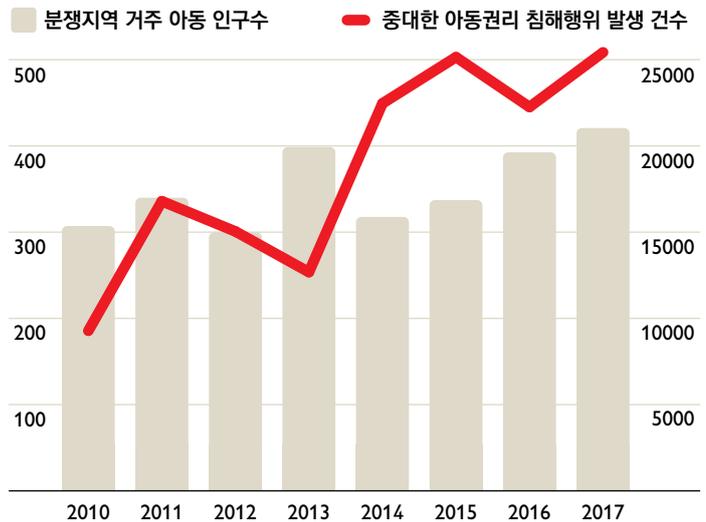


도표4: 분쟁지역 거주 아동 인구수 및 중대한 아동권리 침해행위 발생 건수의 급격한 증가

분쟁지역 거주 아동 인구가 늘고 있으며, 중대한 아동권리 침해행위 발생 건수는 그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다.

출처: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분석자료 / 옵실라분쟁데이터 프로그램 지리 기반 사건 데이터셋, 격자형 세계인구분포 V4(국제지구과학정보네트워크센터, 2016), 세계인구전망(유엔, 2017)에 기반한 오슬로평화연구소의 분석자료

지 않는 더 많은 사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나타나고 있는 흐름은 명확하다. 침해행위에 대한 더 효율적인 보고가 부분적인 이유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연간보고서는 분쟁영향지역에 사는 아동 인구가 늘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아동이 중대한 권리 침해를 당할 위험이 더 커졌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6대 중대한 아동권리 침해행위 추적 방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분쟁 중 아동권리의 중대한 침해를 추적하기 위해 2005년 감시·보고 메커니즘(Monitoring and Reporting Mechanism, MRM)을 설치했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MRM은 유니세프 및 유엔 평화유지활동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UN Secretary-General for Children and Armed Conflict)의 감독하에 활동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MRM은 해당국가의 유니세프 대표자 및 최고직 유엔 대표가 공동 의장이 되는 국가별 감시·보고 태스크포스의 감독을 받아 활동한다.

MRM은 무력분쟁의 당사자(국가 및 비국가행위자)에 의해 자행되는 아동권리 침해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신빙성이 있는 정보를 수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가해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제출한다. MRM은 또 현장의 행위자가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와 관련한 옹호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확인된 침해행위는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연간보고서에 기재된다. 중대한 침해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확인된 분쟁당사자는 유엔 사무총장 연간보고서의 부록에 기재된다. 기재된 분쟁당사자가 명단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 중단, 예방 및 구제조치 실시를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 이행시한을 특정해서 마련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MRM이 현장에서 필요한 기록·확인 작업을 수행하고 분쟁당사자와 소통해 그 같은 침해행위를 종식·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회원국이 그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 등 충분한 자원을 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유엔 평화유지/정치임무단(peace-keeping and political missions)에 아동보호 고문 및 아동보호관 자리를 둘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충분한 자원을 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유엔 접근이 제한적인 영역에서의 활동 보안을 위해서는 아동보호 관련 비정부행위자가 이 메커니즘의 국가별 태스크포스에 접근할

수 있게하고, 가능한 경우 태스크포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합된 옹호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1 살해 및 중대한 상해(maiming)

유엔이 확인한 아동의 살해 또는 중대한 상해(maiming, 영구적 신체 손상을 불러일으키는 상해) 건수는 2017년 10,677건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약 6% 증가한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한 곳에서만 유엔이 확인한 아동 사상자는 3,179명이다. 이 중 다수는 급조폭발물(improvised explosive devices)이나 불발탄 사고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체 사상자의 최소 33%를 차지한다. 여기에는 아동을 이용한 폭발물 매설이나 폭탄 공격도 포함된다.²⁹ 유니세프에 따르면 2018년 아프가니스탄 내 살해되거나 중대한 상해를 입은 아동의 수는 더 늘어났다.³⁰ 나이지리아의 경우 무장단체인 보코하람이 아동, 특히 압도적으로 소녀를 강제로 자살 공격에 이용했으며 이로 인한 사상자 수는 2017년 확인된 나이지리아 전체 아동 사상자 수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³¹

이라크, 시리아, 예멘의 경우 공습으로 인해 아동이 특히 큰 피해를 보았다.³² 인권침해기록센터(Violation Documentation Center) 보고에 따르면 사망자의 71%가 민간인이었다. 민간인 사망자 중 57%, 아동 사망자 중 79%가 포격 및 공습으로 사망했다.³³ 통폭탄(barrel bomb)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 대부분도 민간인이었으며, 이 중 27%는 아동이었다.

미얀마, 레바논, 남수단, 수단에서는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explosive remnants of war)로 아동이 사망하는 등 지속적인 위험이 야기되고 있다. 지뢰나 집속탄(cluster munitions) 등 무차별적 무기가 교전이 끝나고 오랜 뒤에도 아동에게 주요한 위협이 되기도 한다. 아동의 경우, 기타 불발탄을 장난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잦다. 성인보다 신체가 작은 아동의 경우 폭발로 인한 부상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다. 「지뢰 모니터(Landmine Monitor)」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로 인한 사상자 중 나이가 확인된 전체 민간인 사상자의 47%는 아동이었다.³⁴

2 소년병 징집 및 사용

2017년 분쟁에서 아동이 강제로 징집되거나 소년병으로 사용된 전체 건수는 2016년 대비 3% 가량 증가했다. 비국가 무장단체나 국가 소속 군 부대와 연합군으로 징집된 아동의 수가 8,000명 가까이 늘었다.³⁵ 일부 국가에서 증가 폭이 크게 두드러졌다. 확인된 사례가 중앙아프리카공화

10,677

2017년
유엔이 확인한
아동
사망자와
중상자
숫자

국의 경우 4배, 콩고민주공화국은 2배로 증가했고, 소말리아에서도 크게 늘었다. 한편, 남수단, 나이지리아, 시리아, 예멘의 경우는 기존에 확인된 충격적 수준을 유지했다.

무장단체나 군의 아동 징집 및 사용에는 아동 성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징집 방식이나 수행해야 하는 역할과 관계없이 아동의 분쟁 참여는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안녕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인권침해를 겪게 되고, 대다수는 사망·살인·성폭력을 목격하게 된다. 이 중 다수가 폭력을 행사할 것을 강요받고 일부는 장기간 심각한 심리적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아동을 민간인 삶으로 재통합시키는 것은 아동의 삶을 재건하도록 돕는 활동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다.³⁶

3 성폭력

중대한 침해행위 중 성폭력에는 강간, 성적 노예화, 인신매매, 강제 결혼이나 임신, 인공임신중절, 불임시술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유형의 침해는 실제 침해 발생에 적게 보고되는 문제가 심각하다.

2017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는 분쟁 상황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954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2% 증가한 것이다. 이 중에 미얀마에서는 정부군인 타트마다우(Tatmadaw)가 10세의 어린 소녀를 집단 강간하고, 14세 소녀를 엄마와 형제자매 셋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단 강간하고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³⁷ 2018년 3월 발표된 유엔 시리아조사위원회(UN Commission of Inquiry on Syria) 보고서와 성폭력 생존자, 생존자 가족, 탈영병, 보건의료인, 변호사 및 피해 공동체 구성원 인터뷰에 따르면 여성, 소녀, 남성, 소년 수천 명이 성폭력 및 젠더기반폭력을 경험했다.³⁸ 이는 성폭력이 만연하게 일어나는 최근 분쟁 중 두 사례만을 열거한 것이며, 이런 보고는 그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4 납치

2017년 확인된 아동 납치 건수는 전년 대비 62% 증가한 2,556건으로 나타났다. 소말리아 한 곳에서만 무장단체 알샤바브(Al Shabaab)에 의해 납치된 아동의 수는 1,600명 이상에 달하며, 이 중에는 9세 아동도 포함돼 있었다. 납치의 통상적인 표적이 되는 곳은 학교다. 납치된 아동 거의 대부분은 소년병 징집, 성폭력, 살해 및 중대한 상해 등의 추가적인 중대한 권리 침해를 겪게 된다. 일부 긍정적 사례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분쟁 중 납치된 아동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다. 일례로 2014년 4월 보코하람이 납치한 “치복(Chibok) 소녀” 276명 중 112명은 지금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³⁹

5 학교와 병원에 대한 공격

2017년 확인된 학교 공격 건수는 1,432건으로 교육에 대한 공격이 기록된 역사상 최악의 해였다. 시리아와 예멘의 교육인프라 구조 대부분은 미사일과 폭탄으로 산산이 조각났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시리아의 학교 중 1/3이 완전히 파괴되거나 피해를 보았거나 점령됐다.⁴⁰ 예멘의 학교도 10곳 중 1곳은 파괴되거나 피해를 보았다.⁴¹ 그 결과 예멘 내 아동 약 200만 명⁴²과 시리아 아동 200만 명⁴³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분쟁이 시작된 이후 최소 750곳의 교육시설이 파괴되거나 피해를 보았다.⁴⁴ 나이지리아에서는 2,295명의 교사가 보코하람에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니세프 추정컨대, 주로 북동부 지역 학교 1,400곳 이상이 파괴되고 피해를 보거나 약탈당했고 60만 명 이상이 교육의 기회를 차단당했다.⁴⁵

시리아, 예멘, 수단, 필리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학교의 군사적 이용도 계속되고 있다.⁴⁶ 일부 경우 여성 교육에 반대하는 무장단체가 여학생을 특정하여 성폭력의 표적으로 삼는 일도 있었다. 일례로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2017년에 민병대원이 초등학교에서 17명의 소녀를 납치하고 몇 달에 걸쳐 강간한 사건도 있었다.⁴⁷ 파키스탄 발루치스탄 주에서는 여학교를 표적으로 특정하여 급조폭발물로 공격하기도 했다.⁴⁸

병원, 진료소 등 보건시설 역시 군사적 목적의 사용이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잦았으며, 의료진이 표적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한 두 가지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시리아의 경우 2017년 유엔이 확인한 병원 및 의료진에 대한 공격 건수는 108건이었다. 이러한 공격으로 6명이 사망하고 최소 29명이 부상했다. 남수단의 경우 2017년 12월 기준, 분쟁으로 인해 국가 내 의료시설 1,900곳 중 20% 가량이 폐쇄돼 있으며 50% 정도만이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다.⁴⁹ 이 같은 폭력은 아동에게 가장 보건체가 필요한 순간에 이를 파괴해버린다.⁵⁰

6 인도주의 활동 차단

인도주의 활동 차단에는 자유로운 통행의 임의적 차단, 인도적 지원물품을 필요한 사람에게 적시에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인도주의 기구의 직원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이 포함된다. 2017년 확인된 인도주의 활동 차단 사례는 1,500건 이상이며, 전년도 대비 50%가량이 증가했다. 이는 최근 몇 년 인도적 원조 차단 사례가 급증하는 추

3,179

2017년 유엔이 확인한 아프가니스탄 내 아동 사상자 숫자

데이터상 존재하는 공백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한 조사에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신빙성 있는 연구결과가 참조됐다. 그럼에도 분쟁지역에서의 아동 관련 데이터와 젠더별로 분류된 데이터에는 우려되는 수준의 상당한 공백이 존재한다. 일례로 세계 분쟁에서의 아동 사상자에 대한 포괄적이고 신뢰도 있는 데이터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읍살라분쟁데이터프로그램(Uppsala Conflict Data Programme)이나 무력분쟁사건데이터 프로젝트(Armed Conflict and Events Data project) 등 분쟁 및 사망자 데이터에 관해 권위를 가지는 출처 기관은 분쟁 사망자의 연령분포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특히 성폭력을 포함해 모든 중대한 아동권리 침해행위 발생 상황에서 실제보다 매우 적게 보고가 이뤄진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MRM(감시·보고 메커니즘)을 통해 수집되는 유엔 아동권리 침해 데이터는 제한적인 접근, 안보 위협, 유엔의 평화유지 및 인도주의 활동에서 아동 보호에 투입하는 자원의 한계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부분만을 담게 된다. 더구나 6대 중대한 아동권리 침해행위는 분쟁 중 아동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위협의 하위 집합일 뿐이다.

아래 서술할 부분에 있어 진전이 이뤄지려면 자료 취합 개선, 질 높은 자료의 활용, 더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수적 것이다.

세 속에서 나타난 높은 기록치다. 미얀마, 남수단, 시리아, 예멘에서는 아동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지원물품이 차단됐다.

이 같은 침해행위는 가장 장기화되고 극단으로 치달은 분쟁 상황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친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연구에 따르면 2018년 아동의 입장에서 본 최악의 분쟁영향국 10곳에서 기아 위험에 처한 아동 인구는 450만가량으로, 1분에 아동 1명이 사망하는 수치다.⁵¹ 세계의 분쟁지역에 사는 수많은 아동이 항생제나 식량과 같은 필수적 지원물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분쟁지역에 사는 아동은 다른 어떤 사유보다 질병이나 기아로 사망할 위험이 높게 나타나는데, 인도주의 활동 차단은 그러한 아동이 겪는 고통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⁵² 이러한 침해행위는 사람들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기아에 노출된 것이 아니라 기아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기아 범죄(starvation crimes)”로 규정돼왔다.⁵³

국제인도법 및 관습법상 민간인 주민에 대한 고의적인 기아사태 유발은 금지되는 행위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관한 로마규정은 특히 하기도 비국제적 무력분쟁에서 이러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이 같은 모순을 바로잡는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2019년 12월 로마규약 당사국 총회 18차 회기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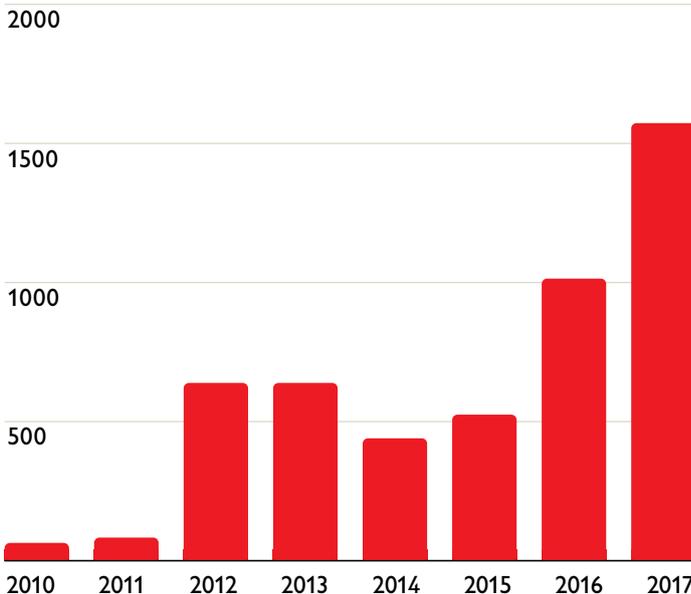


도표5: 인도주의 활동 차단 횟수

분쟁지역에서 인도주의 활동 차단이 최근 10년 급격하게 증가했다.

출처: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분석자료

무력분쟁이 아동에게 해악을 끼치는 방식

분쟁에서 아동은 성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고통을 받는다. 이는 아동이 신체적으로 더 약하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인보다 아동이 잃게 되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동의 신체적·정신적·심리적 발달은 어린시절 경험하는 환경에 크게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분쟁은 아동의 여러 개인적 특성에 따라 각자에게 다른 영향을 미친다. 주요하게는 젠더, 나이에 따른 차이를 비롯해 장애 여부, 민족적 배경, 종교나 도시/지방 거주 여부 등도 각기 다른 영향을 준다. 무력분쟁이 아동에 끼치는 해악은 성인보다 더 극심할 뿐 아니라 해당 아동과 그 아동이 속한 사회에 더 오랫동안 영향을 미친다.

영양실조, 질병, 보건의료 부족

분쟁 관련 이환율(morbidity)과 사망률(mortality)에서 아동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⁵⁴ 분쟁 지역에서는 총알이나 폭탄으로 사망하는 아동보

다 영양실조, 질병, 보건의로 부족으로 사망하는 아동이 더 많다. 앞서 언급한 10개국에서만 최근 5년간 최소 85만 명의 아동이 이 같은 분쟁의 영향으로 사망했다. 예멘의 경우 2015년 4월부터 2018년 10월 사이 극심한 기아로 아동 85,000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직접적 요인으로 아동 사망을 간주한 그 어떠한 추정치보다도 높은 것이다.⁵⁵ 분쟁은 아동을 급성/만성 영양실조에 빠지기 쉽게 만들며 아동의 성장, 면역 및 대사체계의 기능, 인지 발달에 지장을 준다.⁵⁶ 전 세계 발달 저해 아동 1억 5,000만 명 중 약 3/4 가량이 분쟁지역에 살고 있다.⁵⁷ 영양실조로 아동이 사망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영향은 평생 나타나 그 아동의 인생을 바꿔버릴 수도 있으며,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아동이 첫 2, 3년 동안 올바른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아 신체와 인지 발달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회복이 불가능하다.⁵⁸ 모성 영양실조는 아동에게도 위험한데, 특히 임신이나 수유 중인 경우 저체중 신생아 출산이나 아동 발달 저해를 야기한다.

분쟁 중 보건, 물, 공중위생 인프라 설비가 파괴되거나 이를 이용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은 아동이 처한 위험을 더욱 악화시킨다. 분쟁영향국에서 아동 사망률을 높이는 데 일조하는 폐렴, 설사, 말라리아, 홍역 등의 질병은 대부분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이 같은 질병으로 사망하는 아동이 더 많은 까닭은 불안정 때문에 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보건체계나 영양이 갖춰진 식량이 가용하지 않거나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직화된 폭력이 인근에서 벌어진다는 점도 의료기관에서의 출산 가능성을 크게 낮추게 된다. 일례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매년 아동 47,000명 가량이 보건시설 밖에서 출생되어 향후 건강상의 이상을 겪을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⁵⁹ 보건서비스 부족, 청소년 임신 위험 증가, 높은 합병증 발병률(예방가능한 모성 사망 등) 간에는 연관관계가 존재한다. 임신 관련 사망 위험은 20대 여성에 비해 15~19세 소녀의 경우 2배 가량 높고, 10~14세 소녀의 경우 5배 높다.⁶⁰

사망 및 상해

분쟁 중 아동은 성인과는 현저히 다른 방식으로 살해되고 부상을 입는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지원한 새로운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동은 폭발사고에서 성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상해를 입게 되며, 이와 관련한 특유의 취약점을 가진다. 예를 들어 근거자료에 따르면 아동은 성인에 비해 두부 및 안면 외상을 입는 경우가 더 잦게 나타나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아동이 불발탄을 집어들 확률이 높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다. 연구에 따르면 안면, 두부, 목, 팔, 몸통에 관통상을 입는 것에도 아동과 성인 간 차이가 존재한다. 아동 환자의 경우 80%가량이 관통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인 환자 31%인 것에 비해 현저히 높다.⁶¹ 이 연구에서는 또 성인의 수혈 절차가 아동

군인에 의한 강간과 성폭행: 마시카의 사례

마시카는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으로, 아버지가 사망했을 당시 마시카와 형제자매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학업을 중단하고 무장단체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마시카는 무장단체의 주둔지로 향하던 길에 한 군인에 의해 강간당했고, 마시카는 그 후 걸을 수조차 없었다.

마시카는 며칠 동안은 회복하며 보냈고, 그리고 나서는 입소하기로 했던 군사조직이 있던 주둔지로 향했다. 마시카는 무기 사용법을 훈련받았고, 또 군인 여러 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 되었다.

마시카는 “(군인들은) 끊임없이 성관계를 요구했어요”라며 “나중에는 그냥 포기하고 상황을 받아들 이게 됐어요”라고 말했다.

결국 마시카는 다른 소녀 2명과 함께 탈출하게 되었다. 마시카는 집으로 돌아온 후 지금은 삼촌과 함께 살고 있으며,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마시카는 “언젠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모든 일이 불가능해 보였어요. 내게 유일하게 남은 선택지는 무장단체에 입소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에게는 효과가 없으며(우측 상자 기사 참조), 폭발로 부상을 입은 아동은 성인에 비해 사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⁶² 또, 신체적 부상을 당한 아동의 경우 장애를 입을 수도 있는데, 특히 장애 학생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 접근권이 제한되는 등 상당한 이차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안보상황이 불안하고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특히 그렇다.

정신건강상의 장기적 피해

분쟁, 폭력, 불안정 속에 노출되는 상황은 아동에게 커다란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들이 겪는 고통은 분쟁이 끝난 뒤에까지 지속될 수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분쟁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시리아 사례에 대한 연구에서는 피면접자 중 성인의 84%와 아동 대부분이 일상생활에서 받게 되는 심리적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으로 폭격 및 포격을 꼽았다.⁶³ 성인 피면접자 89%는 아동이 이전보다 더 두려워하고 긴장하는 행동을 보였다고 밝혔고, 71%는 아동이 이전보다 더 잦게 야뇨 및 비자발적 배뇨 현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에 수행된 이라크 연구에서는 모솔로 귀환한 아동 중 43%가 항시 혹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슬픔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했다. 청소년 1/4 이상은 자기 모습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고, 12%는 자기가 아주 조금밖에 없다고 응답했다.⁶⁴

두 연구결과 모두에서 아동은 극심하고 빈번하거나 장기화된 재난을 겪을 경우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의 한 종류인 악성 스트레스와 연관된 징후를 보였다. 악성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면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평생 동안 영향이 미칠 수 있다.⁶⁵ 악성 스트레스는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나중의 삶에서 건강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인생 초기의 아동 경험이 뇌 발달 구조에 영구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악성 스트레스는 인지 발달 및 정서 조절에 심각하고 영구적인 악영향을 준다. 특히 아동기 초기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장기간 축적되면 뇌의 학습과 사고를 관장하는 영역으로의 신경 연결이 저해될 수 있으며, 이후의 삶에서 아동의 수행능력에 영향을 주게 된다. 분쟁은 이 같은 방식으로 해당 사회 내에서 다음 세대가 치러야 할 또 다른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교육 기회 상실

교육은 기본적인 권리이자 생명을 살리는 인도주의적 해법이다. 더 나아가 위기상황에 사는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볼 때마다 늘상 나오는 대답은 교육을 계속 받고 싶다는 것이다.⁶⁶ 분쟁 속에 사는 아동에게 학교는 배움의 안전한 공간과 정상 일상의 기분, 평온함이라는 소중한 느낌을 제공한다. 학교는 보호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며, 아동이 사는 환경 속의 위험과

폭발로 인해 발생한 아동 부상자 치료의 어려움

“지난 10년 동안 성인 폭발 부상자에 대한 치료법이 개선되면서 생존율이 높아졌지만 현재 아동 환자의 출혈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는 뚜렷한 합의가 없다. 아동용 지혈대도 존재하지 않으며, 아동에 맞춘 수혈 절차도 거의 없다. 현재 연구에 따르면 폭발로 부상을 입은 아동은 부상 시점부터 성인에 비해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또 아동이 폭발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단체로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폭발에서 살아남아 병원으로 후송되더라도 부상의 심각성이나 복잡성으로 동시에 즉각적인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데 현존하는 치료 역량으로는 감당이 어려울 수 있다.”

“부상을 당한 시점에서의 치료 외에도 아동 폭발 부상자의 장기 치료는 미해결 과제다. 아동이 느끼는 고통에 대한 이해 수준은 낮고, 그러한 상태에 대한 치료법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궁핍한 상황에 놓여있거나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 처한 아동이 의수나 의족이 필요한 경우 정형외과적 기술이 불충분하며, 그러한 아동 환자가 부상 치료에 필요한 전문적 수준의 재활 치료를 받는 경

우는 거의 없다. 또, 아동이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그 의수나 의족이 잘 맞을지도 없다.”

“재활 외에도 아동 폭발 부상자에게는 깊은 심리적 차원의 문제가 존재한다. 수족이나 시각·청각을 잃는 것 외에도 아동은 가족이나 집, 글을 깨우치는 것, 교육, 결혼, 고용의 기회를 잃었을 수도 있다.”

“아동 폭발 부상자 치료의 개선과 생존을 넘어 이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부상 시점부터 재활, 또 그 이후를 책임질 현지 역량의 개발에 달려있다.”

에밀리 메이휴(Emily Mayhew) 박사,
소아 폭발 부상 파트너십(Paediatric Blast Injury Partnership) 공동회장,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현재 거의 모든 위기지역 및 분쟁영향국의 아동 7,500만 명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

부정적 대처방식으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지키는 경우가 많다. 학교는 성폭력, 조혼, 위험한 노동 및 군대나 무장단체 징집을 줄일 수 있다. 안전하고 양질의 교육은 아동의 미래 삶의 기회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장기적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줄 사회적 잠재력의 핵심 요인이다.

그럼에도 분쟁 중에는 무장행위자가 학교를 공격하고, 학교를 막사, 상점, 보호소, 취조실, 구급시설로 사용하는 경우가 잦다.⁶⁷ 광범위한 지역 효과를 가지는 폭발성 무기는 학교 등 도심의 주요 인프라설비에 상당한 수준의 무차별적 피해를 준다. 교육에 대한 공격으로 야기되는 즉각적 결과에는 아동의 사망이나 부상, 시설 파괴, 학습 접근권 차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이는 교육의 질 하락, 교사의 감소, 교육체계 약화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⁶⁸

현재 거의 모든 위기지역 및 분쟁영향국의 아동 7,500만 명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⁶⁹ 이중 소녀의 경우 특히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으며,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⁷⁰ 남수단의 경우를 예로 들면 초등교육 취학연령 소녀의 72%가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데 반해, 같은 연령대 소년의 비율은 64%다.⁷¹ 케냐의 케쿠마 난민 캠프에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중 단 38%만이 소녀다.⁷²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 370만 명 중 60%가 소녀다.⁷³

최근 몇 년 동안 세이브더칠드런 옹호활동의 주안점은 난민 아동의 교육에 있었다. 세계 아동의 91%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것에 비해 난민 아동의 61%만이 초등학교에 다닌다.⁷⁴ 난민 아동의 중등교육 취학률은 더욱 심각하다. 전 세계 84%의 청소년이 중등교육을 받는 데 비해 난민 청소년은 단 23%만이 중등교육을 받는다. 전 세계 취학연령 난민 아동 400만명 중 절반 이상이 학교를 다니지 않으며, 난민의 경우 세계 평균 대비 5배 높은 수준이다.⁷⁵ 또 공식적인 난민캠프나 보호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학교는 피난을 떠난 사람들의 보호소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잦아, 난민 수용국 지역에서도 교육 접근이 저해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아동 성폭력 및 젠더기반폭력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아동에게 장·단기적으로 여러 가지로 큰 악영향을 미친다.⁷⁶ 소녀와 소년 모두 성폭력을 경험하지만, 전사·평시 여부와 관계없이 소녀가 성폭력의 대상이 되고 그 영향을 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 분쟁상황에서는 성폭력, 조혼, 성희롱, 여성 할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인신매매, 성적 착취 및 학대 등 여러 형태의 젠더기반폭력이 더욱 심화된다. 이 같은 폭력이 야기하는 신체적인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소녀가 겪는 건강상의 영향에는 외상으로 발생하는 누공 등 심각한 신체적 상해, HIV/AIDS와 같이 성관계를 통해 전이되는 전염병, 강제적 또는 원치 않는 임신, 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하지 않은 인공임신중절이나 아동의 신체가 아이를 낳기에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모 사망 또는 질병 증가 등이 있다. 아동 성폭력의 심리적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강간 피해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을 공동체가 낙인찍고 가족과 공동체가 아동을 배척하면서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잦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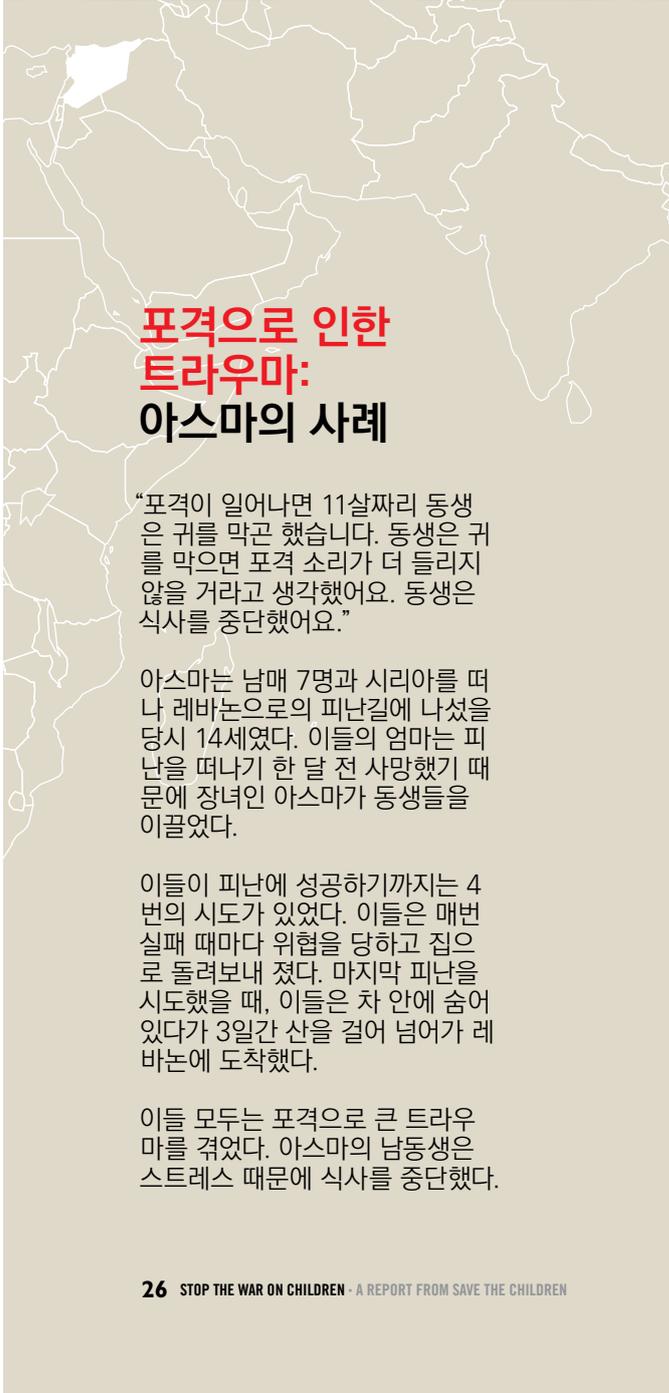
소녀들은 자신의 젠더 때문에 강제적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되거나, 수입 획득 기회나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을 차단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는 사회적 배제와 낙인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강간으로 임신한 소녀에게 더욱 가혹하게 나타나며, 심지어는 가해자와의 결혼을 강요받는 경우도 있다. 다수 소녀가 경험하는 배제는 이들을 극심한 빈곤으로 내몰고, 성적 착취나 인신매매에 더 취약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로 몰아넣는다. 소녀들이 겪는 성폭력에는 다른 형태의 심각한 낙인이 찍힌다. 그로 인한 결과 중 하나는 실제 사건 발생보다 신고가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조혼

분쟁은 소녀가 조혼에 취약한 상황으로 내모는 불평등을 키우고 악화시킨다. 부모와 아동은 조혼을 하는 이유로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 의도치 않은 청소년기 임신으로 인한 영향, 가족의 수치심, 지각된 불명예(perceived dishonour), 낙인, 무



PHOTO: NOUR WAHID / SAVE THE CHILDREN



포격으로 인한 트라우마: 아스마의 사례

“포격이 일어나면 11살짜리 동생은 귀를 막곤 했습니다. 동생은 귀를 막으면 포격 소리가 더 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동생은 식사를 중단했어요.”

아스마는 남매 7명과 시리아를 떠나 레바논으로의 피난길에 나섰을 당시 14세였다. 이들의 어머니는 피난을 떠나기 한 달 전 사망했기 때문에 장녀인 아스마가 동생들을 이끌었다.

이들이 피난에 성공하기까지는 4번의 시도가 있었다. 이들은 매번 실패 때마다 위협을 당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마지막 피난을 시도했을 때, 이들은 차 안에 숨어 있다가 3일간 산을 걸어 넘어가 레바논에 도착했다.

이들 모두는 포격으로 큰 트라우마를 겪었다. 아스마의 남동생은 스트레스 때문에 식사를 중단했다.

주택 상태, 굶주림과 기아 등을 꼽았다.⁷⁷ 일부 경우 조혼이 분쟁영향국과 난민캠프로부터의 이주를 용이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⁷⁸ 다른 경우에는 무장단체가 아동의 강제 혼인과 성노예화를 전쟁의 무기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⁷⁹ 분쟁 상황에서 성과 재생산, 모성, 신생아, 아동 관련 보건서비스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은 소녀가 너무 어린 나이에 임신하게 되거나 어린 산모와 아이가 출산 및 임신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분쟁 상황의 예를 한가지만 들자면, 시리아와 시리아 난민 인구 중 소녀의 조혼률이 증가한 사례를 들 수 있다.⁸⁰ 18세 미만 아동의 혼인은 시리아에서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장기화된 분쟁 상황에서 조혼이 하나의 대처수단이 되어버렸다. 결혼이 자신의 딸을 외부인이나 무장단체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에서, 또 가족이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소녀의 가족이 결혼을 주선하는 사례도 있다. 레바논에 거주하는 15~19세 사이의 시리아 난민 소녀 10명 중 3명은 결혼을 했는데, 이는 2017년 대비 7% 증가한 수치다.⁸¹ 요르단 내 시리아 난민 중 18세 미만 소녀와 관련한 결혼 등록 비율은 2011년 12%에서 2012년에는 18%, 2013년에는 25%, 2014년 초에는 32%로 나타났다.⁸²

이집트, 이라크, 터키 내 시리아 난민 중 조혼이 증가했다는 유사한 보고도 있었다.⁸³ 분쟁이 조혼에 미치는 영향과 분쟁 상황에서 조혼 방지, 결혼한 소녀의 권리 보호 방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데이터 수집·배포·분석 개선이 필수적이다.

군이나 무장단체 연루 의혹을 받는 아동에 대한 권리 침해

전 세계적으로 아동 본인 또는 가족이 무장단체 연루 의혹을 받는 아동 수천 명이 안보위협으로 간주돼 구금되거나 기타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아동이 고문이나 학대를 당하거나, 성인 수용자와 같이 수용되거나, 적절한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국제기준에 위배되는 환경에 구금되었던 여러 사례가 기록됐다. 10세 이상 남자 청소년의 경우가 특히 더 취약하다. 일례로 2016년 소말리아에서는 알샤바브에 강제징집됐다가 나중에 붙잡힌 소년 67명이 구금된 사례가 있었다. 이 중 몇몇은 20~3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10명은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후에 2016년 이들을 대변하여 이뤄진 옹호활동의 결과로 감형되었다. 이라크에서는 2017년에 최소 1,036명의 아동이 국가안보 관련 혐의로 청소년 구금시설에 구금됐는데, 이들 대부분은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 연루 의혹을 받는 이들이었으며 이중 다수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⁸⁴ 팔레스타인 아동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대규모로 체포되

아동 관련 분쟁의 젠더역학

아동이 겪는 분쟁의 경험은 젠더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청소년기 소년의 경우는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인식과 잠재적 전투능력 때문에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소녀의 경우 성폭력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소녀와 여성에 대한 공격은 공동체를 뒤흔들기 위한 무장단체의 의도적 전술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다. 공동체 전체를 강제로 쫓아내기 위한 목적에서 소녀와 여성을 공격하는 사례도 잦다.

분쟁 시기에는 젠더 규범이 특히 더 중요해진다. 소녀의 경우 특히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공동체의 규범이나 무장단체가 이상으로 삼는 규범을 어긴다는 이유로 표적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위반행위'에는 공공장소에 출입하거나 노동활동에 참여하거나 복장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나이지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의 국가에서는 무장단체가 가지고 있는 젠더 관점 때문에 소녀, 여성, 학교가 공격을 받았다.

실질적이고 신빙성 있는 젠더 폭력 위협은 공포심을 고조시킨다. 이는 교육, 보건서비스, 정보, 법적 지원 접근 등 소녀의 사회적 유동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일부 환경에서는 소녀가 보호를 받겠다는 목적이거나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결혼을 한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이는 상당 부분 무장행위자의 증가와 관련한 공포감 때문일 수 있다. 그 같은 우려를 근거가 없다고 치부할 수 없다. 근거자료에 따르면 무장행위자 수의 증가가 생존을 위한 성관계를 포함한 성적 착취 및 학대와 연관이 있

다는 점이 드러난다. 성폭력, 조혼, 청소년 임신의 위험이 커지게 되면 모성 사망의 위험도 커지게 된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이나 뿌리 깊은 젠더 규범 때문에 성적 및 재생산 서비스 접근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에는 그 같은 위험이 특히 더 커지게 된다.

젠더 규범과 젠더 관련 밀고 당기기(push and pull) 요소를 활용한 아동 징집이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 소년은 소녀에 비해 더 많이 징집될 것이라는 통상적인 추정 은 정확하다. 유엔 아동과 무력분쟁 데이터에 따르면 징집된 아동 중 소년의 비중이 제일 크다. 그럼에도 세이브 더칠드런이 접한 사례 중에는 소녀들에게 더 큰 자유와 자율성, 교육 및 기타 기본적 필요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징집한 경우도 있었다. 소녀에게는 아내를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과 같은 젠더 관점에서의 당기기 요인이 사용되기도 했다.

아동이 납치되는 사례들을 보면 소년의 경우 군사목적상 무장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해 납치되는 경우가 많았고, 소녀는 아내나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기위한 목적으로 납치되는 경우가 보통이었다. 그럼에도 통상적으로 재통합 프로그램에서는 소년과 소녀가 경험한 상이한 납치의 경험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

어 이스라엘군 구금시설에 수용돼 군사재판을 받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부 경우는 야간에 자신의 집에서 체포되는 사례도 있었다. 2018년에는 구금 중인 아동의 수가 월평균 312명 수준이었다.⁸⁵ 이 같은 관행은 콩고민주공화국이나 수단과 같은 다른 분쟁지역에서도 만연하게 일어났다.

군이나 무장단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는 아동은 일차적으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간주하여야 한다.⁸⁶ 이들은 회복적 정의 및 사회적 갱생의 국제법 체계에 부합되는 처우를 받아야 하고, 가능한 경우 이들에 대해서는 구금을 대체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아동의 구금은 언제나 아동에게 위해가 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의 체포·구금·수감은 가능한 최단기간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돼야만 한다.

더 넓게 보자면 부모와 가족 구성원이 무장단체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심을 받는다는 사실은 아동 수만 명과 그 가족이 집단처벌에 처해지며⁸⁷, 그 결과로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이동의 자유 없이 난민캠프에 살게 되기도 한다. 2017년 나이지리아, 니제르, 카메룬에서는 아동 2,199명이 보고처럼 연루되었거나 가족이 연루되어 있다는 이유로 자유를 박탈당한 것으로 보고됐으나 후에 나이지리아 당국은 이들 중 다수를 석방했다.⁸⁸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는 아동 수천 명이 자신의 가족 구성원이 ISIS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이동의 자유없이 난민캠프 내에 갇혀 살고 있다.⁸⁹

2장

아동에 대한 전쟁의 세 가지 차원

행동을 위한 3가지 지침

1

분쟁시 행위규범 준수

2

가해자 책임추궁

3

현장에서의 실질적 조치

1장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아동에 대한 전쟁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치명적이며 파괴적이다. 시리아에서부터 남수단까지 현재 세대 아동의 미래에 대한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

아동에 대한 전쟁에서는 분쟁 중 아동 보호를 위해 보편적으로 합의된 국제적인 법규범 체계가 노골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국제규범에 대한 미준수의 위기를 구성하는 3가지 차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분쟁 시 행위규범 미준수
2. 아동권리 침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 실패
3. 아동 보호 및 회복 지원을 위한 현장에서의 실질적 조치 미비

아래에서는 예멘 전쟁, 로힝야 위기, 남수단 분쟁의 세 가지 사례를 통해 각각의 차원을 살펴본다.

미준수로 인한 위기

중대한 아동권리 침해가 발생하는 환경을 제거하려면 애초에 분쟁과 잔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단합하여 분쟁을 신속히 중단시켜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시리아, 남수단, 예멘, 미얀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아동이 겪어온 오랜 고통의 일차적 원인은 국제사회가 적시에 단합된 조치를 하지 않은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단순히 분쟁이 발생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분쟁 중 아동권리 침해가 만연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모든 아동에게 예외 없이 존엄과 자아실현의 삶을 살 권리가 있음을 천명한 찬란하게 생동하는 문헌”⁹⁰인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비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은 아직도 권리보유자로서 보편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특히 무력분쟁의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다.

분쟁이 벌어지는 환경, 또 더 중요하게는 분쟁 당사자 및 분쟁당사자에 영향력을 가진 이들의 행위(작위 및 부작위)는 아동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발생 여부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본 보고서 도입부에서 개괄한 바와 같이 분쟁 중 아동의 권리 보호와 관련해서는 방대한 법적·규범적

체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그 같은 규범체계가 지켜지고 있지 않다. 현대 세계에서 수많은 아동들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핵심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미준수 위기의 세 가지 차원

첫 번째는 국가 및 기타 무장행위자가 군사행위자로서 자신의 군사행동에서든 타 행위자에게 요구하는 행동에서든 분쟁에서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동 친화적” 전쟁지역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아동이 처한 위협의 수준은 전투원이 인도법, 인권법, 형사법에 따른 책임과 민간인 보호에 관한 최고 수준의 기준을 얼마나 준수할 것인지(또는 무시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국제인도법에는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별할 의무, 공격행위가 군사 목적상 비례의 원칙이 부합하도록 보장할 의무, 공격을 하기 전 민간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다. 분쟁당사자는 항상 이러한 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제법적 요건 외의 행위규범에는 분쟁이 아동에 미치는 위협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추가적 조치가 포함된다. 주거 지역 내 폭발성 무기 사용 최소화, 군사적 목적의 학교 사용 자제, 민간인 사상자 현황이나 기타 민간인 피해 현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민간인 피해 문제에 대처하는 것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4개 제네바협약 공동조항 1조는 서명국에 협약 ‘존중’뿐만 아니라 협약이 ‘존중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중요한 원칙인데, 즉 다른 국가나 비국가행위자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위반할 때 이를 외면하는 것이 사실상 그 같은 위반 행위를 가능케 한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무기나 군사장비, 관련 서비스가 아동에 대한 불법적 공격에 사용될 위험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분쟁당사자에게 해당 무기 등을 판매하는 것은 이 같은 기준저해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아동권리 침해의 가해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추궁을 두려워할 이유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국제법 위반의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범죄가 공개되고 국제적인 규탄을 받더라도 대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경제적·법적 결과도 마주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아동을 대상으로 중대한 침해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방법은 거의 없으며, 불처벌의 문화가 영속된다. 현재 국제적 책무성 체계는 기본적인 인류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충분한 정치적 의지가 없다면, 아동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동권리 침해행위의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시급하게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 국내 사법절차 강화
- 국제적인 수사 메커니즘에 대한 지원 및 자원제공 확대
- 아동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집단이라는 점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수사 및 기소에 대한 전문성 강화
- 가해자에 대한 선제적인 표적 제재(targeted sanctions) 확대
- 국제형사재판소, 임시 재판소 등 국제 사법 메커니즘에 대한 지원 강화, 보편적 관할권 원칙 적용 확대

아동권리 침해 가해자들을 억제할 방법은 거의 없으며, 불처벌 문화가 영속된다

세 번째는 아동의 보호와 회복 지원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충분히 취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분쟁당사자들은 아동 보호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며 제3자가 지원을 제공하도록 허용하지도 않는다. 중대한 보호 문제에 대한 책임 규명은 허술히 이뤄지기 때문에 보호를 중심에 둔 인도적 지원을 보장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특히 장기화된 위기 상황에서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분쟁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 개입 활동이 자원 부족 문제를 겪고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 2017년 유니세프는 일종의 인도적 아동 보호 지원을 받은 아동의 수를 280만명으로 보고했는데⁹¹, 이는 전체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유니세프는 전 세계에서 51개국의 아동 약 4,800만 명에게 인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한다.⁹² 2010~2018년 사이 인도적 대응 계획 중 모든 형태의 인도적 보호 활동(아동 보호에 한정된 것이 아닌)에 필요한 자원과 실제 지원된 금액상의 간극이 현저한 수준에 이르게 됐다. 2010년 당시 이 비율은 42%로 이미 낮은 수준이었는데, 2018년에는 단 37% 수준까지 떨어졌다.⁹³ 2010~2018년 전체 인도적 원조 중 전체 보호 분야에 배정된 자원은 전체의 단 2.5%에 불과했는데, 같은 기간 아동 보호 분야에 배정된 자원은 0.5%에 그쳤다.⁹⁴ 또, 보호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장기간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호 분야에 재원이 다년간 배정되는 경우는 너무도 적었다.⁹⁵

분쟁 영향 하의 아동에 대한 교육 역시 자원 부족과 단기적 접근법으로 이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다. 지뢰 위험 교육이나 평화유지 활동에서 충분한 민간인 보호 역량이 갖춰지도록 보장하는

5분의 1

예멘에
충당된
학교의 비율

것 등 다른 형태의 실질적 보호 활동도 마찬가지다.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도 늘려야 한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정신건강 및 심리 지원은 매우 불충분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재건 노력에서도 교육, 보건체계, 정신건강 지원, 신체 재활, 또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문 교육 등을 통한 투자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지지 않는다.

다음의 각 사례 연구는 위에서 다룬 세 가지 차원을 잘 드러내고 있다. 각각의 사례 모두에서 세 가지 차원(행위규범, 책무성, 실질적 조치) 전반에 걸친 실패가 드러나지만, 각 사례는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차원의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1 분쟁 시 행위규범의 미준수: 예멘 전쟁

예멘 내 아동은 세계 최대의 인도적 위기 상황에 부닥쳐있다. 예멘 전쟁은 약 4년 전 시작된 분쟁으로 국토가 황폐해졌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와 연합군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세계의 외교·군사적 지원으로 비국가 무장단체 후티 반군을 상대로 군사 공격을 감행했다. 당시 후티 반군은 압드라부 만수르 하디 대통령을 필두로 한 예멘 정부에 반기를 들고 국토 주요 부분을 점령했던 상황이었다. 현재 전체 인구의 약 80%를 차지하는 2,400만 명이 인도적 원조가 필요하며⁹⁶, 이중 최소 1,130만 명은 아동이다.⁹⁷ 국내 1,800만 명이 식량불안(food insecure) 상태에 처했으며, 이 중 840만 명은 극심한 기아로 고통받고 있다.⁹⁸ 의료시설 절반 이상이 파괴되거나 폐쇄되는 등⁹⁹ 보건체계는 위태로운 상황에 부닥쳐있다. 이런 상황은 그렇지 않아도 국가적 경제 위기와 광범위한 영양실조, 콜레라와 기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등 심각한 위협으로 허덕이던 예멘인들에게 어려움으로 가중되고 있다.

유엔은 분쟁의 모든 당사자가 저지른 중대한 아동권리 침해행위 및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위반행위 등 국제법 위반을 나타내주는 강력한 증거를 문서화했다.¹⁰⁰ 일례로 모든 분쟁당사자는 인도적 원조의 접근을 제한해 예멘 아동이 겪는 고통을 가중시켰다.

2017년 11월, 사우디-에미라티연합군(Saudi-and Emirati-led coalition, SELC)이 사나 공항과 주요 해상 항구를 차단하는 한 달간의 봉쇄를 했다. 2017년 12월에 항구가 개방되기는 했지만, 행정·물류 장벽을 통한 사실상의 봉쇄는 계

속되었으며 상용 항공기의 사나 공항 이용은 여전히 막혀있어 예멘인들이 해외에서 종종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차단되고 의료보급품 수입도 가로막혔으며 가족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장애물들은 필요한 경우 구호품의 신속하고 무해한 통과를 허용하고 촉진해야 하는 국제인도법상 요건에 반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제한으로 인한 영향의 규모로 볼 때 이는 국제인도법 하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유엔 현인·전문가 그룹(UN Group of Eminent Experts)은 이와 관련해 “그 어떤 군사적 이점이 있다 해도 그것이 수많은 사람이 겪은 극심한 고통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¹⁰¹ 그럼에도 국제사회는 이 같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예멘 전쟁에서의 아동 사망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주거지역에서의 폭발성 무기 사용이 파괴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음을 증명할 수는 있다. 가장 많은 직접적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킨 요인은 공습으로,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 사이 총 18,942회의 공습이 일어났다. 이는 4년에 걸쳐 매일 14회, 102분마다 1회씩 공습이 일어났다는 뜻이다.¹⁰² 무력분쟁 위치 및 사건 데이터(Armed Conflict Location and Event Data, ACLED)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분쟁의 직접적 결과로 발생한 총 사상자는 분쟁이 시작된 이래로 6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빈번하게 인용되는 유엔 집계치인 1만 명의 6배 수준이다.¹⁰³

이 중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2018년 8월 수학 여행 중이던 학생과 교사 40명이 공습으로 사망한 사건이었다. 폭탄을 투하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항공기였지만 잔해 분석에 기초한 보고에 따르면 폭탄은 미국에서 제조되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판매된 것이었다.¹⁰⁴ 예멘 전쟁에서의 적대행위에서 아동을 살해하는 데 사용된(또는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무기를 판매한 국가는 미국뿐이 아니다. 캐나다, 중국, 프랑스, 조지아, 이탈리아, 세르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터키, 영국 역시 사우디-에미라티연합군에 무기나 군사장비를 판매하거나 기술이나 훈련, 기타 수단으로 전쟁을 지원했다.¹⁰⁵

학교에 대한 공격은 특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학교 인근에 있는 학생, 교직원, 기타 민간인이 죽거나 다치게 될 직접적 위험뿐 아니라 아동이 교육을 받고 미래를 개척해나갈 기회를 앗아가기 때문이다. 유엔의 지지를 받는 예멘 정부는 무력분쟁 시 군사적 사용으로부터 학교와 대학의 보호를 위한 지침(Guidelines for Protecting Schools and Universities from Military Use during Armed Conflict)과 더불어 교육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폭넓은 서약이 포함된 안전 학교 선언(Safe Schools Declaration)에 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외 분쟁당사자는 이 지침과 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없다.¹⁰⁶



파괴된 학교:
파하드(12세)가
모술 서부에서
자신이 다니던
학교 밖에서 있다.
파하드의 학교는
이라크군과 ISIS의
교전 과정에서 막대
한 피해를 보았다.

2018년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연간보고서에서는 사우디-에미라티연합군이 실시한 19차례의 공습을 포함해 학교에 대한 공격 20건이 확인됐으며, 분쟁당사자가 학교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 8건도 확인됐다.¹⁰⁷ 사우디 아라비아는 사우디-에미라티연합군 본부에 아동 보호 부서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고, 유엔 사무총장은 2018 보고서에서 학교나 병원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국가 명단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올리지는 않았지만, 2018년에도 이같이 유해한 공격 패턴은 계속됐다.¹⁰⁸ 예멘의 학교 5곳 중 1곳은 피해를 보거나 파괴되었고, 실향민을 위한 보호소로 기능하고 있거나,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¹⁰⁹

유엔은 민간인 지역에 대한 반복되는 공습에 대해 사우디-에미라티연합군이 국제인도법 존중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경고했다.¹¹⁰ 또 국제인도법을 더 엄밀하게 적용하겠다는 일체의 노력이 실제 민간인 피해를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도 거의 없다. 2018년 7월에서 8월 사이 사우디/아랍에미리트 연합군이 비군사지역에 대해 공습을 감행한 횟수는 군사 표적에 대한 공습 횟수의 2배로 해당한다.¹¹¹ 이는 전체 공습 중 비군사 표적에 대한 공습 비율이 이미 우려될 수준이었던 1/3로 나타났던 2015년 3월 이래의 기존 통계치에 비해서도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더구나 주요 국제인권단체들은 사우디-에미라티연합군이 국제인도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 이들의 조사가 “투명성·독립성·불편부당성, 효과성”¹¹² 등의 “국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¹¹³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사우디-에미라티연합군은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최소 3차례에 걸쳐 분쟁당사자의 국제인도법 준수, 적대행위 중단, 일체의 선결조건 없이 성실히 유엔 주도의 정치적 프로세스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채택을 성공적으로 저지했다. 그럼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8년 12월 21일 유엔 주도 평화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스톡홀름에서 체결된 합의를 지지하고 이행 지원체계 제공을 골자로 하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451호를 채택했다.¹¹⁴

예멘의 사례는 분쟁의 모든 당사자가 분명한 태도로 기본적인 국제행위규범을 일관되게 준수하지 않았던 중요한 사례다. 더구나 모든 당사자가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질렀지만, 사우디-에미라티연합군의 경우 그러한 행위가 다수의 강력한 국제적 동맹국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이는 국제사회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모든 국가가 준수해야 할 규범과 기준을 강력히 요구하지 못했던 생생한 사례로, 아동에게 예상되던 파괴적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규범 기반의 국제적 체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동과 아동의 권리 보호가 선택사항이나

협상 대상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가 분쟁 중 아동의 보호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도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국제사회 구성원이 분쟁당사자의 행위 규제를 위해 확립된 법규범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일관성 있게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주장하고 또 주장해야 할 것이다.

2 가해자 책임추궁 실패: 로힝야 위기

“정치권과 군 지휘부 각급 인사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추궁과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이상 무력분쟁 상황에서 이들의 행위를 규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가해자가 불처벌을 누리게 하는 것은 법에 대한 무시와 폭력의 순환고리가 되풀이되는 일로 이어질 뿐이다.”

그라사 마셸 (Graca Machel)¹¹⁵

느슨한 조직 형태를 가진 로힝야 무장단체가 미얀마 경찰과 국경경비초소에 대한 일련의 공격을 감행하고 난 뒤 2017년 8월 25일, 미얀마 경찰은 북 라카인 주의 로힝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공격을 개시했다. 다음 달에만 절반가량의 아동 인구를 포함한 로힝야 주민 최소 73만 명이 폭력을 피해 인접국인 방글라데시로 피난했다. 이는 1994년 르완다 제노사이드 사태 이래로 그 속도와 규모 면에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집단적 이주사태였다.

이 같은 폭력으로 수천 명이 사망했고, 더 많은 수가 부상을 당하고 심리적 영향을 받게 됐다. 방글라데시 현지에서 생존 아동과 그 가족과 함께 활동하는 세이브더칠드런 현지 팀은 이후 인종청소, 반인도범죄, 잠재적 제노사이드로 명명된 로힝야 난민이 겪었던 잔학행위에 대한 직접 증언을 청취했다. 아동은 특히 큰 영향을 받았는데, 잔혹한 성폭력의 표적이 되기도 했으며, 무차별적으로 살해되고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

미얀마 정부와 군은 공정한 조사관들이 제시한 증거들을 반복적으로 부인했고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독립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사의 실시를 저지했으며, 국제인권메커니즘의 활동을 방해했다. 침해행위를 조사하던 언론인들은 감옥에 수감됐다. 자행된 범죄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정부의 이 같은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국제적 노력은 좋게 평가했을 때 일관

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분명 로HING아 주민에게 가해진 피해의 심각성에 비견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몇몇 정부들은 책임규명을 위한 국제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가로막았고 미얀마 군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수사를 미얀마 정부에 떠넘기는 정부들도 있었다.¹¹⁶ 이 같은 태도는 로HING아 주민에 대한 정의 실현을 부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해 자행된 반인도범죄를 정상화해 주고 불처벌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미얀마 정부가 국제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수임을 받은 독립진상조사단은 미얀마 내에서 자행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철저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었다. 2018년 9월, 진상조사단은 분명한 태도로 미얀마 군부의 고위급 장성들을 거명하며 이들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제노사이드, 반인도범죄, 전쟁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범죄행위가 발생한 지 일 년이 지났지만, 국제사회는 여전히 정의 실현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인권이사회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중요한 조치가 취해졌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2018년 9월 설치한 “상시적 독립 메커니즘”은 특히 언젠가 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이 이뤄질 것이라는 희망을 불러일으켰다.¹¹⁷ 또 국제형사재판소도 2018년 9월의 전례 없는 결정에서 국제형사재판소가 원칙적으로 미얀마 군부 구성원을 로HING아 주민을 강제적으로 이주시킨 범죄 행위, 즉 강제추방 범죄 혐의로 기소할 관할권을 가진다고 결론 내렸다.¹¹⁸ 이 결정으로 국제형사재판소 소추관이 미얀마의 강제추방 및 기타 반인도범죄에 대해 정식 기소를 포함해 본격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인권이사회와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치는 로HING아 주민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책임을 추궁당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미얀마 군부에 보냈다. 그럼에도 이 “독립 메커니즘”이 가해자의 유죄 여부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발견하거나 국제형사재판소가 강제추방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얻어내더라도 범죄자 신병 확보에는 여전히 난관이 남아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뤄지지 않았던 사례는 너무도 많다. 그럼에도 로HING아 주민을 대상으로 자행된 잔학행위에 대한 책임추궁 실패는 특히나도 생생한 사례이다. 국제사회가 이같은 중차대한 범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미얀마나 다른 곳에 있는 미래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의 행동을 부추기는 것과 같다. 바로 그 점에서 미얀마 아동에게 잔학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전 세계의 먼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3 현장에서의 실질적 조치 미비: 남수단 분쟁

남수단은 세계 최신행국이지만 독립국가로서의 짧은 역사 속에서도 아동은 폭력과 기아, 방대한 권리 침해에 겪었다. 남수단 인구의 절반은 18세 이하¹¹⁹이며 이 중 절반은 분쟁과 그로 인한 인도적 위기의 영향 하에 있다.¹²⁰ 2018년 9월 평화협정 서명에도 불구하고 700만 명 이상 아동은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에 처해있으며,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5세 미만 아동 백만명가량이 급성 영양실조 상태이며, 국내실향민 중 절반 가량이 아동이며, 또 그 아동 중 절반은 학업을 중단한 상태다.¹²¹ 더구나 남수단은 인도주의 행위자가 활동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¹²²

남수단의 모든 분쟁당사자가 자행한 6대 중대한 아동권리 침해행위는 놀랄만한 수준이다.¹²³ 2013년 분쟁 발발 이래로 남수단 무장단체에 징집된 아동의 수는 최소 1만 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¹²⁴, 수천 명이 납치, 강간, 살해, 부상을 당했다. 일례로 2017년 7월 유엔은 우시장에서 소년 150명 이상이 대규모로 징집됐던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¹²⁵ 강간 등의 성폭력도 전쟁의 전술로 차용되어 조직적으로 일어났다.¹²⁶ 2011년 이후 성인과 아동을 모두 포함한 분쟁 사망자 합계는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383,000명에 달하며 실제 사망자 수는 이보다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다.¹²⁷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아동의 수는 9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중대한 아동권리 침해행위로 야기된 것이다.¹²⁸ 이러한 점에서 유엔은 2019년 심각한 보호 위협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의 수를 190만 명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¹²⁹

남수단 내 보호 문제는 구조적으로 애초부터 존재했다. 2013년 남수단인 20만 명이 보호를 받기 위해 유엔기지를 찾게 되면서 유엔 남수단임무단(UN Mission in South Sudan, UNMSS)과 인도주의 단체에게 새로운 과제가 찾아왔다.¹³⁰ 새롭게 조성된 민간인보호구역(Protection of Civilians, PoC) 내 막대한 실향민 규모는 인도주의 행위자가 더 쉽게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도 했지만 민간인보호구역 내 생활환경은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았다.¹³¹ 또, 동시에 남수단 내 보호와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 전체를 고려해봤을 때 민간인보호구역 외부에 거주하는 이들에 비해 내부에 사는 이들에게 과도한 주의를 쏟렸을 가능성도 있다.¹³² 아동 관련 전문성 및 아동 보호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도 특히 큰 문제가 된다. 유엔 남수단임무단은 남수단 내 보호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행위자이지만 아동 특화 프로그램 설계나 타 기관에 그 같은

190만
2019년 남수단에서 심각한 보호위험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의 수

시리아:

가족이 임시로 머무는 이德利브 교외의 보호소 대문 앞에서 선 자하라(11세)와 동생 파티마*의 모습. 이들은 폭력적인 충돌사태와 대대적인 폭격을 피해 고향을 떠나게 된 지 몇 달 후부터 이곳 보호소에서 살고 있다.



PHOTO: AHMAD BAROUDI / SAVE THE CHILDREN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하다.

분쟁당사자의 행위규범 준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과 가해자의 책임추궁을 위한 조치가 큰 변화를 가져다줄 수도 있지만, 남수단의 환경에서는 실질적 조치 확대가 아동의 보호 및 상당수 아동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는 과거 군이나 무장단체에 연루됐던 아동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재통합 프로그램의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는 아동들의 재징집 위험을 높인다.¹³³ 2013년 분쟁이 시작된 이후로 가족과 재결합한 아동의 수가 6,000명 가까이 되지만¹³⁴, 군이나 무장단체에 연루된 아동을 포함해 동행자 없이 가족과 분리된 아동 수천 명이 양질의 사례 관리와 적절한 돌봄이 필요하다.

남수단 정부 예산 중 안보 관련 예산의 비중은 44%에 달한다. 분쟁이 지속되면서 남수단 정부는 연간 예산 중 단 한 푼도 아동 보호와 사회적 지원에 배정하지 않았다.¹³⁵ 2018년 말 기준으로 이산가족 추적 및 재결합, 사례 관리, 아동친화

공간 및 심리적·사회적 지원 등의 아동 보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국제적 재원은 인도적 지원 분야 전체 지출(이마저도 계획 대비 40%가량 적은 수준이다)의 단 1.7%에 불과했다.¹³⁶ 아동 200만 명가량이 학업을 중단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7%의 지출분 중에서 교육에 대한 지출은 단 5% 수준에 그쳤다. 다년간 여러 부문에 걸친 재원의 부족은 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이 필요로 하는 포괄적 공동체 주도형 대책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한다.¹³⁷ 이 같은 자원 부족으로 보호와 회복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대다수 아동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중요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수단 아동은 무장행위자의 행위규범이 처참한 수준이라는 점, 또 아동권리 침해가 거의 완전한 불처벌을 누린다는 점에 더불어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생존과 성장을 도울 실질적 조치가 너무나도 적다는 면에서도 고통을 받고 있다.



가족과 헤어지다:
 누르(11세)가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캠프의 자신의 집 앞에서 있다. 누르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미얀마에서 살던 마을이 공격을 당했을 때 부모님과 헤어지게 됐다. 누르는 지금 확대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PHOTO: AHMAD BAROUDI / SAVE THE CHILDREN

행동을 위한 세 가지 지침

아동에 대한 전쟁을 구성하는 세 가지 차원을 설명하는 사례는 앞에서 언급한 사례 외에도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차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세계지도자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을 도출한다.

- 분쟁에서 행위규범을 준수하고 이를 동맹국이나 그 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에 요구할 것
- 분쟁에서 아동권리 침해 가해자의 책임을 추궁할 것
- 분쟁 현장에서의 아동 보호와 회복 지원을 위해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

위 세 가지 지침은 무력분쟁에서 아동권리 침해를 종식할 국제적 접근법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이 중 각 지침에서 작은 단계라도 밟는다면 아동에 대한 보호가 직·간접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그 같은 조치는 변화를 만들고 타국으로부터의 기대를 높여 결국에는 분쟁이 발생하는 국제적인 환경을 변화시킨다. 모든 행위자가 이 세 가지 영역에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세계의 분쟁 지역에 사는 아동이 더 나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장

떠오르는 해법: 분쟁 중 아동 보호

분쟁영향 지역에 사는

4억 2,000만 아동의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의
기반이 될 플랫폼

본 보고서는 오늘날 분쟁에서 아동이 직면한 위협의 규모와 심각성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최근의 사례는 정치적 의지, 행동, 재원이 존재할 때 아동 보호가 가능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장에서는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현재 부상 중인 이니셔티브와 실천사례들을 다루고자 한다. 이는 아래와 같은 노력을 통해 분쟁영향지역에 사는 아동 4억 2,000만 명의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기반이 될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

1. 규범 준수

2. 가해자 책임추궁

3. 현장에서의 실질적 조치

1 분쟁 시 행위규범 준수

다음 이니셔티브는 교전의 수행 방식을 개선시켰거나 개선해 나감으로써 아동(더 나아가서는 민간인들)에게 더 나은 보호가 제공되도록 하는 국제적인 행동 사례들이다. 이 중 그 어떤 이니셔티브도 그 자체만으로는 아동이 무력분쟁에서 겪는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다만, 각각의 이니셔티브는 현재 모범적인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분쟁 중 아동 보호에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사례들이다. 이들 전체 사례를 한데 모아 보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기준을 높여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고무적인 그림을 그려 볼 수 있다. 지도자, 정부, 무장단체, 후원자, 비정부기구는 이 같은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 장려해야 한다.

안전한 학교 선언 (Safe Schools Declaration) - 학교의 군사적 사용 줄이기

안전한 학교 선언(Safe Schools Declaration)은 무력분쟁 시 교육의 보호에 대한 정부 간 정치적 약속이다. 이 선언은 법적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국제인도법을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가는 이 선언에 서명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서약을 하게 된다.

1. 학교와 대학에 대한 공격 및 군사적 사용에 대한 신빙성 있는 데이터 수집
2. 공격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공
3. 교육에 대한 "분쟁 인지적" 접근법의

연구·개발·보급

4. 무력분쟁 중 교육의 지속을 위한 노력과 지원
5. 아동과 무력분쟁 의제에 관한 유엔의 활동 지원
6. 교육기관의 군사적 사용 억제를 위해 군과 무장 비국가행위자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제공하는 “무력분쟁시 군사적 사용으로부터 학교와 대학의 보호를 위한 지침” 이행

이 선언이 마련된 2015년 이래로 학교의 군사적 이용 자제 및 학생과 교사에 대한 공격 금지 요구가 국제적으로 힘을 얻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교육에 대한 공격 예방을 위한 전 지구적 연대기구(Global Coalition to Protect Education from Attack, GCPEA)의 회원단체이며 이 기구는 정부에 안전한 학교 선언에 서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83개 유엔 회원국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 선언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선언에 서명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에 차이점이 드러난다는 분석이 있는데, 서명 미참가국에서는 2014년 이래로 학교의 군사적 사용 사례가 97%로 증가한 반면, 서명 참가국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¹³⁸ 유감스럽게도 안전한 학교 선언에 서명했던 나이지리아, 수단, 남수단 이상 3개국에서 학교의 군사적 사용이 있었다는 보고가 증가했다. 나이지리아와 수단은 최근 자국의 관련 정책 재검토 절차에 착수했다.¹³⁹

아동의 징집 방지를 위한 국제 문헌 - 115,000명의 아동이 풀려나다

지난 40년 동안 분쟁 중 군사적 착취로부터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문헌이 마련되었다.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이를 비준한 모든 국가가 아동권리 보호와 보장을 약속한 것이다. 협약 당사국은 무력분쟁 등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아동을 폭력·학대·방치·착취로부터 보호했는지에 대해 국제사회 앞에서 책임을 묻고 있다. 이 같은 약속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나온 2000년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 정서는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아동의 군사 징집을 종식시키는 데 전적으로 초점을 맞춘 세계 최초의 국제조약이다. 이 선택의 정서는 2002년 발효됐으며 현재 대다수 국가가 비준했다.¹⁴⁰

군대 및 무장단체 연루 아동에 관한 파리 원칙 및 지침(Paris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Children Associated with Armed Forces or Armed Groups, 파리원칙)과 군대

및 무장단체의 불법적 징집 및 사용으로부터의 아동 보호를 위한 파리 서약(Paris Commitments to Protect Children from Unlawful Recruitment or Use by Armed Forces or Armed Groups, 파리 서약)은 2007년 확립되었다. 현재는 유엔 총회를 구성하는 회원국 절반이 넘는 108개국이 이 문헌에 공식적으로 서명했다. 파리 원칙은 소녀와 소년의 징집 예방과 이들의 재통합 지원과 관련한 국제법 기준을 언급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상세한 단계를 설명한다. 파리 서약에는 국가가 아동 징집 및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정치적 서약이 담겨 있다.

파리원칙과 파리서약 제정 10년을 맞는 2017년까지 군과 무장단체에서 풀려난 아동의 수는 모두 115,000명 이상에 달한다.¹⁴¹ 두 문헌의 제정 10주년을 기념해 파리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는 70개 국가, 10개 유엔 기구, 20개 시민사회단체 등이 분쟁의 성격과 양상이 변화하고 있는 전 지구적 상황에서 아동 징집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시 한번 서약했다.

2017년에는 유엔 평화유지활동 국방장관회의에서 밴쿠버 원칙(Vancouver Principles)이 발표됐다. 밴쿠버 원칙은 파리원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하에 평화유지활동에서의 군의 활동이 아동의 징집 및 사용과 연관성을 가지는 만큼 자국군의 훈련, 계획수립, 행동을 개선하겠다는 정치적 약속 등을 담은 포괄적인 서약이다.

군이나 무장단체가 아동을 징집하고 사용하는 행위는 아직도 만연하게 벌어지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지난 20년간 이와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기도 했다. 1999년 이래로 60개 이상의 무장단체가 아동의 징집 및 사용을 감소 및 중단시키겠다는 독자적/양자 간 약속을 했다.¹⁴²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의 수집된 데이터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8년 사이 28개 정부 및 무장단체가 아동 징집 및 사용 중단을 약속하는 유엔 행동계획에 서명했다. 동기간 동안 13개 무력분쟁 당사자가 그 같은 행동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연간보고서에 수록된 위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직접적인 외교 압력이 강력한 도구가 된 사례도 있다. 일례로 2012년 오바마 행정부는 콩고 민주공화국 정부가 무력분쟁에서 아동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유엔 협약에 서명하지 않으면 콩고민주공화국군에 대한 대외 군사자금 및 훈련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했다. 유엔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가 행동계획에 서명하도록 7년간 설득을 시도해왔는데, 미국의 선언이 나온 지 5일만에 서명했다. 미국은 다른 국가에도 유사한 압력을 행사해 좋은 결과를 거둔 바 있다.¹⁴³

비국가 무장단체와의 대화 - 침해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낸다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 따르면 확인된 중대한 침해행위 중 3/4가량은 비국가행위자에 의해 자행된 것이었다. 비대칭적·산발적으로 수행되는 분쟁의 경우 더 잔혹한 형태로 진행되면서 민간인에 대한 보호는 하향식 경쟁(race to the bottom)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비국가행위자와 소통하거나 이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전쟁에서 구속력의 근원(Roots of Restraint)」 제하의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외부적 존재가 군대나 무장단체의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인도주의 단체나 현지 공동체가 무장단체와 교류하는 것을 범죄행위로 만드는 것은 역효과를 발생시키며 인도주의 규범 존중을 촉진하는 노력을 저해한다.¹⁴⁴

비국가 무장단체의 행동과 규범 준수 개선에 초점을 두고 활동하는 비정부단체 제네바콜(Geneva Call)은 25개국에서 100여개 행위자와 교류해왔다. 제네바콜이 활용하는 주된 도구는 서약서(Deed of Commitment)로, 이 메커니즘은 무장 비국가행위자가 국제규범 준수를 약속하도록 한다. 아동보호 서약서의 서명자는 적대행위 시 아동 사용에 대한 전면적 금지뿐 아니라 자신의 군대에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징집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결코 아동을 군에 연루시키거나 잔류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무장 비국가행위자가 식량, 보건 서비스, 교육 등에 대한 접근 등 「필요한 지원과 돌봄을 통치하에 있는 지

역의 아동에게 제공하는 데 추가적 노력을 기하겠다”는 서약을 할 수도 있다.¹⁴⁵ 서명자는 내부 명령, 훈련, 제재조치, 또 이 같은 사항의 준수 확인을 위해 제네바콜과 협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합의한다.

제네바콜은 이 같은 서약에 기반해 무장단체가 국제기준, 특히 아동의 징집 및 사용, 학교의 군사적 사용, 성폭력 및 젠더기반폭력, 보건 서비스 보호 등의 핵심 영역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지식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이들과 협력한다. 제네바콜은 파트너기관과 함께 혁신기술, 대화, 인식제고, 옹호활동을 통해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아래 상자기사 참조)

여기에서 도출할 수 있는 교훈은 통상적인 인식과는 달리 어떤 무장 비국가행위자들은 외부의 감시를 수용하고 규범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에 협조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¹⁴⁶

지뢰 및 확산탄 금지 - 수천명의 죽음과 상해를 막다

국제사회는 무차별 무기로부터 아동 등 민간인을 보호하는 데 엄청난 진전을 이뤄냈다. 대인지뢰의 사용·비축·생산·이전의 금지 및 파괴에 관한 협약(대인지뢰금지협약)과 확산탄금지협약은 무차별 무기로 야기되는 피해를 예방하고 줄여나가기 위한 인도주의적 군축 노력에 있어 선두에 서 있다.¹⁴⁸ 두 협약은 대인지뢰와 확산탄의 생산을 금지하며 비축분 파괴 의무를 발생시킨다. 이 협약들은 충분한 공감대, 통찰력, 정치적 의지가 존재한다면 국제조약이 성공적으로 협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 협약으로 목숨을 구한 사람의 수는 아마도 수만 명에 달할 것이다. 현재까지 대인지뢰금지협약의 당사국은 163개국이며, 총 120개국 이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했다. 지금까지 파괴된 대인지뢰만 5,300만개에 달하며¹⁴⁹, 상당한 구역에서 지뢰가 제거되었고 30개국가량이 지뢰청정지대로 선포됐다.¹⁵⁰ 확산탄 관련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18년 사이 확산탄 생산기업 투자도 72% 감소했다.¹⁵¹ 이 두 협약은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도 대부분 준수하게 된 강력한 국제규범을 확립했다. 미국 등 일부 협약 미참가국에서도 분쟁이 종료된 현장에서 전쟁잔류폭발물(ERW) 제거 활동을 하는 비정부기구나 기타 행위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149명의 아동이 시리아 무장단체에서 소집 해제되다

2014년 6월, 시리아 북동부에서 활동하는 인민수호부대, 여성수호부대, “민중자치행정부”는 제네바콜과의 몇달간의 협상 끝에 자신의 부대에서 149명의 아동을 소집 해제하고 제네바콜의 분쟁에서의 아동보호 서약서에 서명했다.¹⁴⁷ 이 서명으로 18세 미만 아동의 적대행위 참여를 예방하고 분쟁의 영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공동 정책이 공개적으로 채택됐다.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 재래식무기 규제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초의 국제조약

국가가 분쟁 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이 있다. 이 중 하나는 분쟁당사자에게 수출·공급·이전되는 무기나 기타 군사 장비가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거나, 아동에 대한 불법적 공격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자행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데 사용될 압도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는 것이다. 2014년 발효된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의 비준당사국은 100개국에 달하며, 35개국은 조약에 서명했으나 아직 비준을 완료하지 않았다.¹⁵² 이 조약의 당사국은 무기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위반에 사용될 것이라는 고도의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무기의 국제이전을 불허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동 조약 7조 4항은 수출국이 재래식 무기 및 관련 물품이 심각한 젠더기반폭력 또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심각한 폭력행위를 자행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데 사용될 위험성이 존재하는지를 고려해야 할 의무를 부여한다.¹⁵³

무기거래조약은 인류의 고통을 줄여나가자는 인도주의적 핵심 목표하에 재래식무기 및 탄약의 거래에 대한 규제 기준을 확립한 최초의 법적 구속력을 지닌 국제조약으로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다. 정부의 행동 변화를 이끌었는데, 유럽의 몇몇 무기수출국은 예멘 전쟁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사우디아라비아나 연합군 소속 국가에 대한 군사물자 수출을 거부하거나, 중단, 보류했다.¹⁵⁴ 그럼에도 본 보고서 작성 시점까지도 영국, 프랑스, 미국¹⁵⁵ 등 주요 무기수출국은 예멘에서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위반행위가 자행될 것이라는 압도적 위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로의 무기이전을 지속하고 있다.

주거 지역에서 폭발성 무기 사용 억제 - 예측가능한 방식의 민간인 피해 예방

분쟁에서 교전 지역이 점차적 주거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동은 특히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다. 유엔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넓은 지역효과를 가지는 폭발성 무기의 사용으로 야기되는 예측가능한 방식의 민간인 피해에 대해 여러 해에 걸쳐 지적했다.¹⁵⁶ 이러한 관행을 억제할 수 있다면 공격 당시나 이후 장기적 아동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며, 여타 중대한 권리 침해로 아동이 고통받을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¹⁵⁷ 2018년 무장폭력에 맞선 NGO 행동(NGO Action on Armed Violence)이 영어권 매체 보도를 토대로 기록한 전 세계 폭발성 무기로 인한 사상자 및 중상자 수는 32,102명이었

PHOTO: BEN WHITE / SAVE THE CHILDREN



강제로 피난을 가다: 갓프리의 사례

“저는 전쟁 때문에 남수단을 떠나야 했어요. 아버지는 반군의 손에 살해당했습니다. 반군은 술을 마시러 와서는 아버지가 정부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나이 16세인 갓프리는 남수단 반군이 자신의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갓프리는 만삭이었던 자매 등 다른 가족과 함께 남수단을 떠났다.

갓프리는 “정착촌에 도착하기까지 3주나 걸렸어요. 음식도, 담요도, 물도 없었어요. 여동생은 피난 중에 출산했는데, 결국 아이는 죽고 말았어요”라고 말했다.

갓프리와 그 가족은 현재 우간다 비디비디 난민캠프에서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다. 갓프리는 현지의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친화 공간에서 자원활동을 하고 있다.

다. 이 중 70%가량은 민간인으로 여전히 피해자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중 사망자 비율은 43%에 달했다.¹⁵⁸ 세이브더칠드런은 이 같은 관행으로 인한 인류의 고통을 예방하고자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NGO 협력체인 폭발성무기에 대한 국제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on Explosive Weapons)의 창립단체로 참여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¹⁵⁹ 점점 더 많은 국가가 이 사안을 중차대한 문제로 여기는 우리의 인식에 동조하고 있다. 이 같은 인도적 해악의 끔찍한 사례들에 대해 80개 이상의 정부, 몇몇 다자기구, 역대 유엔 사무총장 및 기타 고위급 유엔 인사들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아동의 참여를 위해서는 절차 자체에 아동의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018년, 유엔 총회의 재래식 무기에 관한 주제토론 세션에서는 아일랜드가 주거지역 내 폭발성 무기 사용으로 야기되는 인도적 피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추진했다.¹⁶⁰ 이는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 약속을 만들어내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다. 그 같은 약속은 주거 지역에서 폭발성 무기의 사용을 자제하고, 군이 사용되는 무기의 지역 효과가 어떠한지를 이해하도록 하며, 그 같은 무기가 장기적으로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유엔 사무총장 군축의제(UN Secretary-General's Agenda on Disarmament)도 각국에 그 같은 정치적 선언을 입안하기 위한 노력에 건설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¹⁶¹

분쟁 중 아동 보호에 있어 사상자 기록 활동의 역할

권리 침해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과 침해행위 감소를 위해서는 분쟁 중 아동이 겪는 피해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효과적인 사상자 기록을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아동 및 기타 취약 집단 등 분쟁에 휘말린 민간인이 입는 피해의 원인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 사상자 발생을 막거나 피해를 완화할 수 있다.
- 가해자에 대한 책임추궁이 가능해진다.¹⁶²

유엔과 국가별 민간인 피해를 추적하는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살펴보면 문제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발견할 수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사상자 기록작업에 배정된 자원이 미비하다는 것은 가해자를 밝혀내고 분쟁에서 아동 피해의 원인을 추적하는 데 충분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 가해자 책임 추궁

책무성 보장에는 여러 형태의 방안이 있다. 가해자를 거명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방식, 사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정치적·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원칙적인 차원에서는 항상 지방 당국이나 국가 차원의 조치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즉 침해행위가 발생한 상황에 속한 정부나 공동체가 가해자 책임추궁 절차를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이나 국가 행위자에게 그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경우 지역 메커니즘 또는 국제 메커니즘이 필요할 수도 있다.

아동이 책무성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아동의 참여를 위해서는 절차 자체에 아동의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공되는 정보가 아동친화적이어야 하며, 아동의 의견이 청취되어야 하고, 아동이 캠페인이나 정의구현을 위해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분쟁 중 아동권리 침해의 가해자가 항유해 온 광범위한 불처벌을 고려할 때 공식적이고 수사적인 국제적 서약과 실제 현실 간에 존재하는 간극을 메우기 위한 대부분의 활동이 이뤄져야 하는 영역이 바로 책무성 보장의 영역이다. 그럼에도 일부 국제적 이니셔티브가 일궈낸 성과들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아동 성폭력 생존자 정의 구현을 위한 조치

"세상에서 우리의 존엄성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상은 정의가 실현되는 것과 범죄자들이 기소되는 것입니다."

나디아 무라드(Nadia Murad), 이슬람국가(IS) 생존자, 분쟁 중 강간 종식을 위해 활동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 수상

사상자 기록 활동의 중요성

사상자 기록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가 2013년 수집한 증거자료를 보면 폭력행위로 인한 시리아 아동 사망의 일차적 원인은 단연 폭발성 무기였다. 구체적인 사망원인이 기록된 아동 사상자 10,586명 중 71%에 해당하는 7,557명이 폭발성 무기로 사망했다. 이외에도 아동 사상자 중 2,806명(26%)의 사망원인은 소형무기 사용으로 보고됐다.¹⁶³ 이 수치에는 아동을 특정해 표적으로 삼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즉결처형 사례 764건과 저격으로 인한 사망 사례 389건도 포함됐다. 전체 사망률 통계나 추정치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이와 같이 상세한 수준의 기록은 향후 전범재판소 등의 책무성 절차에서 그 중요성이 드러날 수 있다.

군대가 사상자를 기록하게 되면 필요에 따라 자국 군의 행동을 검토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이후 미국 국방부는 자국군의 군사작전으로 야기된 민간인과 전투원 사상자 발생 의혹을 조사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피해자를 위한 책무성 지원 외에도 이 같은 절차는 미래에 민간인 보호를 향상할 전략을 꾸준히 개선할 수 있게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사상자 기록 활동은 제3자가 기록에 근거한 옹호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유엔 아프가니스탄지원단(UN Assistance Mission in Afghanistan) 인권부는 2007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된 민간인 사상자 정보를 활용해 분쟁당사자의 옹호활동을 지원했다. 이는 실제 관행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끌어냈으며 민간인 사상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다. 이라크, 콩고민주공화국,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소말리아 주재 아프리카연합 대표부 등 여타 유엔 평화유지 및 정치임무단 역시 다양한 수준에서 사상자를 기록·추적¹⁶⁴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다. 유

엔 본부 차원에서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사상자 정보를 기록하는 인권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고, 유엔 평화유지활동부의 경우 사상자 데이터를 포함한 자체적인 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

실시간 수준의 사상자 기록활동은 분쟁 중 아동의 보호와 인도적 대응을 개선할 수 있다. 예멘의 경우 인도주의적 보호활동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보호 클러스터(Protection Cluster)에서 민간인 피해 모니터링 프로젝트(Civilian Impact Monitoring Project)가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아동 사상자 수치를 활용하고 있다.¹⁶⁵

위에서 언급한 각각의 사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스템, 상황 간의 조율이 허술하게 이뤄지는 탓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도 있을 정보교환과 분석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독립 NGO인 에브리 캐절티 월드와이드(Every Casualty Worldwide)는 이 같은 난관 극복과 모범사례 확산을 위해 16개 사상자 기록활동 단체, 국제적십자위원회, 다수 유엔 기관, 국제형사재판소와 함께 3년에 걸친 협의과정을 주도했다. 이 협의 과정은 2016년 사상자 기록활동 기준(Standards for Casualty Recording)을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이 기준은 현장에서의 권위적 지침으로 국제적 인정을 받았다.¹⁶⁶ 사상자 기록활동 단체는 이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내부적으로나 해당 분야 전반에 걸쳐서 나 일관성과 정확성을 보장한다.

에브리 캐절티 월드와이드
(Every Casualty Worldwide),
2019년 1월

아동 성폭력 문제는 사안 자체의 민감성과 실제 사건 발생에 비해 적게 보고되는 상황이 여전히 만연하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국제적 차원에서는 몇 가지 희망적인 진전이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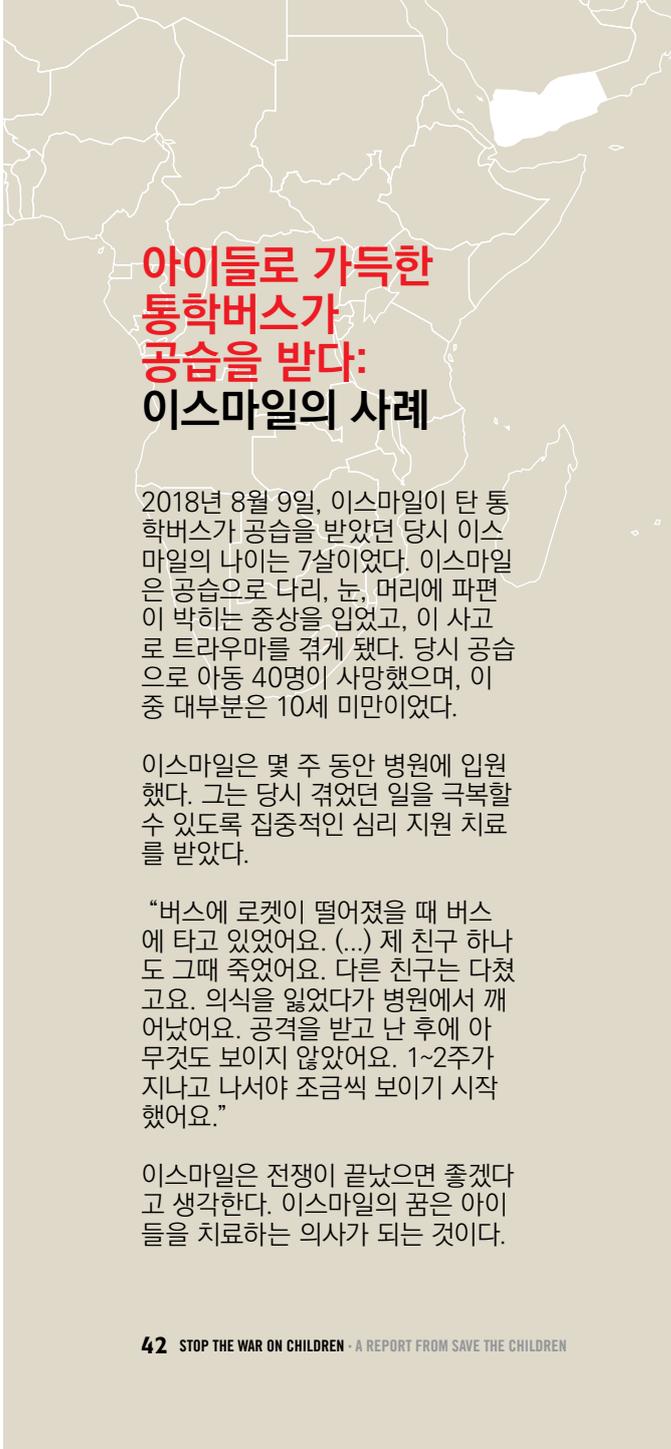
2001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기념비적인 결의를 통해 분쟁 중 소녀가 겪는 성폭력과 젠더기반폭력을 외교 의제화했다.¹⁶⁷ 또, 2009년 분쟁 중 성폭력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 사무소가 설치되면서 이 사안이 가시화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가 모이는데 도움이 됐다. 아동과 무력분쟁 특별대표와 분쟁 중 성폭력 특별대표 간의 협업과 협력은 모두 유엔 안

전보장이사회의 수임사항이기도 하며 분쟁 중 아동에게 자행되는 성폭력 범죄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 사안에 대한 논의가 최근 탄력을 받게 되면서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력한 입법체계를 마련하게 됐고, 특별대표 사무소는 이 새로운 도구로 현장 임무를 수행하며 행동의 변화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콩고민주공화국 남기부 국제형사재판소 태스크포스의 경우 아동 및 청년 성폭력 가해자의 책임추궁을 위해 비정부기구, 현지 병원 등 국제행위자와 국가행위자를 한데 모았다. 2017년에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상징적 사건 2



PHOTO: MOHAMMED AWADH / SAVE THE CHILDREN



아이들로 가득한 통학버스가 공습을 받다: 이스마일의 사례

2018년 8월 9일, 이스마일이 탄 통학버스가 공습을 받았던 당시 이스마일의 나이는 7살이었다. 이스마일은 공습으로 다리, 눈, 머리에 파편이 박히는 중상을 입었고, 이 사고로 트라우마를 겪게 됐다. 당시 공습으로 아동 40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대부분은 10세 미만이었다.

이스마일은 몇 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당시 겪었던 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심리 지원 치료를 받았다.

“버스에 로켓이 떨어졌을 때 버스에 타고 있었어요. (...) 제 친구 하나도 그때 죽었어요. 다른 친구는 다쳤고요. 의식을 잃었다가 병원에서 깨어났어요. 공격을 받고 난 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1~2주가 지나고 나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스마일은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스마일의 꿈은 아이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는 것이다.

건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는 등 불처벌에 맞선 싸움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콩고민주공화국 국군 소속 대령 한 명의 경우는 남 키부 무세니(Musenyi) 민간인 150명에 대한 강간, 약탈을 자행한 전쟁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고, 카부무(Kavumu) 지방에서 아동 39명이 납치, 강간된 사건에서 역할을 한 남 키부 의회 의원 한 명도 반인도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¹⁶⁸

2012년 무력분쟁 상황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의 규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전 세계적 행동을 규합하려는 목적하에 창립된 영국의 성폭력 예방 이니셔티브(Preventing Sexual Violence Initiative)의 활동 역시 주목할만하다.¹⁶⁹ 이들의 핵심적인 공헌 중 하나는 분쟁 중 성폭력에 대한 문서화 및 조사활동에 관한 국제 의정서를 성안한 것이었다. 본 의정서는 특히 아동과 성폭력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담고 있다. 영국은 신속 파견되어 정부, 사법부, 경찰, 군대, 비정부기구의 증거수집 및 훈련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 팀을 구성했다.

국제 형사 메커니즘 - 아동 관련 정의실현을 향한 움직임

1993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된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in the former Yugoslavia, ICTY)는 국제인도법의 판도를 바꿔놓았다. 재판소는 피해자들에게 그들이 목격하고 경험한 끔찍한 사건을 증언할 기회를 제공했으며, 젠더기반범죄의 기초를 마련하고, 분쟁 중 민간인을 상대로 잔학행위를 저지른 이들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냈다. 재판소는 국가수반, 총리, 군 참모총장, 정부 각료들과 여타 구유고슬라비아 분쟁의 여러 당사자 중 다수 지도자를 기소했다.¹⁷⁰ 스레브레니차 학살이 발생한 지 20년이 지난 2017년에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 재판소는 전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군 총참모장 라트코 므라디치(Ratko Mladic)에게 체노사이드, 반인도범죄, 국제인도법 및 관습법 위반 등 10개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라트코 므라디치의 희생자 중 다수는 아동이었다.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는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캄보디아 특별재판소,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 등과 마찬가지로 단합된 국제 행동을 통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일부 책무성 조치를 실현할 수 있었던 중요 사례였다.

앞서 언급한 특정 분쟁에 대한 임시재판소가 설치된 이후 1998년에 로마규정이 채택되어 2002년에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설치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15세 미만의 아동을 징집 또

는 입영시키거나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를 전쟁범죄로 인정했다.¹⁷¹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된 최초의 사건인 토마스 루방가 다일로 사건은 구체적으로 아동의 징집 및 사용에 초점을 둔 사건이었다. 재판소는 2012년 이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는데, 이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전쟁범죄, 특히 아동에 대한 전쟁범죄의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한 기념비적 사례였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아동을 위한 정의실현을 개선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조치를 취해왔다. 2016년 11월에는 동 재판소 수석 소추관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잔학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재판소의 아동 인지도 접근법을 강화하는 아동 정책(Policy on Children)을 발표한 바 있다. 소추관은 이 정책 발표를 통해 아동에 대한 잔학범죄의 수사 및 기소를 국제형사재판소의 주요 전략 목표 중 하나로 격상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법정의 실현은 매우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널리 알려졌던 사건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장-피에르 뱌바 공보 재판의 판결이 2018년 6월 뒤집혔으며, 다수 고위급 용의자가 법의 심판을 피해 도주 중이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과 형집행을 두고 난관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재판소는 국제사법정의 실현의 일차적 메커니즘으로 자리잡았으며 이는 아동에 대한 잔학행위와 아동권리 침해에 대처하기 위한 전 지구적 노력에 있어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적이며, 불편부당하고, 독립적인 메커니즘 - 시리아 정의실현을 향한 움직임

2016년 12월, 유엔 총회는 71/248호 결의를 채택했는데, 이는 "2011년 3월 이후 시리아 아랍 공화국에서 자행된 국제법 하의 가장 중대한 범죄의 책임자에 대한 수사·기소 지원을 위한 국제적이고, 불편부당하고, 독립적인 메커니즘"을 설치하는 것이다.¹⁷² 이 메커니즘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 위반행위의 증거를 수집·취합·보존·분석하고 이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 (또는 향후 가지게 될) 국내·지역·국제 재판소의 독립적 형사 절차를 촉진할 서류를 준비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본 보고서 작성 시점에서 백만건 이상의 증거가 수집되었으며, 이 증거는 해당 국가 소속 검찰청에 공유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제적인 범죄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독일¹⁷³, 프랑스¹⁷⁴가 시리아 고위급 관료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으며 스웨덴, 오스트리아 당국도 수사에 착수했다.

각국의 검찰은 "보편적 관할권"의 원칙으로 인해 범죄행위가 다른 나라에서 자행되었거나 피의자나 피해자가 국적자가 아닌 경우에도 고문, 전쟁범죄, 반인도범죄 등 특정 중대한 국제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개인을 수사할 수 있다. 독일은 유럽 내에서도 이 원칙이 가장 폭넓은 해석을 부여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그러한 점 때문에 시리아에서 자행된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이 같은 검찰의 활동은 잔학행위의 가해자 책임 추궁, 피해자를 위한 정의 구현, 미래의 범죄 억제, 국가들이 인권침해의 가해자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¹⁷⁵

시리아 전쟁을 둘러싼 치열한 정치적 싸움을 보면 수많은 피해자가 정의를 되찾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메커니즘의 존재와 현재 관련 수사가 이뤄진다는 사실 등은 고무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위임된 사법절차가 부재한 상황에서조차 국제적인 소송을 통해 가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메커니즘과 2장에서 언급한 미얀마 "독립 메커니즘"의 운영사례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유사 범죄의 증거를 취합할 수 있는 상실 메커니즘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법 준수 촉진을 위해 금융 제재를 활용한 혁신적 방법들

미국의 세계 매그니츠키 인권 책무성 법(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ct)은 미국 정부에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제재를 가하고, 자산을 동결하고, 이들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법은 2018년 10월 이스탄불 소재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에서 살해된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의 사망에 연루된 것으로 여겨지는 인사 20명에 대한 미국 제재 조치의 근거가 되고 있다.¹⁷⁶ 캐나다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고, 영국이 자국의 제재 및 반 자금세탁법(Sanctions and Anti-Money Laundering Act)에 매그니츠키 개정안을 도입을 추진¹⁷⁷하는 등 유럽 전역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노르웨이의 헬싱키 위원회와 함께 역내 여행 제한 조치 등과 더불어 무장 비국가행위자 등 개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게 할 유럽연합 차원의 인권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¹⁷⁸ 이 같은 노력은 매우 중요하며 변화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 제재 조치나 유사 장치의 수임사항에는 구체적으로 아동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최악의 분쟁영향국 중 다수는 질 낮은 거버넌스, 부패, 천연자원의 손쉬운 접근 등으로 분쟁이 장기화, 악화되기도 했고, 역으로 앞서 언급한 이유에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부패에 연루된 기업, 정치인, 무장행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면 분쟁을 작동하게 하는 유인을 줄이고 평화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y Exchange Commission)의 해외부패관행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은 부패 문제를 부분적으로는 테러리즘과 불안정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다루고 있기도 하다. 이 법은 콩고민주공화국, 리비아, 나이지리아 등지에서 활동하는 대기업의 부패 관행을 성공적으로 규제했다.

영국에서는 형사재정법(Criminal Finances Act) 개정안으로 중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용의자의 자산 회수를 돕는 민간 조사도구인 미해명 재산 명령(Unexplained Wealth Orders) 제도를 도입했다. 미해명 재산 명령은 개인이 중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개인에게 영국 내 특정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의 성격과 규모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또 대상자의 신고된 법적 소득이 그러한 재산을 취득하기에는 불충분할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분쟁 중 아동권리 침해로 저지른 부유한 가해자에 대한 불처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3 현장에서의 아동 보호 및 회복 지원을 위한 실질적 조치

무력분쟁에서 모든 전투원이 최고 수준의 행위규범을 준수하고, 단 한 건의 위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한 의미있는 책임추궁이 이뤄질 것이라는 확실한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무력 분쟁은 여전히 아동의 입장에서는 매우 안전하지 않은 환경일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기준, 법률, 규범 준수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에 발맞춰,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아동 보호와 회복 지원을 위한 실질적 조치에 투자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그 같은 조치는 현지에서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그러한 조치는 수많은 아동에게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다. 다음은 지원받고, 토대가 되어야 하는 고무적인 접근법과 이니셔티브의 사례들이다.

인도적 아동보호 - 분쟁 중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인도적 아동 보호 행위자는 사례 관리와 같은 아동 개인에 대한 직접적 개입, 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경제적 지원, 양육 지원), 공동체 내 아동 보호 메커니즘의 강화를 통해 아동 보호 사안에 대응하고 그 원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이들은 또 효과적인 사회 지원제도 이행을 위해 국가행위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아동 보호 프로그램 설계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개입방식인데, 이는 위협을 예방·대응하고 분쟁 중 아동 발달에 미치는 장기적 악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더 나아가 경험에 따르면 다분야에 걸친 완전한 통합적 보호 프로그램 설계는 다른 인도적 활동이 더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아동 보호 활동은 복잡하고 때로는 자원 집약적이다. 이는 전문화를 향한 명확한 경로가 미비한 상대적으로 새로운 분야이며, 상황별로 필요한 아동 보호 활동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은 필요와 가용한 자격요건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15년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 보호 실무 그룹(Child Protection Working Group)의 요청으로 수행한 도식화 및 시장분석 작업에 따르면 위기상황에서의 고급인력 아동 보호 활동 전문가 부족이 이 분야의 핵심적인 난관으로 파악됐다.¹⁷⁹ 또 역량강화를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 특히 분쟁의 영향을 받은 아동과 가장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성인 및 전문가, 또 아동을 둘러싼 보호체계를 구성하는 지역 공동체의 기반 단체와 지방 당국 직원 간의 네트워크 등에 역량강화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는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인도주의 활동에서 아동 보호를 위한 최소 기준(The Minimum Standards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은 이 분야의 실천 기준을 확립한다.¹⁸⁰ 아동보호 책임영역(Child Protection Area Responsibility)¹⁸¹은 현재 인도주의 활동이 가능한 한 현지에서 이뤄지고 필요한 만큼만 국제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한 현지화 전략을 갖추고 있다. 이는 수요자에게 더 많은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주요 공여자와 원조 제공자 간에 체결한 업무분장 현지화 합의인 “그랜드바겐(Grand Bargain)”에도 부합하는 것이다.¹⁸² 이 현지화 전략은 국내 비정부기구가 인도주의적 환경에서 아동 보호 대응활동의 조정업무를 공동으로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아동보호 인도주의 활동 연대(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도 전문화 전략을 감독하는 보완적 성격의 학습 및 개발 실무그룹(Learning and Development Working Group)을 두고 있다.¹⁸³

세이브더칠드런이 지원하는 위급상황에 처한 아동의 보호를 위한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me)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동부에서 국내 비정부 부기구 직원 및 국가의 중앙당국 직원을 대상으로 출범한 핵심 이니셔티브다.

위 사례들은 모두 인도주의 대응 활동 분야의 전문화와 관련한 긍정적 사례들이다. 분쟁 속 아동의 필요에 맞춘 아동의 구명 및 삶에 변화를 가져다줄 활동이 이뤄지게 하려면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아동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동

방글라데시의 마지막 아이들을 만날 때까지

사례관리는 직접 지원이나 위탁 등을 통해 개별 아동의 필요를 적절한 방식으로 적시에 체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접근법이다.¹⁸⁴ 아동 보호 전문가는 사례관리 접근법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방식으로 개별 아동의 보호 필요가 파악·평가·계획·재검토되도록 보장함으로써 아동 주변의 보호 환경이 강화되도록 돕는다. 이러한 활동은 인도주의적 상황에서는 넘치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공식적인 정부의 사례관리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2018년 방글라데시에서는 아동 보호 기관이 방글라데시 당국과 협력해 극도로 취약한 상태에 놓인 로힝야 난민 아동 20,000명¹⁸⁵의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 분리, 성폭력 및 젠더기반폭력, 아동 노동, 납치 및 인신매매 문제에 대응했다. 사례관리는 개별 아동과의 상당한 수준의 교류, 또 아동 보호 및 여러 분야에 걸친 지원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족과 공동체와 협력을 해야 하는 어려운 활동이다. 아동 보호 사례관리에는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비되지만, 전체 인도적 대응 활동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례관리는 모든 아동이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인도적 대응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이다.

가족 추적 및 재결합

- 남수단 아동의 삶을 바꾼 실질적 조치

세이브더칠드런은 유니세프, 아동보호책임영역(Child Protection Area of Responsibility) 및 31개 파트너 기관과 함께 가족 추적 및 재결합 사업을 통해 남수단에 동행자 없이 자신의 가족 및 공동체와 분리된 아동 약 6,000명의 재결합을 도왔다.¹⁸⁶ 2013년 이래로 동행자 없이 분리된 아동의 사례관리 등록 건수는 18,000건이 넘는다. 지속적인 사례관리 지원, 재결합 이후 후속관리, 대안적 방식의 관리를 받고 있는 7,576명 외에도 보호자 실종으로 등록된 아동도 5,362명이 존재한다. 이 같은 활동은 위급상황에서의 가족 추적 및 재결합에 관한 실용적 핸드북 개발로 이어져 남수단 상황에 전 세계적 기준과 지침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¹⁸⁷

공동체 기반 아동 보호

- 아동 주변인을 통한 지속가능한 변화

분쟁 중 아동 대다수의 경우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소속 가족과 공동체다. 다수 민족학 연구 및 실무연구에 따르면 공동체 기반 아동 보호는 “비공식-공식적 협업 및 협력, 공식 서비스 활용 확대, 내부 주도의 사회변화, 높은 수준의 공동체 주인의식 함량을 가능케 하는 공동체 주도의 상향식 활동”인 경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¹⁸⁸ 동 예루살렘의 보호 기관들은 서안지구 내 취약 공동체가 “생존자/공동체 주도 위기 대응”을 통해 자체적인 보호 및 재건 활동을 설계, 이행하도록 돕는 YMCA 활동을 지원했는데, 생존자/공동체 주도의 위기 대응 방식의 접근법은 공동체의 재건, 존엄성 고취, 공동체와 청년의 자력화(empowerment), 공동체에 대한 지방 당국의 책무성 강화 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¹⁸⁹ 아동은 공동체 내에서 변화의 능동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분쟁 영향을 위한 현지참여(Local Engagement to Advocate for Peace, LEAP) 프로젝트는 더 아동친화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목표로 부정의와 불평등 문제에 맞서 아동에게 힘을 부여하는 옹호활동과 직접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10개 현지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아동 자력화를 돕는 현지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이 같은 접근법은 아동이 공동체와 지역에서 자신의 견해와 생각을 표현하도록 돕는 데 특히 효과적이었다.



정신건강 및 심리 지원 - 미래 재건의 열쇠

"지난 몇 년간 인도주의 상황에서의 정신건강과 심리지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올바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함께 교육·보건·보호 분야 전반에 걸친 준비를 바탕으로 큰 도약을 이뤄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입 활동을 반복·확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앨리스테어 애거(Alastair Ager) 교수,
부수석 과학자문,
영국 국제개발부

1장에서 논의한 바 있듯이 분쟁은 아동의 정신 건강에 매우 극심한 평생의 영향을 준다. 그럼에도 분쟁지역에서 아동 및 그 가족들과 함께 활동해 온 세이브더칠드런과 다른 단체의 경험은 아동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음을 단언케 한다. 또한 분쟁 상황에서 정신건강과 심리 지원(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MHPSS) 강화를 위한 중요 이니셔티브들이 실행되고 있기도 하다. 국제적 지침인 위급상황에서의 정신건

강과 심리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상임위원회 지침(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guidelines for MHPSS in emergencies)은 각기 다른 수준의 사회 보건 체계에 적용될 수 있는 다층적인 지원 체계를 명시하고 있다.¹⁹⁰ 최근 몇 년 사이 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을 위한 정신건강 및 심리 지원 대응을 향상할 방안에 대한 공여국과 비정부기구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2018년 1월에 열린 중요 회의에서는 분쟁 영향을 받는 아동과 청년의 정신건강 및 심리 지원 수요 충족을 위해 다음 4개 핵심경로를 포함하는 전 세계적 로드맵이 마련되었다.¹⁹¹

1. 아동 보호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전 계층에 걸친 다분야 프로그램 설계 및 조정
2. 청년을 수혜자가 아닌 각자 인생의 주체로 보고 관계 맺기
3. 양육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보호자의 안녕, 정신건강 및 심리 지원을 돕기
4. 국가적 역량 강화

지역적 차원에서든 전 지구적 차원에서든 정신건강 전문가, 특히 소아 정신건강 치료 전문가



축구의 힘:
 아스널 축구클럽과
 세이브더칠드런은
 축구를 통해
 아동의 용기를 북돋우고
 내적인 힘을 기를 수 있는
 획기적인 코칭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PHOTO: CHARLIE FORGHAM-BAILEY/SAVE THE CHILDREN

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전문가들이 분쟁 중 아동 및 그 가족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도구가 필요하다. 정신건강 및 심리 지원 활동이 인도주의 대응에 있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하려면 공여자와 국제사회는 분

쟁 중 아동의 정신건강 및 안녕을 지원하는 활동에 대해 그저 수사적인 열정이 아닌 구체적인 자금지원 약속과 실제적인 변화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HEART 프로그램

예술을 통한 치유와 교육(Healing and Education through the Arts, HEART)를 뜻하는 HEART 프로그램은 예술을 바탕으로 중증 또는 만성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는 아동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을 제공한다.¹⁹² 이 프로그램은 아동이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감정을 처리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룹 활동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표출적인 예술 활동을 활용한다. 프로그램의 운영은 긴장완화, 스트레칭 해소, 감정 이해, 감정 통제, 신뢰 구축, 그룹 커뮤니케이션, 문제 해결, 미래 그리기, 그룹 지원 등에 주안점이 있다. 치유 과정은 아동이 예술 표현을 통해서, 또 응원하는 태도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

는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이나 또래집단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기억, 생각, 감정을 처리하고 표현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

HEART 프로그램은 아동이 자신의 삶과 공동체 속 또래집단과는 고립감을 덜 느끼고, 더 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며, 신뢰하는 성인들 속에서는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아동은 더 자신감을 갖고, 안전하고, 능력을 갖추며, 교육이나 사회적 환경에서 더 잘 성장할 수 있다.



PHOTO: CHARLIE FORGHAM-BAILEY/SAVE THE CHILDREN

축구의 힘

아스널 축구클럽과 세이브더칠드런은 축구를 통해 아동의 용기를 북돋우고 내적인 힘을 기를 수 있는 획기적인 코칭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전직 축구선수 페어 메르테자커(Per Mertesacker)는 요르단 자타리 난민캠프에 방문했을 때 이를 실제로 목격했다.

“모함마드라는 시리아 소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 나라를 떠나 가족과 난민캠프에서 새 삶을 꾸려야 했음에도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현재를 즐기면서 자기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모함마드의 집을 찾아가 그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제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선수 시절 저는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모두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결과는 내야 했습니다. 저의 경험은 젊은 선수들과 관계 맺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연이 없는 사람도, 아무런 일도 겪지 않은 사람도 없으니까요.

자타리 난민캠프에서 저는 전쟁에 찢겨나가고 가난에 찌든 지역에서 축구를 통해 일상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경감해주고 아이들이 위급상황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을 봤습니다. 말로 하기 어려운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와 심리적인 상처들을 마주했죠.

축구가 모두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건 우리가 함께 느꼈던 진실한 무언

가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지 축구를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삶을 준비할 수 있게 하고, 기회를 만들고, 계속 꿈을 품게 하고, 아이들 각자의 목표로 인도해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트레이너 훈련 방식을 활용합니다. 처음에는 아스널 코치를 훈련하고, 그 다음에는 아스널 코치가 요르단 현지 코치를 훈련하고, 요르단 현지 코치는 시리아 소녀와 소년들을 코칭하게 됩니다. 이 코치들은 아이들의 회복을 돕도록 세이브더칠드런의 응급 심리치료 전문가로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저도 아이들과 어느정도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마다 뭔가를 배우게 됩니다. 언젠가는 14살짜리 나빌라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아이는 저에게 ‘축구는 남자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모두를 위한 거예요. 경기장 안팎에서 도움이 되는 코칭과 전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라고 말해줬습니다.

저는 정말 아이들이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펼치지 못한다면 결국 세상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페어 메르테자커는 독일과 아스날 소속 전직 축구선수였고, 현재는 아스날 아카데미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교 안팎에서 아동을 안전하게 지키기 - 안전한 학교 프로그램 접근법

"우리 학교는 아주 아늑하고 따뜻해요. 창문도 새로 생기고 난방도 돼요. 학교 선생님들도 좋아요. 우리 학교는 평화 공간이라서 너무 좋아요."

안나(8세, 우크라이나)

세이브더칠드런의 안전한 학교 프로그램은 아동을 학교 안팎의 폭력, 재난, 분쟁, 일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방식의 모든 위험 접근법(all-hazards approach)이다. 이 프로그램은 수십년간의 경험·학습 연구에 기초해 학교에 대한 공격, 강제징집, 성폭력 등 분쟁으로 교육이 붕괴된 상황에 처한 아동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를 평화구역으로 만들기" 개념에서 출발한다. 이 개념은 스리랑카, 네팔 내전에서 정치적 불안과 폭력에서부터 학교를 보호하기 위해 처음 개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가 "평화구역"으로 선포되도록 보장하는 공동체 참여 이니셔티브에 초점을 맞췄다. 2015년 안전한 학교 선언이 선포된 이래로 안전한 학교 프로그램은 학교 및 공동체에서의 구체적 보호 조치, 의무 부담자와 무장 비국가행위자 역량강화, 장기적인 옹호활동을 서로 연결한다.

이 같은 접근법은 공격으로부터 교육을 보호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신속성이 있는 해법을 촉진한다. 안전한 학교 선언에 서명한 정부가 현장의 아동에게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주겠다는 약속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안전한 학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것이다. 일례로 우크라이나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은 분쟁의 영향을 완화하고자 분쟁 대치선 인근 학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이는 지방 차원의 개입활동(학교 안전 계획 발전 및 아동 심리 지원 방안 마련 등)이 전국적 차원의 옹호활동(아동 주도 옹호활동을 통한 안전한 학교 선언)과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위급상황에서의 교육 - 자금지원 확대 및 조정업무 개선

2016년 세계 인도주의 정상회의(World Humanitarian Summit)에서는 교육은 기다릴 수 없다(Education Cannot Wait, ECW) 기금을 출범시켰는데, 이 기금은 위급상황에서의 재정지원의 판도를 바꿀 촉매제로 작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기금의 일차 긴급 대응(First Emergency Response) 투자 창구에서는 급작스레 발생하거나 고조되는 위기상황에서 즉각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한다. 기금의 다

년간 복구(Multi-Year Resilience) 투자 창구에서는 장기적 요구를 다루는데, 장기화된 위기 상황에서 수년간 합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하고 인도주의와 개발 분야 행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교육과 관련한 공동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기금은 벌써 19개 분쟁영향국의 아동 및 청년 765,000명(단, 이 중 소녀의 비중은 절반 미만)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했다. 이 기금은 2018년 말까지 아동 백만 명에게 도달한다는 목표를 향해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¹⁹³ 본 보고서 작성 시점에서 이 기금은 방글라데시와 우간다에서 난민과 난민 수용국의 교육 지원을 위한 획기적인 다년차 프로그램 두 가지를 선보였다. 이 기금은 2019년에도 다년차 프로그램 추가적으로 선보일 계획을 갖고 있다. 이 야심 찬 펀딩 목표가 달성되고 모든 다년차 프로그램의 재원이 완비될 수 있으려면 공여자들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 기금은 교육클러스터(Education Cluster)와 협력하여 장기화된 위기 상황에서 교육 지원의 장기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클러스터는 인도주의 상황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전 세계적 조정 메커니즘으로, 세이브더칠드런과 유니세프와 공동으로 주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긴급 및 장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사항과 비용을 협의하여 개발 대응 계획을 수립한다. 2018년 말 기준 25개국에서 국가단위 교육 클러스터와 실무그룹이 활동 중이다. 위급상황에서의 교육 활동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최근 몇 년간 세계교육클러스터(Global Education Cluster)에 조정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추가 자금이 제공됐다. 그럼에도 국가단위 교육클러스터와 위급상황에서의 교육 대응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여전히 들쭉날쭉한 상황이다.

난민 아동 지원 - 몇 년 후가 아닌 몇 개월 안에 아동을 학교로 돌려보내기

2016년, 유엔 회원국 193개국은 난민 및 이주민에 관한 뉴욕 선언(New York Declaration for Refugees and Migrants)에 서명함으로써 강제로 피난길에 떠난 이들을 보호하고 또 이들에게 보호처를 제공하는 국가를 지원하는 것이 공동의 국제적 책임이며, 이 같은 부담은 반드시 공평하고 예측 가능하게 나누어져야 한다는 점에 합의한 바 있다.¹⁹⁴ 이 선언은 무엇보다도 모든 난민 아동이 국경선을 넘은 후 수개월 이내에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담고 있다. 2년이 지난 2018년 12월, 유엔 총회는 새로운 주요 국제체인 난민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on Refugees)에 합의했다. 이는 분쟁의 결과로 난민이 되는 아동과 이들을 수용하는 국가의 아동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며, 대규모 실항 및 난민 위기에 대한 대응방식을 바꿔놓을 것이다.



PHOTO: DAPHNEE COOK / SAVE THE CHILDREN

회복을 향한 여정: 자넨 아라의 사례

“배우고 놀 때면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잊게 돼요.”

로힝야 난민인 자넨 아라(12세)는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 난민캠프에서 살고 있다. 자넨과 여동생은 부모님을 잃고 고모와 삼촌이 이들을 돌봐주고 있다.

자넨은 현재 세이브더칠드런 학습센터에 다니고 있다.

자넨은 “학습센터가 참 좋아요”라며 “특히 수학이랑 영어를 배울 때가 좋아요”라고 말했다.

자넨은 “미안마에 있을 때 많은 일을 겪었어요”라며 “학습센터에서 그림 그리기, 춤추기, 노래하기를 배웠어요. 그게 저랑 거기 다니는 아이들이 겪은 일을 잊어버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라고 덧붙였다.

자넨은 세이브더칠드런의 '여아친화공간'에도 참여한다. 이 곳에서 자넨은 건강, 자기보호, 조혼과 안전사고의 위험 등을 배운다.

자넨은 “나중에 커서 일을 하고 싶어요”라며, “제 생계를 책임지려면 돈을 벌 수 있어야 해요”라고 말했다. 자넨의 꿈은 선생님이 되거나, 병원에서 일하거나, 비정부기구에서 일하는 것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 과정에서 난민 교육 문제에 특히 초점을 맞춰 옹호활동을 수행했다. 난민 아동을 수용국의 국가 교육 체계 속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실향 아동에게 교육 수준에 대한 감독이 가능한 인증·공인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이다. 난민 글로벌 컴팩트는 이와 관련해 난민 아동이 이상적으로는 최대 3개월 이내에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난민을 포용하는 국가 교육 부문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지원을 제공”¹⁹⁵ 하는 등의 긍정적 약속을 다수 담고 있다. 또 포용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언급되어 있으며 난민 소녀가 마주하고 있는 교육상의 장애물을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음도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이 목표 달성을 위해 긍정적인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 이 중 아프리카 동부 지역의 7개 국가들은 2020년까지 자국의 교육제도에 난민 교육을 포함하겠다고 약속했다.¹⁹⁶ 난민 글로벌 컴팩트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그 같은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가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두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글로벌 난민 포럼(Global Refugee Forum) 메커니즘의 설치로 정부들이 재정적·기술적·정책적인 서약을 내놓을 수 있게 할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이로써 어떤 진전이 이뤄졌는지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소아 폭발 부상 파트너십 - 폭발로 부상당한 아동의 치료 개선을 위한 길을 열다

소아 폭발 부상 파트너십(Paediatric Blast Injury Partnership)은 세이브더칠드런과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폭발 부상 연구센터(Centre for Blast Injury Studies)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니셔티브로,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폭발성 무기로 중상을 입은 아동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및 기관들을 한 자리로 불러모았다. 이 이니셔티브의 목적은 연구와 실무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아동 폭발 부상의 복잡성과 장기적 영향에 대한 인식 제고를 돕고, 현장의 의료진에게 실질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소아 폭발 외상 문제에 구체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는 세계 최초의 기구다.

이 기구는 분쟁지역 및 분쟁종식지역에서 활동하는 의료인들의 아동 폭발 부상자 치료를 돕기 위한 현장 매뉴얼을 제작했다. 이 매뉴얼은 실용적 체계를 담고 있는데, 외상 치료 경험이 없는 소아과 의사와 소아 치료 경험이 없는 외상학과 의사가 아동 폭발 부상자를 야료할 수 있도록 체

계획하고, 어렵짐작으로 하던 치료를 가장 필요한 시기에 타인에게 전수할 수 있는 기술로 바뀌었다. 이 매뉴얼로 제약사항이 많은 환경에서 치료를 수행하는 의사도 필요한 지침과 확신을 가지고 중상을 입은 아동을 치료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환자의 생존확률과 미래 행복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민-군 조정 및 훈련

분쟁이 아동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고려할 때 군과 민간 행위자 간의 조정 활동은 아동이 처한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 세이브더칠드런에 있어 핵심적인 접근법은 군, 경찰, 기타 유관 조직의 임무수행 체계에 아동권리와 아동보호 접근법이 포함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의 훈련을 받은 군 관계자의 수는 약 10만 명에 달하며, 12개국 군대에 아동보호 부서가 설치되었으며, 아프리카 연합 대기군(African Union Standby Forces)을 위한 툴킷 모듈이 준비되고 있기도 하다. 이 외에도 세이브더칠드런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파트너십을 맺고 아동 관련 훈련을 마련하고 있다. 이 훈련은 이 접근법을 더 폭넓게 주류화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공할 것이다. 다소 복잡성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 같은 민-군 조정활동은 효과적으로만 실시된다면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 아동 특유의 취약성과 필요, 군사 행위자의 의무에 초점을 둔 군사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을 기획하고 참여하도록 하면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의무의 준수 촉진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일례로 아동이 무장단체로 징집되고 사용되는 지역과 같은 중요 지역에서는 개선된 훈련으로 현장에서 아동의 행위가 개선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분쟁 중 아동의 보호에 있어 군이 가지는 커다란 역할을 고려할 때 군에 아동 관련 전문성이 함양되도록 투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동과 무력분쟁 대사 임명 - 아동을 최우선 순위로 하다

2017년, 스웨덴은 아동과 무력분쟁에 대한 대사를 임명해¹⁹⁷ 모든 정부 부처에서 분쟁 중 아동 보호에 대한 일관성 있는 강조와 투자를 보장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 새로운 역할은 이 사안에 대한 스웨덴 정부 활동의 효과성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만들어 내, 대사직의 스웨덴 외교부 내 위상이 높아졌고, 중요하게는 유엔이나 유럽연합 등의 다자 논의체제에서의 무력분쟁 중 아동 사안이 한층 더 주목받게 되었다. 그러한 결과 중 하나는 스웨덴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사국으로 선출된 2년의 임기 동안 분쟁 중 아동 의제에 대한 안보리의 활동이 보다 효과적으

세이브더칠드런의 훈련을 받은 군 관계자의 숫자는 약 10만 명에 달하며, 12개국 군대에 아동보호 부서가 설치되었다

로 이뤄진 것이었다. 이 역할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려면 명확한 임무와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며,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 다른 정부들도 스웨덴의 모범을 따르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

중재 및 평화 프로세스 - 아동을 논의의 중심에 두다

모든 정치적 합의의 출발점에 아동 관련 규정을 두게 되면 향후 아동권리 침해 예방과 아동 보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무장 단체와의 대화 과정에서 아동 보호 의제가 유용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던 최근 콜롬비아 평화 프로세스에서 입증되었다.¹⁹⁸ 2018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회원국과 유엔 기구 및 유엔 평화구축위원회(UN Peacebuilding Commission)에 가능한 경우 평화조성(peace-making) 프로세스에 아동의 의견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¹⁹⁹ 최근 유엔 기관, 시민사회, 유엔 회원국은 힘을 합쳐 중재자를 위한 유연한 지침을 개발했다. 2016년, 뉴욕 소재 정책 플랫폼인 옹호 아동과 무력분쟁 워치리스트(Watchlist on Children and Armed Conflict)는 유엔 정치부 중재 지원 기구 등의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정전 및 평화 협정에서의 아동 징집 및 무력분쟁 규정 체크리스트(Checklist for Drafting Children and Armed Conflict Provisions in Ceasefire and Peace Agreements)를 마련했다.²⁰⁰ 이후 2017년, 안전보장이사회는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의장성명에서 아동과 무력분쟁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에게 유관 아동 보호 활동 행위자와 협력해 평화 프로세스에서 아동 보호 문제를 통합하는 것에 관한 실용적 유엔 지침서를 집대성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체크리스트를 통해 이뤄진 진전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²⁰¹ 아동 보호 문제에 대응하는 세계공동체는 평화 및 정전 협정에서 아동 문제 주류화를 촉진할 구체적인 자료 개발을 통해 분쟁의 여파 속에서 아동의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4장

변화를 만들기: 분쟁 중 아동을 위한 국제적 약속의 재확인

2019

2019년은
아동권리 개념의
창시자가 활동을
개시한 지 100년이
되는 해이자,
유엔 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이
되는 해다

본 보고서는 분쟁 중 아동에 가해지는 위협의 규모와 심각성, 또 그 같은 위협이 아동에게 미치는 뚜렷하고도 파괴적인 효과를 기술했다.

이 같은 고조되고 있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은 다음 세 가지 축으로 나뉘볼 수 있다.

1. 분쟁 중 행위규범 준수
2. 가해자 책임추궁
3. 현장에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

분쟁 중 아동 보호 노력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강력한 내재적·도덕적 외침이 존재한다. 그 같은 노력은 모든 사람의 안보가 달린 규범에 기반한 국제적 체계가 유지되는데도 매우 중요하다. 이 의제에 진지하게 헌신해야 할 강력한 전략적·경제적 이유도 존재한다. 분쟁 중 아동 보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속가능한 개발, 지속가능한 평화는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분쟁 중 아동 보호는 전 세계적인 중요성 문제다.

세이브더칠드런 창립 100년에 접어드는 지금, 우리는 창립 목적에 다시금 헌신하려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타인이 분쟁 중 아동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책임을 지울 것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으로 살아가기에 최악인 모든 분쟁영향국에서 활동하며 아동 보호와 위기상황에서의 교육 등 핵심 영역에서의 대응 능력을 확대하고,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입은 아동 등의 회복을 지원할 것이다. 옹호 활동을 강화해 국가와 무장 비국가행위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하고,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 것을 촉구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국제적인 진전으로 아동 보호가 개선될 수 있었던 사례들을 조명했다. 그 속에서 발견한 희망으로 더 활발한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에 대한 전쟁 중단”을 위한 현장(다음 페이지)은 무력분쟁에서의 아동 보호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는데, 이 원칙은 아동권리 침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아동이 자신의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한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은 이 현장의 원칙을 행동으로 옮길 방법에 대한 권고를 담고 있다.

예멘, 미얀마, 남수단, 기타 분쟁에서 아동이 겪은 고통, 중대한 침해행위 중 그 어떤 것도 불가피한 것은 없다. 아동권리 침해는 바로 개인의 의식적인 결정, 가해자의 결정, 또 타인의 행위에 개입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의 결과로 발생한다. 그런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는 가치와 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바꾸는 것은 가능한 일이며, 가능하도록 해야만 한다. 정부는 그런 가치와 동기를 형성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가 준수하는 기준과 문헌은 국가 및 비국가행위자가 활동하는 환경에 영향을 준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정부는 특히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행동의 세 가지 축을 긴급하게 강화해야 한다.

“아동에 대한 전쟁 중단” 헌장

“모든 전쟁은 아동에 대한 전쟁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창립자인 에글렌타인 켈(Jeanette Eglantyne Jebb)이 백년전 남긴 이 말은 오늘날 우리 세대를 향한 행동 요청이다.

세계 곳곳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아동이 자신이 그 어떤 원인으로 제공한 바 없는 분쟁에 휘말려 있다. 많은 아동이 일상적으로 살해와 중대한 상해, 성폭력과 착취 등 끔찍한 폭력행위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또 그 보다 더 많은 아동은 아동 보호를 못 한 총공격의 부수적 피해자로 취급당하고 있다. 식량, 돌봄, 지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인도적 원조를 차단당하고 있다. 학교와 학생을 보호하지 못했기에, 교실은 공격의 표적이 되고 말았다.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파괴로부터 취약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본적 인권과 국제법은 위반되고 있으며, 위반행위는 처벌되지 않고 있다.

다양한 나라, 문화, 신념을 가진 우리들은 아동에 대한 전쟁을 반드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세계의 아동, 우리의 아이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을 감싸 주는 불처벌의 문화를 끝장내야 할 때가 왔다.

아동은 우리의 현재이자, 우리의 미래요, 전쟁으로 부서진 사회를 재건할 우리의 희망이다. 그 어떤 아동도 무력분쟁으로 인한 두려움과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모든 아동은 공동의 윤리 속에 뿌리내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우리 공동의 인류애는 우리가 보호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정부와 모든 무장단체가 아동 보호를 위해 입안된 국제법과 인권법의 규정과 규칙, 기준을 확약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각자, 또 함께 다음이 실현되는 세상을 약속한다.

- 모든 아동이 살해와 중대한 상해로부터 보호받는다.
- 학교와 보건센터는 평화·보호 구역으로 간주된다.
- 모든 아동이 강간과 성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는다.
- 어떤 아동도 군대나 무장단체에 징집되지 않는다.
- 분쟁 중 모든 아동이 납치, 구금, 실형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
- 분쟁 중 어떤 아동도 인도적 원조를 차단당하지 않는다.
- 분쟁 중 아동권리 침해행위에 대한 엄격한 감시, 보고, 조치가 이뤄진다.
- 분쟁 중 아동권리 침해의 가해자, 감독권자, 명령권자가 법의 심판을 받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분쟁으로 피해를 입거나 영향을 받은 모든 아동이 그 같은 상황에 대처하고, 회복하고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을 받는다.
- 난민과 국내실향민을 포함해 분쟁으로 영향을 받은 모든 아동이 양질의 교육을 받는다.

에글렌타인 켈은 “유일한 세계공용어는 아이의 울음 소리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러한 울음소리를 들었고, 이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아동에 대한 전쟁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권고사항

우리는 모든 지도자, 정부, 무장 비국가행위자, 인도주의 비정부기구와 관련 기구에 분쟁 중 아동의 보호에 다시금 헌신하고 행동을 위한 각자의 실천 과제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다음 권고는 특히 정부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아동 권리를 보호하는 데 일차적 책임을 가지며 분쟁 중 아동 보호에 가장 큰 잠재적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행동을 위한 의제 마련을 위해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분쟁 중 행위규범 준수

-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서명하고 완전한 이행을 약속할 것. 또 아동의 군 징집에 “엄격한 18세” 원칙을 담고 있는 파리원칙(Paris Principles)과 파리서약(Paris Commitments)에 서명할 것
- 안전한 학교 선언(Safe Schools Declaration)에 서명하고 이를 온전히 이행할 것, 또 다른 나라에 자국의 선례를 따를 것을 권고하기로 서약할 것
- 군사교리, 훈련, 기타 조치를 강화해 자국군과 동맹국이 다음과 같이 행동하도록 보장할 것
 - 부수적 피해에 대한 평가 시 군사행동이 가져오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고려할 것
 - 이를 경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따라 사상자를 기록할 것
- 주거지역에서의 폭발성 무기 사용 자제에 대한 정치적 선언을 향한 움직임을 지지할 것
- 아동 보호를 위해 국가, 유엔, 비정부기구, 비국가 무장단체 간 대화를 촉진할 것. 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 행동강령, 행동계획 개발을 위한 비국가 무장단체와의 교류 노력을 지지할 것. 인도주의 활동, 인권 활동이 기관과 무장단체와의 교류 제한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
- 국제적인 무기이전 및 기타 군사서비스의 인도 및 공급을 규제하고 투명성을 개선할 것. 국제무기이전 등이 국제법 및 규범에 대한 존중 여부에 따라 조건적으로 이뤄지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 6대 중 대한 아동권리 침해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기록된 행위자와 거래를 했거나 아동권리 침해를 자행하는 데 해당 무기가 사용될 것이라는 신뢰할만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모든 국가가 정책적 차원에서 무기, 군사장비, 서비스의 판매를 불허하도록 할 것²⁰² 또 모든 국가가 무기거래조약에 가입·비준하고, 조약 당사국은 조약상의 의무를 충실히 준수할 것

가해자 책임추궁

- 국제적 수사활동에 젠더인지적, 아동특화된 전문성을 제공하고 국제형사재판소 및 임시 사법 메커니즘을 지원하여, 분쟁 중 아동권리 침해 사건 기소를 위한 국제적 메커니즘을 지지할 것
- 유엔 총회에서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의 위반행위, 특히 아동권리 침해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취합·보존·분석하는 불편부당하고 독립적인 국제 상설 메커니즘을 설치하도록 촉구할 것
- 나이와 성별로 구분된 사상자 및 기타 아동권리 침해행위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완전하고 정확하고 불편부당하게 가해자를 지목하는 등의 유엔의 아동권리 침해에 대한 체계적 감시 및 보고 활동을 재정적·외교적으로 지원할 것
- 분쟁 중 아동권리 침해 가해자를 상대로 재산 몰수, 은행계좌 동결, 여행 제한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활용할 것. 또, 자국 수사기관이 제3국에서 자행된 중대한 아동권리 침해 행위를 수사하고 이를 법원에 기소할 수 있도록 자원을 배정할 것
- 아프리카의 경우, 이는 아동의 권리 및 복지에 관한 아프리카전문가위원회(African Committee of Experts on the Rights and Welfare of the Child)의 진정절차를 통해²⁰³ 또 전 세계적으로는 아동권리 미준수 당사국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를 서명·비준하여²⁰⁴ 아동이 분쟁 중 아동권리 침해행위에 대해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비국제적 무력분쟁에서 자행될 수 있는 전쟁범죄의 목록에 민간인 주민에 대한 고의적 기

- 아사태 유발이 포함되도록 하는 로마규정 8조 개정안을 지지할 것
-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의 경우 분쟁 중 아동 권리의 중대한 침해 가해자에 대한 유엔의 조치를 방해하지 말 것

- 각국 차원의 아동과 무력분쟁 대사를 임명할 것
- 평화조성(peace-making) 및 평화구축(peace-building) 노력에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

아동의 보호와 회복 지원을 위한 실질적 조치

-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전체 재원에서 아동 보호가 차지하는 현재 비율을 0.5%에서 4%로 증액할 수 있도록 인도적 아동 보호 활동에 대한 다년간의 투자를 확대할 것. 인도주의 개입 활동 전 분야에서 아동 보호 활동의 결과를 측정하고 보고할 의무를 규정할 것. 분쟁 상황에서의 인도적 필요 평가와 대응 활동에서 보호가 가지는 중심적인 위치가 보장되도록 할 것²⁰⁵
- 아동과 그 가족의 정신건강 및 심리 지원이 모든 인도주의 대응 활동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고, 거기에 충분한 자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교육, 성폭력과 젠더기반폭력, 지뢰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등 기타 중요한 인도적 아동 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
- 분쟁 후 재건의 핵심 요소로 아동에 초점을 둔 회복 기금을 마련하여 아동의 교육, 보건, 보호, 정신건강 및 심리지원에 투자로 인적 자원이 형성될 수 있게 할 것
- 분쟁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피난길에 오른 모든 아동이 실향 후 수개월 이내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보장하고, 모든 교육 대상 실향민 아동에 필요한 자원과 양질의 교육 제공 방안을 포함하는 국가 차원의 비용추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다자간 평화유지 및 정치임무단 활동에 선임급 아동 보호 및 아동권리 전문가를 전임으로 배정할 것. 이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수임사항에 선임급 아동 보호 고문직 배정을 위한 자원을 명시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할 것
- 대테러 활동 및 극단주의 폭력 예방활동에 대한 접근법을 재검토해 무장단체 연루 의혹과 관계없이 아동이 언제나 아동으로서 대우받도록 보장할 것

2019년은 아동권리 개념의 창시자가 활동을 개시한 지 100년이 되는 해이자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지 30년이 되는 해다. 2019년 9월에 개최되는 74차 유엔 총회는 정부들이 위 세 가지 축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서약함으로써 분쟁 중 아동의 보호에 다시금 헌신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기회가 될 것이다. 전 세계 분쟁 지역에 사는 아동을 위해 그 약속과 행동은 너무나도 기다리던 일이다.

**전 세계 분쟁 지역에 사는
아동 보호를 위한
각국 정부의 약속과 행동은
너무나도 기다리던 일이다**

미주

- 1 Save the Children (2018), *The War on Children: Time to end grave violations against children in conflict*
- 2 See for example, Williams (2017), 'Continuity and Change in War and Conflict in Africa', PRISM, 6, 4, p33-45 <https://cco.ndu.edu/PRISM-6-4/Article/1171839/continuity-and-change-in-war-and-conflict-in-africa/>
- 3 ICRC (2019), 'Precautionary measures in urban warfare: A commander's obligation to obtain information', <https://blogs.icrc.org/law-and-policy/2019/01/10/joint-blog-series-precautionary-measures-urban-warfare-commander-s-obligation-obtain-information/>
- 4 This is reflected in the major faiths, which place value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In Islam, for example, clear rights exist to life, protection, health and education. At the foundation of the Jewish social world-view is the proposition that individuals are obliged to protect the life and dignity of all human beings, with the vulnerability of children demanding an even greater responsibility. In Christianity, the belief that children are a gift from God and should be the subject of protection and cultivation is central. In Buddhism, the avoidance of harm is a taught precept that runs through all the Buddha's teaching.
- 5 The UN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was adopted in November 1989 and came into force in September 1990. Currently, 196 countries are party to it, including every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except the USA.
- 6 Much of the following is drawn from Fatima, S. et al (2018) *Protecting Children in Armed Conflict*, Hart Publishing.
- 7 The ICC's Policy on Children identifies the following war crimes directed specifically against children: child recruitment and use, the forcible transfer of children as an act of genocide, and trafficking of children as a form of the crime against humanity of enslavement or sexual slavery. Other crimes affecting children include: killings, mutilation, torture, pillaging, and sexual and gender-based crimes, perpetrated either against children themselves or their families and communities, and attacks against buildings dedicated to education and healthcare. ICC Office of the Prosecutor, (2016). *Policy on Children*. https://www.icc-cpi.int/iccdocs/otp/20161115_OTP_ICC_Policy-on-Children_Eng.PDF
- 8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RES/1612 (26 July 2005). [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S/RES/1612%20\(2005\)&Lang=E&Area=UNDOC](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S/RES/1612%20(2005)&Lang=E&Area=UNDOC)
- 9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RES/1325, (31 October 2000).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N00/720/18/PDF/N0072018.pdf?OpenElement>
- 10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RES/1265, (17 September 1999).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N99/267/94/PDF/N9926794.pdf?OpenElement>
- 11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34/180,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8 December 1979). <http://www.un-documents.net/a34r180.htm>
- 12 It is mandated with maintain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cluding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and special political missions, international sanction and the authorisation of military action.
- 13 In 2015, states agree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ts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se set an ambition for human development – including inclusive and peaceful societies of which protection is a key component. SDG 16 sets targets to reduce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children (SDG 16.1, 16.2).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5) UNDP.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
- 14 Ostby et al (2018) *Children Affected by Armed Conflict, 1990–2017*, PRIO
- 15 Defined as individuals under the age of 18
- 16 The number of children living in conflict zones in 2016 is estimated at 393m. This is higher than the figure of 357m cited in Save the Children's *End the War on Children* (2018). The upward revision is due to the use of more accurate and finer-grained population data.
- 17 For full methodology see Ostby et al, note 16.
- 18 This methodology therefore uses different definitions of armed conflict from those used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Law of Armed Conflict (LOAC).
- 19 A notable absence from this list is Myanmar, where violence forced hundreds of thousands of Rohingya people – more than half of whom were children – to flee into neighboring Bangladesh in August and September 2017 (see page 32). Inadequate reporting and data collection mean that the absolute numbers captured are low.
- 20 UN News (2018), *Yemen overview* (webpage), <https://news.un.org/en/focus/yemen>.
- 21 Save the Children (2018), *Starvation in Yemen: 85,000 children may have died of hunger*. <https://blogs.savethechildren.org.uk/2018/11/starvation-in-yemen-85000-children-may-have-died-of-hunger/>
- 22 Save the Children (2017) *End the War on Children: Time to end grave violations against children*. <https://www.savethechildren.net/waronchildren/pdf/waronchildren.pdf>
- 23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nnual Report of the Secretary General on Children and Armed Conflict* (CAAC). S/2018/465 (16 May 2018). <http://undocs.org/s/2018/465>
- 24 Wagner et al (2018) 'Armed conflict and child mortality in Africa: a geospatial analysis', *The Lancet*, Vol 392, 10150,

- Pp 857-865. [https://www.thelancet.com/pdfs/journals/lancet/PIIS0140-6736\(18\)31437-5.pdf](https://www.thelancet.com/pdfs/journals/lancet/PIIS0140-6736(18)31437-5.pdf)
- 25 This is the estimated minimum total indirect deaths of infants/under-fives in the period 2013–2018. For Afghanista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the DRC, Mali, Nigeria, Somalia, South Sudan and Yemen, we assume that the findings of Wagner et al apply, as baseline infant/under-five mortality is comparable (based on UNIGME data). Using Wagner et al's finding that 3.2–3.6/5–5.7 under-one/under-fives die for every one battle death, we multiply recorded battle deaths in our sample countries (UCDP) by the mid-point in the range (3.4/5.35) to estimate the number of indirect under-one and under-five deaths that resulted from conflict (n = 555,150 and 868,011 respectively). This total includes adjustments for Syria and Iraq – both of which had lower baseline infant and child mortality. In those two countries we used Wagner et al's findings that 6.6–7.3%/6.6–7.4% of all under-one/under-five mortality could be attributed to conflict – applying those percentages to total infant/under-five mortality in Syria and Iraq between 2013 and 2018 (UNIGME). This is a deliberately conservative approach. According to UCDP data, and Violations Documentation Center data for Syria due to underreporting in the UCDP data, there were 331,664 battle related deaths in the same countries in the same period. Of these, using the same sources, 174,703 were combatants.
 - 26 The annual children and armed conflict reports are not the only vehicle for recording and publishing violations against children in conflict.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UN Secretary-General for Children and Armed Conflict also produces context-specific reports, which provide further detail. The SRSG also provides a report to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 addition, violations against girls are reported in the UN Secretary-General's annual report on women, peace and security, and the UN's annual report on sexual violence in conflict includes data on sexual violence against girls and boys.
 - 27 See note 23
 - 28 Office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for Children and Armed Conflict (2018), '*Children faced with unspeakable violence in conflict as number of grave violations increased in 2017*' (webpage) <https://childrenandarmedconflict.un.org/children-faced-with-unspeakable-violence-in-conflict-as-number-of-grave-violations-increased-in-2017/>
 - 29 See note 23
 - 30 UNICEF, 27 November 2018, press release, '*Geneva Palais briefing note on the situation of children in Afghanistan*', <https://www.unicef.org/press-releases/geneva-palais-briefing-note-situation-children-afghanistan>
 - 31 See note 23
 - 32 See note 23
 - 33 Guha-Sapir et al (2017) '*Patterns of civilian and child deaths due to war-related violence in Syria: a comparative analysis from the Violation Documentation Center dataset, 2011–2016*', *The Lancet*, Vol 6, 1, 2017, pp 103–110. Available at [https://www.thelancet.com/journals/langlo/article/PIIS2214-109X\(17\)30469-2/fulltext](https://www.thelancet.com/journals/langlo/article/PIIS2214-109X(17)30469-2/fulltext)
 - 34 Landmine Monitor (2018), *Landmine Monitor 2018: 20th annual edition*. http://www.the-monitor.org/media/2918780/Landmine-Monitor-2018_final.pdf
 - 35 See note 23
 - 36 Office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for Children and Armed Conflict (2019), '*Child recruitment and use*' (webpage), <https://childrenandarmedconflict.un.org/six-grave-violations/child-soldiers/>
 - 37 See note 23
 - 38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I lost my dignity: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in the Syrian Arab Republic*. HRC/37/CRP.3 (8 March 2018), <https://www.ohchr.org/Documents/HRBodies/HRCouncil/ColSyria/A-HRC-37-CRP-3.pdf>
 - 39 See note 23. The Chibok girls are female students who were kidnapped from the Government Secondary School in the town of Chibok in Borno State, Nigeria in April 2014.
 - 40 UNICEF (2018), *Nearly five million Syrian children accessing education despite over seven years of war on children*. (webpage) <https://www.unicef.org/press-releases/nearly-5-million-syrian-children-accessing-education-despite-over-seven-years-war>
 - 41 UNOCHA (2018), *Yemen Humanitarian Needs Overview 2018*, https://www.unocha.org/sites/unocha/files/dms/yemen_humanitarian_needs_overview_hno_2018_20171204.pdf; UNICEF, (2017). *Yemen Humanitarian Situation Report November 2017*, https://www.unicef.org/yemen/YEM_sitreps_Nov2017.pdf
 - 42 See note 41
 - 43 Associated Press (2018), '*Back to school, but not for all of Syria's children*' (webpage), <https://www.apnews.com/0e72a3ca724b4b35bdb8a9c215363b3c>
 - 44 UNOCHA (2018), *Ukraine Humanitarian Needs Overview 2018*, https://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humanitarian_needs_overview_2018_en_20171130.pdf
 - 45 GCPEA (2018), '*I will never go back to school: The Impact of Attacks on Education for Nigerian Women and Girls*'. http://protectingeducation.org/sites/default/files/documents/attacks_on_nigerian_women_and_girls.pdf
 - 46 GCPEA (2018), *Education Under Attack 2018*, http://www.protectingeducation.org/sites/default/files/documents/eua_2018_full.pdf
 - 47 See note 46
 - 48 See note 23
 - 49 Watchlist on Children and Armed Conflict (2018), '*Everyone and everything is a target: The impact of attacks on healthcare and denial of humanitarian access in South Sudan*', https://watchlist.org/wp-content/uploads/watchlist-field_report-southsudan-web.pdf
 - 50 Healthcare in Danger (2011), *Healthcare in Danger: Making the Case*, ICRC, <http://healthcareindanger.org/the-issue/>
 - 51 The ten conflict-affected countries included in the

- analysis were Syria, Afghanistan, Somalia, Yemen, Nigeria, South Sudan, Iraq, the DRC, Sudan, and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Save the Children UK (2018), *Hunger – a Lethal Weapon of War: The impact of conflict-related hunger on children*, <https://www.savethechildren.org.uk/content/dam/gb/reports/policy/Hunger%20-%20a%20lethal%20weapon%20of%20war%207th%20pp.pdf>
- 52 See note 51.
- 53 For more, see de Waal, A (2018), *Mass Starvation: The history and future of famine*, Polity Press.
- 54 Shenoda et al (2018), 'The effects of armed conflict on children', *Pediatrics*, Volume 152, 6, <http://pediatrics.aapublications.org/content/142/6/e20182585>
- 55 See note 21.
- 56 See note 54.
- 57 FAO, WFP, UNICEF, WHO, IFAD (2017), *The State of Food In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2017*. FAO, <http://www.fao.org/3/a-i7695e.pdf>
- 58 Save the Children (2010), *Hungry for Change: An eight-step, costed plan of action to tackle global child hunger*, <https://resourcecentre.savethechildren.net/library/hungry-change-eight-step-costed-plan-action-tackle-global-child-hunger>
- 59 Ostby et al (2018), 'Organised violence and institutional child delivery: micro-level evidence from sub-Saharan Africa, 1989–2014', *PRIO, Demography*, Volume 55, 4,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13524-018-0685-4>
- 60 UNFPA (2016), *Adolescent Girls in Disaster and Conflict: Interventions for improving access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https://www.unfpa.org/sites/default/files/pub-pdf/UNFPA-Adolescent_Girls_in_Disaster_Conflict-Web.pdf
- 61 Quintana et al (1997), 'The spectrum of pediatric injuries after a bomb blast', *Journal Pediatric Surgery*, Volume 32, 2, pp 307–11; Bendinelli (2009), 'Effects of land mines and unexploded ordnance on the pediatric population and comparison with adults in rural Cambodia', *World Journal of Surgery*, Volume 33, 5, pp 1070–1074
- 62 Bull et al (2018), 'Paediatric blast injury: challenges and priorities', *The Lancet Child Adolescent Health* 2018, <https://www.imperial.ac.uk/media/imperial-college/research-centres-and-groups/centre-for-blast-injury-studies/PBIComment.pdf>
- 63 Save the Children (2017), *Invisible Wounds: The impact of six years of war on the mental health of Syria's children*, <https://resourcecentre.savethechildren.net/library/invisible-wounds-impact-six-years-war-mental-health-syrias-children>
- 64 Save the Children (2018), *Picking Up the Pieces: Rebuilding the lives of Mosul's children after years of conflict and violence*
- 65 Shonkoff et al (2012), 'An integrated scientific framework for child survival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Pediatrics*, 29(2), pp. 460–472, <https://www.ncbi.nlm.nih.gov/pubmed/22218840>
- 66 Save the Children (2015), *What Do Children Want in Times of Emergency and Crisis? They want an education*. <https://www.savethechildren.org.uk/content/dam/global/reports/education-and-child-protection/what-do-children-want.pdf>
- 67 See note 46.
- 68 GCPEA (2019), 'The Problem' (webpage), <http://www.protectingeducation.org/problem>
- 69 ODI (2016), *Education Cannot Wait: Proposing a fund for education in emergencies*, <https://www.odi.org/sites/odi.org.uk/files/resource-documents/10497.pdf>
- 70 These can include higher rates of child marriage and adolescent pregnancy; greater levels of domestic labour and care work that keep girls in the home; lack of mobility due to safety concerns either at school or en route; lack of access to menstrual hygiene supplies; and a low value placed on girls' education generally.
- 71 MONESCO (2018), *Global Initiative on Out of School Children: South Sudan case study*,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UNICEF,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65399>
- 72 UNHCR (2016), *No More Excuses: Provide education to all forcibly displaced people*,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44847>
- 73 Ministry of Education, Islamic Republic of Afghanistan, UNICEF (2018), *Global Initiative on Out of School Children: Afghanistan case study*. <https://www.unicef.org/afghanistan/sites/unicef.org.afghanistan/files/2018-05/afg-report-oocs2018.pdf>
- 74 Save the Children (2018), *Time to Act: Providing refugee children the education they were promised*. https://resourcecentre.savethechildren.net/node/13479/pdf/time_to_act_report_online.pdf
- 75 See note 74.
- 76 Save the Children (2011), *Unspeakable Crimes Against Children: Sexual violence in conflict*. https://www.savethechildren.es/sites/default/files/imce/docs/unspeakable_crimes_report.pdf
- 77 Save the Children (2018), *2018 End of Childhood Report*, <https://www.savethechildren.org/content/dam/global/reports/2018-end-of-childhood-report.pdf>
- 78 See note 77.
- 79 See note 77.
- 80 See note 77.
- 81 UNHCR (2018), *Vulnerability Assessment of Syrian Refugees in Lebanon*. <https://data2.unhcr.org/en/documents/download/67380>
- 82 See note 77.
- 83 See note 77.
- 84 See note 23.
- 85 See note 23.
- 86 See Article 38 o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rc.aspx>; The Paris Principles: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Children Associated with Armed Forces or Armed Groups, <https://www.unicef.org/emerg/files/ParisPrinciples310107English.pdf>
- 87 Collective punishment is a form of sanction imposed on persons or a group of persons in response to a crime committed by one of them or a member of the group. (See Rabbat, P and Mehring, S (2015) 'Collective punishment', *Oxford Public International Law*, <http://opil.ouplaw.com/view/10.1093/law/epil/9780199231690>)

- law-9780199231690-e269.) State practice establishes this rule as a norm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in both international and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This prohibition is an application, in part, of Rule 102 that no one may be convicted of an offence except on the basis of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However, the prohibition of collective punishments is wider in scope because it does not only apply to criminal sanctions but also to 'sanctions and harassment of any sort, administrative, by police action or otherwise'.
- 88 See note 23.
- 89 Wille (2018), 'Iraq's so-called "ISIS families": rounded up, vilified, forgotten', Just Security (webpage), <https://www.justsecurity.org/61437/iraqs-so-called-isis-families-rounded-up-vilified-forgotten/>
- 90 N Mandela (2000). 'Statement on Building a Global Partnership for Children', 6 May 2000. http://www.oneworldpeople.org/articles/mandela_children.htm
- 91 2.8. million children accessed psychosocial support, categorised as child protection in the overview (see note 92).
- 92 UNICEF (2018), *Humanitarian Action for Children 2018: Overview*, UNICEF. https://www.unicef.org/publications/files/UNICEF_Humanitarian_Action_for_Children_2018_Overview_ENG.PDF
- 93 Based on FTS data accessed on 17/01/19 (HRP funding for Protection+child protection+gender-based violence).
- 94 M Thierry (2019), 'Funding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2010-2018', Save the Children Norway, unpublished report. Estimate based on FTS data. Examining child protection funding needs in detail is challenging because the data is lacking. No systematic data on child protection needs exists and figures for child protection funding only started to be recorded in 2018. The data on child protection funding as a share over time was extracted by going through all funding flows reported by OCHA in the protection sector between 2010 and 2018 and isolating those projects that address child protection specifically.
- 95 One of the objectives of the Grand Bargain is to move towards longer-term funding for humanitarian action. *The Grand Bargain – a shared commitment to better serve people in need*, https://agendaforhumanity.org/sites/default/files/resources/2018/Jan/Grand_Bargain_final_22_May_FINAL-2.pdf
- 96 UNOCHA (2019), *Global Humanitarian Overview 2019*, OCHA. <https://www.unocha.org/sites/unocha/files/GHO2019.pdf>
- 97 UNICEF (2018), *Humanitarian Action for Children, Yemen*. <https://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2018-HAC-Yemen.pdf>
- 98 See note 96.
- 99 See note 96.
- 100 See note 23. From January to December 2017, the United Nations verified the following violations in Yemen. Recruitment: 842 cases, among which 534 were attributed to the Houthis, 142 to the Security Belt Forces, 105 to the Yemeni Armed Forces, 50 to Popular Resistance and 1 to AQAP. Killing and maiming: 1,316 cases, among which 670 were attributed to the coalition, 324 to the Houthis, 41 to the Popular Resistance, 19 to other international forces fighting for the Government of Yemen, 10 to AQAP, and 4 to the Yemeni Armed Forces. Attacks on schools: 20 cases, of which 19 were attributed to the Coalition and 1 to an unidentified group in Dali. Attacks on hospitals: 11 cases, among which 5 were attributed to the Houthis, 5 to the Coalition and 1 to the Security Belt Forces. Military use of schools and hospitals: 10 cases, among which 5 were attributed to the Houthis, 1 to the Yemeni Armed Forces, 4 to the Popular Resistance. Abduction: 1 case attributed to the Houthis. Denial of humanitarian access: 248 cases, among which 168 were attributed to the Houthis, 35 to the Yemeni Armed Forces and 15 to the Coalition.
- 101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18),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Yemen, including violations and abuses since September 2014*, para 24 p. 32. https://www.securitycouncilreport.org/atf/cf/%7b65BFCF9B-6D27-4E9C-8CD3-CF6E4FF96FF9%7d/A_HRC_39_43_EN.pdf
- 102 Yemen Data Project (2018), *Yemen Data Project Air Raids Summary for November 2018*. <https://mailchi.mp/17cf33c9bbb7/december2018-yemen-data-project-update-426035> Note: Air raid refers to a single incident or air raid, which in turn may comprise multiple airstrikes.
- 103 ACLED (2018), 'Yemen war death toll now exceeds 60,000 according to latest ACLED data', (webpage), <https://www.acleddata.com/2018/12/11/press-release-yemen-war-death-toll-now-exceeds-60000-according-to-latest-acled-data/>
- 104 J Borger (2018), 'US supplied bomb that killed 40 children on Yemen school bus', The Guardian, 19 August 2018,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aug/19/us-supplied-bomb-that-killed-40-children-school-bus-yemen>
- 105 A Dewan (2018), 'These are the countries still selling arms to Saudi Arabia', CNN, 23 November 2018, <https://edition.cnn.com/2018/11/22/middleeast/arms-exports-saudi-arabia-intl/index.html>, also see F Slijper, Under the Radar: The United Arab Emirates, arms transfers and regional conflict, 2017, <https://www.paxforpeace.nl/publications/all-publications/under-the-radar>
- 106 GCPEA (2019), 'Safe Schools Declaration Endorsements' (webpage), <http://www.protectingeducation.org/guidelines/support>
- 107 See note 23.
- 108 Civilian Impact Monitoring Project, (2018). *Civilian Impact Monitoring Report August – October 2018*. https://www.humanitarianresponse.info/sites/www.humanitarianresponse.info/files/documents/files/civilian_impact_monitoring_report_august_-_october_2018.pdf
- 109 UNICEF (2018), *Fast Facts Yemen Crisis*. https://www.unicef.org/mena/sites/unicef.org.mena/files/2018-12/Yemen-FastFacts-En-06Dec18_0.pdf

- 110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18), *Press briefing note on Yemen, Cambodia, Cuba, Nicaragua and Montenegro, 11 May 2018*,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3071&LangID=E>
- 111 Yemen Data Project (2018), *Yemen Data Project Air Raids Summary for August 2018*, <https://mailchi.mp/f47262abc07d/september2018-yemen-data-project-update-389115> and Yemen Data Project, (2018), *Yemen Data Project Air Raids Summary for July 2018*, <https://mailchi.mp/04ccee3fac00/august2018-yemen-data-project-update-382175?e=c5a23e9692>
- 112 Human Rights Watch (2018), *Hiding Behind the Coalition - Failure to Credibly Investigate and Provide Redress for Unlawful Attacks in Yemen*. <https://www.hrw.org/report/2018/08/24/hiding-behind-coalition/failure-credibly-investigate-and-provide-redress-unlawful>
- 113 Amnesty International (2017), *'Amnesty International response to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s investigations'*.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mde31/5494/2017/en/>
- 114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RES/2451, 2018, <http://unscr.com/en/resolutions/doc/2451>
- 115 United Nations (1996), *Impact of Armed Conflict on Children*, Report of the expert of the Secretary-General, Ms. Graça Machel, submitted pursuant to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8/157, 26 August 1996, 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A/51/306
- 116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independent fact-finding mission on Myanmar, there is 'a pervasive culture of impunity at the domestic level', see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finding mission on Myanmar*, 12 September 2018, https://www.securitycouncilreport.org/atf/cf/%7B65BFCF9B-6D27-4E9C-8CD3-CF6E4FF96FF9%7D/a_hrc_39_64.pdf
- 117 United Nations (2018), *'Human Rights Council adopts 10 resolutions and one Presidential statement'*, 28 September 2018, <https://www.ohchr.org/EN/HRBodies/HRC/Pages/NewsDetail.aspx?NewsID=23652&LangID=E>
- 118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2018), *Decision on the 'Prosecution's Request for a Ruling on Jurisdiction under Article 19(3) of the Statute'*, ICC-RoC46(3)-01/18, 6 September 2018, https://www.icc-cpi.int/CourtRecords/CR2018_04203.PDF
- 119 UNOCHA (2018), *Humanitarian Needs Overview 2018 South Sudan*, November 2017, https://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South_Sudan_2018_Humanitarian_Needs_Overview.pdf
- 120 UNICEF (2017), *Childhood under Attack, Briefing Note*, UNICEF. https://www.unicef.org/southsudan/UNICEF_South_Sudan_Report_Childhood_under_Attack_15Dec_FINAL.pdf
- 121 UNOCHA (2018), *Humanitarian Needs Overview 2019 South Sudan*. https://www.humanitarianresponse.info/sites/www.humanitarianresponse.info/files/documents/files/south_sudan_humanitarian_needs_overview_2019_final.pdf
- 122 A Stoddard et al (2018), *Aid worker security report: Figures at a glance*, Humanitarian Outcomes.
- 123 United Nations, *Children and armed conflict in South Sudan*, S/2018/865, 25 September 2018 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S/2018/865&Lang=E&Area=UNDOC
- 124 UNICEF (2018), *Release and Reintegration: Children Associated with Armed Forces and Armed Groups*. <https://www.unicef.org/southsudan/UNICEF-South-Sudan-CAAFAG-Briefing-Note-Oct-2018.pdf>
- 125 See note 123.
- 126 See note 123.
- 127 F Checchi et al (2018), *Estimates of crisis-attributable mortality in South Sudan, December 2013-April 2018 A statistical analysis*, Lon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icine. https://crises.lshtm.ac.uk/wp-content/uploads/sites/10/2018/09/LSHTM_mortality_South_Sudan_report.pdf
- 128 See note 120.
- 129 See note 121.
- 130 See note 121.
- 131 See note 121.
- 132 See note 121.
- 133 See note 123.
- 134 Child Protectio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South Sudan (national database), 2018.
- 135 World Bank (2018), *South Sudan Economic Update, July 2018*, World Bank, Washington, DC.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handle/10986/30294>
- 136 UNOCHA (2018), *Financial Tracking Service*. <https://fts.unocha.org/countries/211/summary/2018>
- 137 WarChild (2018), *Closing the Funding Gap for the Reintegration of Children Associated With Armed Forces and Groups*. Briefing, September 2018. https://www.warchild.org.uk/sites/default/files/link-files/war_child_uk_reintegration_child_soldiers_briefing_paper_web.pdf
- 138 B Sheppard (2018), *Yes, We Can End the Military Use of Schools*, Human Rights Watch. <https://www.hrw.org/news/2018/07/02/yes-we-can-end-military-use-schools>
- 139 See note 138.
- 140 United Nations,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webpage), <http://indicators.ohchr.org/>
- 141 M Wallström and L Zerrougui (2017), *'Ending the use of child soldiers'*, Statement, 12 February 2017. <https://childrenandarmedconflict.un.org/ending-the-use-of-child-soldiers/>
- 142 Child Soldiers International (2016), *A law unto themselves? Confronting the recruitment of children by armed groups*. <http://www.refworld.org/pdfid/574809d24.pdf>
- 143 J Becker (2017), *Campaigning for Children: Strategies for Advancing Children's Rights*, Stanford University Press.
- 144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2018), *Roots of Restraint in War*. <https://www.icrc.org/en/publication/roots-restraint-war>
- 145 Geneva Call (2013), *Deed of Commitment under Geneva Call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from the Effects of*

- Armed Conflict, article 7. https://www.genevacall.org/wp-content/uploads/dlm_uploads/2013/12/DoC-Protecting-children-in-armed-conflict.pdf
- 146 'Nearly all signatory groups have abided by their monitoring obligations, providing information and reports on their implementation, and allowing follow-up missions. No signatory has ever refused to receive a Geneva Call delegation in areas under its control, even after allegations of non-compliance'. P Bongard, 'Engaging armed non-state actors on humanitarian norms: reflections on Geneva Call's experience', Humanitarian Exchange Magazine, Humanitarian Practice Network, Issue 58, July 2013, https://genevacall.org/wp-content/uploads/dlm_uploads/2013/12/art-1.pdf
- 147 Geneva Call (2014), *Deed of Commitment under Geneva Call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from the Effects of Armed Conflict signed by the Peoples Protection Units (YPG), Women's Protection Units (YPJ) and the Democratic self-administration in Rojava*. 5 July 2014. https://genevacall.org/wp-content/uploads/dlm_uploads/2014/07/2014-5july-YPG-YPJ-syria-children.pdf
- 148 M Wareham (2017), 'Preventing Suffering through 'Humanitarian Disarmament'', Human Rights Watch. <https://www.hrw.org/news/2017/09/18/preventing-suffering-through-humanitarian-disarmament>
- 149 ICRC (2018), *The Anti-Personnel Mine Ban Convention: Twenty Years of Saving Lives and Limbs and Reducing Civilian Suffering*. <https://www.icrc.org/en/publication/anti-personnel-mine-ban-convention-twenty-years-saving-lives-and-limbs-and-reducing>
- 150 Landmine free 2025 (2018), *The Problem*, (webpage). <https://www.landminefree2025.org/the-problem.html>
- 151 The 2017 report listed 166 investors and a total of US\$ 31 billion invested, as compared to 2018, with 88 investors and US\$ 8700 million invested. M Beenes and M Uiterwaal, *Worldwide Investments in cluster munitions: a shared responsibility*, Pax, the Netherlands, December 2018, p. 9, <https://stopexplosiveinvestments.org/wp-content/uploads/PAX-Dec-2018-update-Worldwide-Investment-in-cluster-munitions-WEB.pdf>
- 152 Arms Trade Treaty, *Treaty Status*, accessed 21 January 2018. <https://www.thearmstradetreaty.org/treaty-status.html?templateId=209883>
- 153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 *The Arms Trade Treaty*, Accessed January 2019. <https://unoda-web.s3-accelerate.amazonaws.com/wp-content/uploads/2013/06/English7.pdf>
- 154 For example, Belgium, Germany, Netherlands, Norway, Sweden, Switzerland.
- 155 See note 153. The US has signed but not ratified the ATT.
- 156 UNOCHA, *Protecting civilians from the use of explosive weapons in populated areas*, OCHA, <https://www.unocha.org/sites/unocha/files/EWIPA%20Fact%20Sheet%20June%202017.pdf>
- 157 Save the Children (2013), *Explosive Weapons and Grave Violations against Children*. https://resourcecentre.savethechildren.net/sites/default/files/documents/explosive_weapons_and_grave_violations_against_children_1.pdf
- 158 Action on Armed Violence (2019), *2018: a year of explosive violence*. <https://aoav.org.uk/2019/2018-a-year-of-explosive-violence/>
- 159 The International Network on Explosive Weapons (INEW) (2018), About, (webpage) <http://www.inew.org/about-inew/>
- 160 The political statement was supported by Austria, Chile, Costa Rica, Croatia, Germany, Guatemala, Iceland, Ireland, Italy, Mexico, Montenegro, Mozambique, New Zealand, Norway, Portugal, Samoa, Serbia, Sri Lanka, Sweden, Switzerland, Uganda, Uruguay, Zambia.
- 161 United Nations (2018), *Securing Our Common Future: Agenda on Disarmament*, 2018. https://front.un-arm.org/documents/SG+disarmament+agenda_1.pdf
- 162 Casualty recording is the process of systematically and continuously recording deaths in armed conflict in as much detail as possible, both concerning the dead and how, when, where and by whom they were killed.
- 163 H Dardagan and H Salama, (2013). *Stolen Futures: the Hidden Cost of Child Casualties in Syria*, Oxford Research Group. <http://www.everycasualty.org/downloads/reports/Stolen-Futures.pdf>
- 164 A restricted form of casualty recording, conducted by parties to conflict.
- 165 Led by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and Safer Yemen.
- 166 Every Casualty (2016), *Standards for Casualty Recording*, [https://www.everycasualty.org/downloads/ec/pdf/StandardsforCasualtyRecording-Version1.0\(2016\).pdf](https://www.everycasualty.org/downloads/ec/pdf/StandardsforCasualtyRecording-Version1.0(2016).pdf)
- 167 United Nations, *Resolution 1325, S/RES/1325 (2000)*,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N00/720/18/PDF/N0072018.pdf?OpenElement>
- 168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UN Secretary-General on Conflict-Related Sexual Violence, S/2018/250*, 16 April 2018, www.un.org/sexualviolenceinconflict/wp-content/uploads/reports/sg-reports/SG-REPORT-2017-CRSV-SPREAD.pdf
- 169 UK government, 'Preventing Sexual Violence Initiative' (webpage),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preventing-sexual-violence-initiative/about>
- 170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About the ICTY' (webpage), <http://www.icty.org/en/about>
- 171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rticle 8, 2b (xxvi), http://legal.un.org/icc/statute/99_corr/cstatute.htm
- 172 International, Impartial and Independent Mechanism, 'About us: mandate' (webpage), <https://iiim.un.org/>
- 173 Reuters (2018), 'Germany issues international arrest warrant for top Assad officer'. <https://www.reuters.com/article/us-syria-crisis-germany/germany-issues-international-arrest-warrant-for-top-assad-officer-idUSKCN1J41VQ>
- 174 Reuters (2018), 'France issues arrest warrants for senior Syrian officials'. <https://www.reuters.com/article/us-syria-crisis-france/france-issues-arrest-warrants->

- for-senior-syrian-officials-idUSKCN1NA11L
- 175 Human Rights Watch, (2017). 'These are the Crimes we are Fleeing': Justice for Syria in Swedish and German Courts. <https://www.hrw.org/report/2017/10/03/these-are-crimes-we-are-fleeing/justice-syria-swedish-and-german-courts>
- 176 Human Rights Watch (2017), 'The US Global Magnitsky Act' (webpage), <https://www.hrw.org/news/2017/09/13/us-global-magnitsky-act>; and E Ochab, (2018). 'The Magnitsky Law Is Taking Over The European Union', Forbes, <https://www.forbes.com/sites/ewelinaochab/2018/12/10/the-magnitsky-law-is-taking-over-the-european-union/#6d019dfd1eca>
- 177 Reuters (2018), 'MPs back 'Magnitsky amendment' on sanctions for human rights abuses'. <https://uk.reuters.com/article/uk-britain-russia-magnitsky/mps-back-magnitsky-amendment-on-sanctions-for-human-rights-abuses-idUKKBN1I24B9>
- 178 Norwegian Helsinki Committee, (2018). 'Governments should create a European Human Rights Travel Ban Commission'. <https://www.nhc.no/en/governments-should-create-a-european-human-rights-travel-ban-commission/>
- 179 Save the Children (2015), The Child Protection in Emergencies (CPIe) Capacity Building Mapping and Market analysis. <https://resourcecentre.savethechildren.net/library/child-protection-emergencies-capacity-building-mapping-market-analysis>
- 180 The Child Protection Working Group (2012), Minimum Standards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https://www.unicef.org/iran/Minimum_standards_for_child_protection_in_humanitarian_action.pdf
- 181 The Child Protection 'Area of Responsibility' is a group of humanitarian organisations who work on improving coordinated responses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nd early-warning contexts. The team provides in-country and remote support to field-level child protection coordination groups. The Child
- 182 The objective of the localisation workstream is to 'increase and support multi-year investment in the institutional capacities of local and national responders, including preparedness, response and coordination capacities, especially in fragile contexts and where communities are vulnerable to armed conflicts, disasters, recurrent outbreaks and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The Grand Bargain – a shared commitment to better serve people in need, https://agendaforhumanity.org/sites/default/files/resources/2018/Jan/Grand_Bargain_final_22_May_FINAL-2.pdf
- 183 The 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2014), 'Learning and Development Working Group' (webpage), <https://alliancecpha.org/en/child-protection-hub/learning-development-working-group>
- 184 The Child Protection Working Group (2014), Inter Agency Guidelines for Case Management & Child Protection. http://www.cpcnetwork.org/wp-content/uploads/2014/08/CM_guidelines_ENG_.pdf
- 185 Save the Children Programme data
- 186 Save the Children, Child Protectio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187 Save the Children (2017), A practice handbook for family tracing and reunification during emergencies, South Sudan. https://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ftr_handbook_4web_002.pdf
- 188 M Wessels (2015), 'Bottom-up approaches to strengthening child protection systems: Placing children, families, and communities at the center', Child Abuse and Neglect, 43, p. 8-21.
- 189 Grundin (2018), Learning from Community-led Resilience Responses in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ies. Local to Global Protection. <https://resourcecentre.savethechildren.net/library/learning-community-led-resilience-responses-occupied-palestinian-territories>
- 190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IASC), (2007). IASC guidelines on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in emergency settings. Geneva. https://www.who.int/mental_health/emergencies/guidelines_iasc_mental_health_psychosocial_june_2007.pdf
- 191 Save the Children (2018), Healing the invisible wounds of war: A roadmap for addressing the mental health needs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affected by conflict Report on the Wilton Park Dialogue 2018. Wilton Park, DFID, Save the Children. <https://www.wiltonpark.org.uk/wp-content/uploads/WP1581-Report.pdf>
- 192 Save the Children (2018), Manualized Psychosocial Programs Knowledge Builder: A side by side comparison of three psychosocial support programs.
- 193 Education Cannot Wait, 'About us: the fund' (webpage), <http://www.educationcannotwait.org/about-ecw/>
- 194 United Nations (2016), 'New York Declaration'. (webpage), <https://refugeesmigrants.un.org/declaration>
- 195 United Nations (2018), The Global Compact on Refugees. <https://www.un.org/pga/72/wp-content/uploads/sites/51/2018/07/Global-Compact-on-Refugees.pdf>
- 196 IGAD (2017), Djibouti Declaration on Regional Conference on Refugee Education in IGAD member states. <http://www.globalcrf.org/wp-content/uploads/2018/04/Djibouti-Declaration-on-Refugee-Education.pdf>
- 197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7), 'Ambassador for Children and Armed Conflict appointed', 14 June 2017. <https://www.government.se/press-releases/2017/06/ambassador-for-children-and-armed-conflict-appointed/>
- 198 See note 23.
- 199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427, S/RES/2427 (9 July, 2018). <http://unscr.com/en/resolutions/doc/2427>
- 200 Watchlist on Children and Armed Conflict (2016), Checklist for drafting children and armed conflict provisions in ceasefire and peace agreements <https://peacemaker.un.org/sites/peacemaker.un.org/files/>

Watchlist_ProvisionsChildrenArmedConflict-
PeaceAgreements_2016.pdf

- 201 United Nations, *Statement by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S/PRST/2017/21*, <http://undocs.org/S/PRST/2017/21>
- 202 When seeking to grant the supply of defence assets for defensive purposes, governments should provide greater transparency, reporting on the type, quantity and intended use of arms, weapons and military assets exported, supplied or otherwise transferred to parties to conflict and taking measures to trace the use and onward transfer of such assets.
- 203 African Committee of Experts on the Right and Welfare of the Child (2018), *Revised rules of procedure of the African Committee of Experts on the Rights and Welfare of the Child*. 'Working Documents'. <https://acerwc.africa/working-documents/>
- 204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on Human Rights (2014),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OPICCRC.aspx>
- 205 This should be a key outcome of the 'needs assessment' workstream set up as part of the Grand Bargain



에글렌타인 잭은
“유일한 세계공용어는 아이의 울음소리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러한 울음소리를 들었고,
이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아동에 대한 전쟁을 반드시 멈춰라.



sc.or.kr/stopwaronchildren